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2017. 10



2017. 10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2017. 10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 연구』 임의심층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공동연구자: 김상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김용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노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이순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이슬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특수전문직
허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2017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I. 심층평가의 개요

- 1998년 말,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당시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함
 -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공평과세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1965년 12월 제정되었으며,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됨
 - 1998년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영구법 체제로 전환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는 영구법화하되 개별 지원제도별로는 일몰시한을 명시하도록 함
 - 「조세감면규제법」이 5년 단위의 한시법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1998년 전면개정 당시에는 개별 지원제도별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
 - 그러나 2003년 말부터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일몰기한을 개별 제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5년, 3년, 2년, 1년 등) 설정함

- 본 심층평가는 우리나라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신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몰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일몰 부여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조세특례제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임의심층평가의 하나이지만 일반 심층평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연구의 방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제도들 가운데 특정 조건들(지원 규모, 일몰 도래 등)을 만족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개별 제도 단위로 평가함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대상이 되는 개별 조세특례에 대하여 그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됨
 - 그러나 본 심층평가는 개별 조세특례제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될 일몰 운영 방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심층평가로는 예외적으로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 특히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함
 - 첫째는, 신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일몰 부여 기준으로, 어떤 제도는 일몰을 부여하고 어떤 제도는 부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는,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들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별로 일몰기한을 검토하되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 내에 포함된 개별 항, 호, 목의 내용 차이가 크고 신설 시기 및 일몰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일몰기한을 검토함
 -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29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21개 항목은 다수의 조, 항, 호, 목을 포함하고 있음
 - 21개 조세지출 항목은 조, 항, 호, 목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65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총 294개 항목의 일몰 규정 존재 여부, 적용기한을 검토함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우리나라에서 조세특례 일몰제를 비롯하여 8가지 대표적인 일몰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일몰제도로는 규제 일몰제, 행정규칙 일몰제, 위원회 일몰제, 부담금 일몰제, 보조금 일몰제, 기금 일몰제, 시책 일몰제, 조세특례 일몰제 등이 있으며, 이 중 조세특례 일몰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시행됨

-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조세지출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중 일부의 형태로 일몰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행정규제 등에 적용된 일몰제도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였으며 해외 일몰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국내 일몰제도의 발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쟁점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일몰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 일몰을 부여할 경우 적용기한을 제도별로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일몰 미부여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 첫 번째, 일몰을 부여하는 제도와 부여하지 않는 제도의 구분기준에 대한 논의임
 - 모든 제도에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일부만 일몰을 부여할 경우 일몰 부여 여부를의 기준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함

- 두 번째, 일몰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임
 - 개별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모든 제도에 특정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따라 제도별로 적용기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

- 마지막으로 일몰 부여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임
 - 일몰이 부여된 제도는 일몰시기에 평가를 거쳐 제도 연장을 논의하므로 자연스럽게 사후관리가 취해짐
 -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는 별도의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면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III. 국내 제도운영 분석

가.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부여방식

- 검토한 294개 조세지출 항목 중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상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108개 항목(36.7%)이고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186개 항목(63.3%)임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40개 항목은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함

- 조세지출 항목별로 적용기한이 3개월에서 6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의 적용기한을 설정한 경우가 142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76.3%)으로 가장 많음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2년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33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17.7%)임
 - 종료 시기가 분명한 일회성의 국제행사는 행사 종료 시기를 일몰기한으로 설정하되 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함

- 검토 대상 항목들의 신설 시기별로 일몰 규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교적 오래된 항목일수록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일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항목 중 약 21.3%는 국방, 외교, 농업 관련 지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약 30.6%는 지원기간을 단기로 한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 형성이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항목들임

- 일몰기한 규정 있는 항목들 중 적용기한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움
 - 적용 기간이 2년 이하인 항목과 3년인 항목의 목적, 수혜 대상과 같은 내용상 차이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음
 - 일몰 연장되면서 적용기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목도 있고 불규칙하게 바뀌는 항목도 있어 일정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일몰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기간(신설 시점부터 2017년 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일몰이 있는 항목 중 약 52.2%를 차지함
 - 일몰이 도래하였을 때 일몰기한이 연장된 횟수가 3회 이상인 항목의 수는 일몰이 있는 항목 중 약 68.2%를 차지함
-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일몰기한 존재 여부나 적용기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나. 조세특례 일몰제도 평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몰을 부여되지 않은 제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평가됨
 -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일몰을 부여하여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막고 그 실효성에 따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 중 약 27%의 제도에 일몰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외사례라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높다고 판단됨
- 적용기한은 다양한 데에 반해 거의 대부분의 제도들의 일몰이 연장되고 있어 실제 제도 운용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적용기한을 차등 부여하는 근거가 미약함
 - 90% 내외의 조세특례제도들의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됨
 - 적절한 기간 동안 제도를 운용하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엄밀하게 운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일몰연장의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적용기한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임

다.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조세특례제도는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사후관리를 진행함

- 자체평가는 현행 조세지출 항목들의 소관부처에서 각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배점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의무심층평가’라고 함
 -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심층평가를 ‘임의심층평가’라고 구분함
- 자체평가의 경우, 제도의 소관부처에서 자신들의 제도를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존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유효성이 크지 않음
 - 일부 항목(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소관부처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소관부처의 평가의견서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 결과는 실질적으로 각 담당자의 작성 성실도 평가에 가까움
 - 자체평가에 의해 제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않음

IV. 해외 제도운영 분석

(주요국의 제도 및 시사점)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일몰기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되는 항목들을 Tax extender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는 일몰 연장된 항목들의 과거 일몰 연장 연혁을 제시함
 - 일몰 연장된 항목들의 일몰 연장으로 인한 추정 비용(조세지출 규모), 항구화될 경우의 추정 비용(조세지출 규모)도 함께 제시함

- 일몰 연장된 항목들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별로 일몰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항구화된 항목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몰기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실질적으로는 항구화된 항목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 미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해 일몰 연장 연혁, 일몰이 계속해서 연장될 경우의 추정 비용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PAYGO 원칙의 엄격한 적용) 일몰 연장되는 조세지출 항목의 세수 감소 효과와 세입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세특별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일몰 연장하려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규모 추정 곤란 항목이 많고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나. 일본

- 일본의 일몰제도는 신규 도입을 위한 사전평가, 재검토 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후평가 그리고 총무성의 확인·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시 논의하여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각 부처의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평가 시에도 ‘조세특별조치 검토 지침(‘6대 점검사항)’에 따라 정책의 ‘합리성’, ‘효과성’,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일몰기한의 부여는 법령으로 정하여진 완전한 규칙성을 가진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제개편 시 각 부처의 요구(신규 도입, 연장)와 총무성 등의 확인·점검, 세제심의위원회 및 의회 등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유사하게 명문화된 일몰기한 부여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신규 도입 시 3년 내에서 일몰기한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연장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사후관리)

-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조세지출을 주관하는 소관부처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의 도입 및 연장,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함
- 우리나라는 단순 확인·점검 항목 이외에 일정기준(규모 30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는 심층평가라는 과정을 따로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절차가 보이지 않음
 - 반면에 일본은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에 대하여는 ‘적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임

다. 호주

- 호주는 조세지출을 신설할 경우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비율이 작으며, 필요에 따라 일몰기한을 삭제 또는 연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됨
 - 자연재해 등과 같은 특정 재난, 국제행사와 같이 조세지출의 존속기간이 확정적인 경우에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 조세지출의 관련 정책에 따라서 일몰기한이 다양하게 설정되며, 최근 10년에는 1년 내외로 짧게 설정하거나 5년 이상으로 크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몰기한이 제도의 존속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몰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몰기한에 맞추어 제도가 폐지됨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일몰기한을 부여하고 일몰시점에 폐지하거나, 다른 법안 도입 및 발의 등을 통해 제도를 종료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일몰을 부여한 시점에서 폐지까지 존속기간은 1년이며, 제도의 성격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몰기한을 부여하지 않고 폐지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사유로 폐지됨
 - 기준조세체계로의 편입, 관련 정부정책의 중지, 다른 법안 도입 및 발의, 장기간 감면실적이 없는 경우

- 조세지출의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반기 경제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음
 -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작성하여 조세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제도에 대해 검토 일정 또는 일몰기한을 도입할 예정임

라. 프랑스

- 프랑스는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기한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신설 시 최초로 부여하는 일몰기한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조세지출 규모가 증대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하지만 2009~2013년 사이에 일몰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들 중 약 87%가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일몰 도입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듭
- 프랑스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은 성과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성과평가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세지출 일몰기한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함
 - 그 결과, 연속성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능별 분류의 경우 그와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 부여 비율이 낮거나, 7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진 항목 수가 많은 특징을 보임
- 프랑스의 성과관리는 재정지출 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지출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이 부여됨
 - 그 결과 같은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같은 연도에 같은 일몰기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관련 조세지출의 존폐가 결정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음

마.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특정 조항에 일몰기한을 부여할 것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일몰 조항이 부여된 항목도 없음
 - 일부 특수한 조세지출의 경우, 도입 시점부터 폐지 기간을 정해두고 도입되어 정해진 시점에 폐지되었음
 - 도입 후 해당 항목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폐지되거나 더 개선된 항목으로 변경되는 항목들도 존재하였음

-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조세지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제도 투명성을 제고시킴
 - 조세지출제도 분석에 있어 “조세지출 평가”와 “조세지출 검토”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음
 - “조세지출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 재정적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며 이 분석의 결과 및 정책 제언은 상위 기관으로 보고되어 정책 결정 시 참고가 되기도 함
 - “조세지출 검토”는 2016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조세지출 평가”보다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폐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

V.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일몰 부여 여부

-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들은 일몰을 부여하고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조세지출제도는 개별 세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몰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개별 세법 내에서 다루는 것이 원래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안을 생각한다면, 김학수(201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제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조세특례 항목들을 관리 실효성 측면에서 세 가지(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관리배제)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일몰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몰 운용에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에만 일몰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관리배제, 잠재적 관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적용기한 부여방법

-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일괄 부여방식과 차등 부여방식의 두 가지 대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일괄 부여방식은 모든 조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임
 - 이 경우, 3년 기한으로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조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임
 - 분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을 임의적으로 차등 부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제도에 동등하게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것인 단순 명료함
- 차등 부여방식은 단기 적용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적용기한을 부여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제안함
 - 기본 적용기한(단기)은 2년으로 부여함
 - 제도의 특성이나 국내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일 경우, 4년으로 적용기한을 구분하여 부여함
 - 조세지출 규모가 큰 제도들도 장기 적용기한 부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일몰 도래 시 일몰 연장이 결정될 경우 제도의 속성을 고려하여 새로 적용하는 적용기한은 단기에서 장기로, 또는 장기에서 단기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일몰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적용기한 부여방식(일괄 부여, 차등 부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추가로 제안함
 - 하나는 일회성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몰 의무제에 대한 것임

다. 사후관리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임의심층평가의 활용도를 높여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체평가를 개선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금과 같은 평가보다는 부처 담당자들의 제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의무심층평가는 그 대상과 평가방법론, 진행과정 등에서 이미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개선안은 제한적으로 판단됨
 - 임의심층평가는 대상이나 그 평가진행과정에서 임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사후관리가 취약한 제도들은 일몰이 없거나 일몰이 있어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이 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심층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음
 - 100개가 넘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되도록 많은 수를 포괄하여 평가하려면 임의심층평가가 의무심층평가의 모든 방법론을 준용하기에는 제약이 큼
 - 따라서 임의심층평가는 그 대상에 따라 의무심층평가의 분석방법 중 핵심적인 평가항목(예를 들어, 타당성 등)은 유지하되 일부는 생략 가능한 약식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만 함
-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평가는 과감히 폐지하고 일몰 미부여 제도나 일몰 부여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제도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자체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이면서도 심층평가보다는 간략하게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회의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명시해야 함

-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심화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심층평가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목 차

I. 심층평가의 개요	23
1.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배경 및 목적	25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기본 현황	26
가. 조세특례제도 일몰 관련 기본방침	26
나. 조세특례제도 일몰 현황	28
3. 조세특례 일몰제도 심층평가의 개요	29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3
1. 일반적인 일몰제도 특성 분석	35
가. 일몰제도의 의의	35
나. 우리나라의 일몰제도 운용사례	36
다. 일몰제도 운용사례 요약	49
2. 관련 선행연구	51
3.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쟁점사항	60
III. 국내 제도운영 분석	63
1.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부여방식	65
가. 조세특례제도 일몰 부여 여부	65
나. 조세특례제도 일몰 기간별 특성	86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평가	93
3. 일몰 부여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96
IV. 해외 제도운영 분석	99
1. 미국의 제도운영	101
가. 조세지출 항목의 법적 근거	101

나. 조세지출 목록	101
다. 조세지출의 일몰 규정 및 현황	106
라.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과 일몰 부여	108
마. Tax extender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110
바. 조세지출 항목의 사후 관리	112
2. 일본의 제도운영	113
가. 현 황	114
나.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 방침	115
다.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평가	119
라. 일본의 조세특별조치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129
마.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139
바.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서 확인·점검 보고서 한·일 비교	143
3. 호주의 제도운영	145
가. 신설 조세지출의 일몰기한	148
나. 최근 폐지된 조세지출	150
다. 일몰부여 조건 또는 원칙	152
라. 조세지출 사후관리	153
4. 프랑스의 제도운영	155
가. 프랑스의 조세지출 일몰제도 개요	155
나.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지출 항목 검토	156
다. 일몰제도 관리 방안	170
5. 캐나다의 제도운영	175
가. 캐나다 조세지출 일몰제도	175
나.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신설·폐지된 항목	175
다. 조세지출 평가 체계	177
6. 주요국의 제도운영 요약(소결)	187
가. 미국	187
나. 일본	188
다. 호주	191
라. 프랑스	192
마. 캐나다	193

V. 결론 및 정책제언	195
1.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198
가. 일몰 부여여부에 대한 정책제언	198
나. 적용기한에 대한 정책제언	200
2. 조세특례제도 사후관리 개선방안	205
참고문헌	207
<부록 I> 일본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215
<부록 II> 호주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246
<부록 III> 프랑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250
<부록 IV> 캐나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 자료	263
<부록 IV> 2016 하반기 임의심층평가상의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결과	266

표 목 차

<표 Ⅰ-1>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26
<표 Ⅰ-2>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부여 비율	29
<표 Ⅱ-1> 시책일몰제 도입현황	47
<표 Ⅱ-2> 일몰제도 운용사례	50
<표 Ⅱ-3> 주요 일몰제도의 일몰비율	51
<표 Ⅱ-4> 조세지출제도 관련 기타 연구 사례	58
<표 Ⅲ-1> 일몰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65
<표 Ⅲ-2> 개별 세법에 규정된 조세지출 항목	66
<표 Ⅲ-3> 조특법 시행(1999. 1. 1.) 전 신설된 항목 중 일몰기한 규정 없는 경우	68
<표 Ⅲ-4> 조특법 시행(1999. 1. 1.) 이후 신설된 항목 중 일몰기한 규정 없는 경우	68
<표 Ⅲ-5> 신설 당시 일몰기한 두었으나 현재 일몰기한 없는 항목	70
<표 Ⅲ-6> 신설 당시에는 일몰기한 없었으나 일몰기한 두었다가 현재 일몰기한 없는 항목	71
<표 Ⅲ-7> 일몰기한 규정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71
<표 Ⅲ-8>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기한 분포	72
<표 Ⅲ-9> 적용기한이 2년 이하인 조세지출 항목	73
<표 Ⅲ-10> 적용기한이 3년인 조세지출 항목	75
<표 Ⅲ-11> 적용기한이 4년인 조세지출 항목	82
<표 Ⅲ-12> 적용기한이 5년인 조세지출 항목	83
<표 Ⅲ-13> 적용기한이 5.5년인 조세지출 항목	83
<표 Ⅲ-14> 적용기한이 6년인 조세지출 항목	84
<표 Ⅲ-15> 국제 행사 관련 조세지출 항목	85
<표 Ⅲ-16> 신설 시기별 일몰 부여 여부 분포	86
<표 Ⅲ-17> 국방, 외교, 농업 관련 지원의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87

<표 III-1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는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88
<표 III-19> 사회적 기반 형성과 관련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89
<표 III-20>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90
<표 III-21>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 기간 분포	91
<표 III-22>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횟수 분포	92
<표 III-23> 조세지출 항목의 2014~2016년 일몰 및 일몰 연장	92
<표 III-24> 2014~2016년 일몰 연장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이유	93
<표 IV-1>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비교	104
<표 IV-2>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항목 수 비교	105
<표 IV-3> 일몰기한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의 예	106
<표 IV-4> Tax extender 목록	111
<표 IV-5> 일본의 세목별 조세특별조치 항목 수(2009년 6월 기준)	114
<표 IV-6> 법인세법 관련 조세특례(조세특별조치법 제3장)	126
<표 IV-7>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 평가 건수	130
<표 IV-8>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정책 평가 점검 결과(2차 보충(추가)설명 평가서 대상)	134
<표 IV-9> 점검결과 알림 표식	136
<표 IV-10> 점검결과 일람표(경제산업성)	138
<표 IV-11> 건의서 및 평가서 확인·점검 항목 및 점수 배점	141
<표 IV-12> 한·일간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서 확인·점검 비교(2016년 기준)	144
<표 IV-13> 최근 10년간 일몰기한 운영 현황(호주)	146
<표 IV-14> 2017년도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지출 항목(호주)	147
<표 IV-15> 일몰기한이 설정된 신규 조세지출의 기본 정보(호주)	148
<표 IV-16> 신규 조세지출의 일몰부여 기간(호주)	149
<표 IV-17> 신규 조세지출의 일몰 여부 현황(호주)	150
<표 IV-18> 기존 조세지출의 일몰부여 시 존속기간(호주)	151
<표 IV-19> 조세지출 추정규모 신뢰도 점수 및 등급	154
<표 IV-20>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일몰기한이 부여된 항목의 비율	156
<표 IV-21>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 특징	156

<표 IV-22> 일몰기한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	157
<표 IV-23>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관련 조세지출 일몰기한 부여 비율	162
<표 IV-24>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적용기한 구성 비율	165
<표 IV-25>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의 최초 적용기한	166
<표 IV-26>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의 총 적용기한	167
<표 IV-27> 세목별 조세지출 일몰기한 부여 비율	168
<표 IV-28> 부가가치세 감면 중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23개	169
<표 IV-29> 재정법 개정안 작성을 위한 과정	171
<표 IV-30> 각 기능별 분류의 조세지출 연계 및 성과보고서 발행 여부	173
<표 IV-31>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신규 도입 후 폐지된 항목	175
<표 IV-32> 조세지출 보고서 분석 기준	177
<표 IV-33> 조세지출 감면방법	178
<표 IV-34> 조세지출 도입 목적별 분류 기준	179
<표 IV-35> 조세지출 기능별 분류 기준	180
<표 IV-36> 조세지출 도입 목적에 따른 항목 변화 분석(1991~2015)	182

그림 목 차

[그림 IV-1] 미국 조세지출 항목의 운영 기간	107
[그림 IV-2] 조세특별조치 정책평가 및 점검의 흐름도	121
[그림 IV-3]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대상 범위	122
[그림 IV-4]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의 흐름	124
[그림 IV-5] 적용금액명세서의 제출 흐름	128
[그림 IV-6]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절차	142
[그림 IV-7] 재정지출 사업 구조	172

I. 심층평가의 개요



I.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배경 및 목적

- 1998년 말,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당시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함
 -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공평과세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1965년 12월 제정되었으며,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됨
 - 1998년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칭을 변경하고 영구법 체제로 전환함
 - 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례사항을 이 법에 포괄하여 규정하고, 감면제도별로 일몰규정을 두고 일몰기한 도래 시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제도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는 영구법화하되 개별 지원제도별로는 일몰시한을 명시하도록 함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중 이미 그 적용기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의 조세특례와 신설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각각의 개별 지원제도별 적용기한을 특정하는 일몰기한을 설정함
 - 「조세감면규제법」이 5년 단위의 한시법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1998년 전면개정 당시에는 개별 지원제도별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별 제도는 일몰기한이 2003년 말로 설정됨
 - 그러나 2003년 말부터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일몰기한을 개별 제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5년, 3년, 2년, 1년 등) 설정함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기본 현황

가. 조세특례제도 일몰 관련 기본방침

1) 「조세감면규제법」의 일몰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77년부터 전체 항목에 대한 적용 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시한이 도래하면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을 연장함
- 1977년에 5년의 적용 시한을 규정한 이래로 네 차례에 걸쳐 5년씩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는데 마지막 1997년에는 2년의 적용 시한을 규정함

<표 I - 1>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근거 조항	시행일	적용 시한	내용
조감법 제18조	1977. 1. 1.	1981. 12. 31.	제18조 (적용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감법 제93조	1982. 1. 1.	1986. 12. 31.	제93조 (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감법 제93조	1987. 1. 1.	1991. 12. 31.	제93조 (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조항	시행일	적용 시한	내용
조감법 제93조	1991. 12. 27.	1996. 12. 31.	제93조 (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본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감법 제125조	1997. 1. 1.	1998. 12. 31.	제125조 (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본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시행 1999. 1. 1.)되면서 전체 항목에 대한 일몰 규정을 개별 항목에 대한 일몰 규정으로 전환함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항목별로 일몰을 부여한 기준에 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회의(1998. 5. 30.) 자료를 통해 기준을 유추함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세제발전위원회, 1998, pp. 3-4.)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항목별 적용기한은 원칙적으로 단기 2년, 장기 5년으로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특정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제도 중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는 분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제도, 신규 조세지원 제도는 2년 기한을 두도록 함
 -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 지원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제도, 기타 간접세 감면 등은 5년의 기한을 두도록 함

- 전면 개정(시행일: 1999. 1. 1.)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의 적용기한을 가졌던 조세지출 항목들 대부분은 일몰기한인 2000. 12. 31. 이전에 법 개정으로 3년간 일몰이 연장되었고, 5년의 적용기한을 가졌던 조세지출 항목들 대부분은 일몰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법 개정으로 3년간 일몰이 연장됨
- 「조세특례제한법」은 1999. 1. 1. 이후 154회의 개정을 거쳤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항목들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6년까지 다양한 적용기한을 갖고 있고 3년의 적용기한을 두는 경우가 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77.2%로 가장 많음
- 「조세특례제한법」 항목들의 일몰 부여 기준, 적용기한에 차이를 두는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재 개별 항목의 일몰 규정 여부, 적용기한, 내용을 검토해야 함

나. 조세특례제도 일몰 현황

-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7. 4. 1.) 및 개별 세법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일몰기한을 검토함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별로 일몰기한을 검토하되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 내에 포함된 개별 항, 호, 목의 내용 차이가 크고 신설 시기 및 일몰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일몰기한을 검토함
 -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29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21개 항목은 다수의 조, 항, 호, 목을 포함하고 있음
 - 21개 조세지출 항목은 조, 항, 호, 목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65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총 294개 항목의 일몰 규정 존재 여부, 적용기한을 검토함
- 검토한 294개 조세지출 항목 중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상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108개 항목(36.7%)이고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186개 항목(63.3%)임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40개 항목은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함

〈표 I -2〉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부여 비율

(단위: 개, %)

일몰 부여 여부 ¹⁾	항목 수	비율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108	36.7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186	63.3
계	294 ²⁾	100

주: 1)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2017. 4. 1.)과 개별 세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2)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 중 일부(21개 항목) 항목의 경우 조, 항, 호, 목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의 항목 수인 229개와 차이가 있음

3. 조세특례 일몰제도 심층평가의 개요

- 본 심층평가는 우리나라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신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몰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일몰 부여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조세특례제도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일몰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자칫 조세감면은 기득권화될 우려가 있으며, 설계 당시 확인되지 못한 제도에 내재된 비효율성이 방치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일몰이 없더라도 적절한 주기를 가지고 제도를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임의심층평가의 하나이지만 일반 심층평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연구의 방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제도들 가운데 특정 조건들(지원 규모, 일몰 도래 등)을 만족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개별 제도 단위로 평가함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대상이 되는 개별 조세특례에 대하여 그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됨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심층평가는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와 제도개선방안 등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본 심층평가는 개별 조세특례제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될 일몰 운영 방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심층평가로는 예외적으로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 특히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함
- 첫째는, 신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일몰 부여 기준으로, 어떤 제도는 일몰을 부여하고 어떤 제도는 부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는,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들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일몰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신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몰 부여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특례제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일몰 부여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여 여부와 부여방식(제도 지속기간) 등을 결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일몰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계는 기존 일몰 부여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서부터 시작됨
-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기존 조세지출 평가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일몰이 부여된 제도들은 일몰을 앞두고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음
 - 기존의 의무심층평가제도가 대표적인 검증방법임
 - 이에 반해,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들에 대한 기존 관리방식은 자체평가나 임의심층평가를 통한 점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들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취약한 평가구조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일반적인 일몰제도 특성 분석

가. 일몰제도의 의의

- 일몰제도는 해당 법령을 연장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한이 도래 시 법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지 또는 종료시키는 제도임¹⁾
 -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기존의 법령 등이 소멸하지 않고 신규 법령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일몰제도의 기원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당시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가 대통령에게 규제기관은 10년 동안만 존속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음²⁾
 - 그 이후 정치학자인 로위(Theodore J. Lowi)는 어떤 기관이든 한 번 설치되면 기관의 존속(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몰제도와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일몰제도는 법령에 규정된 일몰기한(존속기한) 도래 시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 상실형 일몰제와 일몰기한(재검토키한) 도래 시 별도의 폐지절차를 통하여 폐지되는 재검토허 일몰제로 구분할 수 있음³⁾
 -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각종 행정조직의 신설 시 또는 일시적인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해당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단기적 달성도가 높음
 - 제도운용이 획일적, 경직성이 강하여 제도 도입의 회피 가능성이 존재함

1) 한국행정연구원, 2009, p. 37~38

2) 하혜수 외, 1998, p. 6

3) 박영도, 2011, p. 322~323

- 재검토행 일몰제는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정책집행 전에 질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나 규제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 적합하며 해당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제도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함
 -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거부감을 완화함
 - 규제 등의 제도를 감축하기 위한 폐지절차가 별도로 필요함

나. 우리나라의 일몰제도 운용사례

- 일몰제도는 사실상 모든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제도나 사업 등 어느 것에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규제분야에 대한 규제일몰제뿐만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등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음
 - 규제분야와 관련한 일몰제에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일정 기간마다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존속기한만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규제일몰제

가) 도입현황

-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본격적으로 규제일몰제를 제도화하였음
 - 동 법에서 규정된 규제일몰제는 “신설규제 및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규제 중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 또한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였음

- 이 규제일몰제는 2013년 7월,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행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나) 평가제도

-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는 크게 자체심사와 이를 토대로 한 위원회 심사로 이루어지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위원회 심사)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함
 - 일몰기한 연장 또는 규제개선 결정 시: 당해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 법제처 제출 등 후속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함
 - 규제 폐지 결정 시: 당해 규제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절차를 착수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매년 심사가 요청된 기한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를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심사가 요청된 총 93건의 일몰규제 중 2건(2.2%)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음⁴⁾
- 2016년에는 심사가 요청된 총 4,240건의 일몰규제 중 201건(4.7%)의 규제를 폐지하고, 1,39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음⁵⁾

2) 행정규칙 일몰제

가) 도입현황

-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09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서는 훈령·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2009년 4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5.24. 시행)을 제정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명시하여야 함
 - 다만, 법령에 위임에 따라 발령되거나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4) 규제개혁위원회, 2016, p. 125~126

5) 규제개혁위원회, 2017, p. 72~73

나) 평가제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몰제 도입과 함께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규칙이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였음
- (위원회 심사)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 (법제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려는 경우로서 법제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 협의요청서와 해당 훈령·예규 등의 원문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훈령·예규·고시·공고 중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것(의무적 규제심사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함
- (정보시스템 등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발령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하며,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 법제처장은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위원회 일몰제

가) 도입현황

- 2008년 5월, 정부에서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하여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

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은 국회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성립되어 2009년 4월부터 시행됨
 -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존속기한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나) 평가제도

-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거나, 존속기한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여 한번 설치된 위원회가 기능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치되는 것을 방지함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현황(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함
- 위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4) 부담금 일몰제

가) 도입현황

- 2009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부담금에 대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의 강화 필요성을 제안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시행됨
 -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나) 평가제도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통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
 -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
 -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제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
 -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용할 수 있음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 위원회에서는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함
-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매 3년마다(2003년, 2006년, 2009년) 전체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부담금의 약 3분의 1을 대상으로 순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본 평가에서는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중복성·유사성 및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존치’, ‘조건부존치’, ‘통합’,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15년에는 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보건·의료·교육·농림 등 23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담금별 종합평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부담금은 3개로 나타남⁶⁾
- 2016년에는 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24개의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건부존치 의견을 받은 부담금은 1개로 나타남⁷⁾

5) 보조금 일몰제

가) 도입현황

-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이에 대한 축소·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1월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시행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한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나) 평가제도

-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실적보고, 정산심사, 연장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7조~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
-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부담금운용평가단, 2015, p. 45~80

7) 부담금운용평가단, 2016, p. 55~109

- (정산심사) 실적보고가 있는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반환 조치를 취함
- (연장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회개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존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보조금 일몰제 실시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하여 연장평가를 실시함
 - 본 평가에서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상 추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으로 평가결과를 판정함
 - 2015년에는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완료사업 및 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사업을 제외한 1,422개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폐지(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0개 사업(9.8%)이었음⁸⁾
 - 2016년에는 16년 말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12년 평가를 받은 사업과 12~14년 동안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72개 사업 중 폐지(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31개 사업(6.6%)이었음⁹⁾

8)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 p. 43

9)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6, p. 33

6) 기금 일몰제

가) 도입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이 없이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기금이 설치되거나 자금의 자의적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¹⁰⁾
-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8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7664호)을 제정하여 기금일몰제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

나) 평가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0)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결과와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¹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함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의 심의를 거쳐야 함

7) 시책 일몰제

가) 도입현황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들 시책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하여 제정 및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도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 II -1> 시책일몰제 도입현황

조례명	제정일자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4.11.3.
광명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0.12.31.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3.12.12.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6.12.26.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08.1.10.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08.11.10.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3.12.27.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7.3.23.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2010.2.16.

나) 평가제도¹²⁾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함
 -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월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7월에 각각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일몰제 운용과 관련하여 사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책일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국·단·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되도록 규정함

12) 2008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책일몰제를 도입한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음

8) 조세특례 일몰제

가) 도입현황

- 구(舊)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조세감면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였음
- 이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세감면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함
 - 1998년 12월, 법 전면개정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영구법체제로 전환하였음
 - 일반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례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함
 - 감면제도별로 일몰규정을 두고 일몰기한 도래 시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조세감면제도의 변화를 추구함
 - 법 전면개정 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중 이미 그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의 조세특례와 신설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각각의 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특정하는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평가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 조항과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전관리)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 신규조세지출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일몰도래·확대 조세지출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의견제출,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특례 신규도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시행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여야 하며,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조세감면의 목적·정책효과·연도별 예상세수효과·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의 효과 분석 및 조세감면의 존치여부에 관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의 현황을 예산항목별·기능별·세목별 및 감면방법별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함
-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정비계획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정비계획의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조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파악이 가능함
- 2015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103개 항목 중 17개 항목이 일몰되었으며, 2016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26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일몰되었음

다. 일몰제도 운용사례 요약

-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몰제도의 운용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II -2〉 일몰제도 운용사례

구분	시행연도	관련법령	존속기한	평가제도
규제 일몰제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	5년 이내 ¹⁾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자체심사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행정규칙 일몰제	2009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년 이내 ¹⁾ (법제처 협의 시: 5년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 법제처 심사·검토
위원회 일몰제	2009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년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 2년마다 위원회 존폐여부 점검 (존속기한 없는 경우)
부담금 일몰제	2010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10년 이내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부담금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평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일몰제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이내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평가 (국회 제출)
기금 일몰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5년 이내	-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및 결산보고서 제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장관 확인·점검
시책 일몰제	2008년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1년(매년 일몰 여부 검토)	-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 심의·결정 -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
조세특례 일몰제	1977년 ²⁾	조세특례 제한법	제도별 상이	- 자체평가(조세감면 효과분석) -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사후 심층평가 실시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주: 1)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 가능

2)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77년부터 전체 항목에 대하여 일몰규정을 두었으며,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개별 항목에 대한 일몰규정으로 전환하였음

<표 II -3> 주요 일몰제도의 일몰비율

(단위: 개, %)

구분	2015년			2016년		
	일몰도래 항목 수	일몰	일몰비율	일몰도래 항목 수	일몰	일몰비율
규제	93	2	2.2	4,240	201	4.7
부담금	1,422	140	9.8	472	31	6.6
조세특례	103	17	16.5	26	4	15.4

2. 관련 선행연구

-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조세지출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중 일부의 형태로 일몰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행정규제 등에 적용된 일몰제도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였으며 해외 일몰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국내 일몰제도의 발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가. 하혜수·임도빈(1998),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1) 연구목적

- 일몰제도의 취지와 개혁수단으로서의 장점을 고찰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몰제도(조례, 규칙, 기관설치, 보조사업, 시책 등)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향 및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일몰제도와 경기도 일몰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고찰함

2) 연구결과

□ 저자가 제안하는 일몰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일몰제도의 발전방향

- 일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실국별로 일몰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일상 업무 속에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몰제도 근거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일몰제도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일몰심사의 적용대상을 기관(조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몰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심사기준을 보다 정교화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몰심사 운영의 개선

- 일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기간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하며, 심사주기 역시 탄력적인 적용(일몰제도 도입 초기에는 심사주기를 짧게, 점점 심사주기를 길게 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전문적인 일몰심사기구의 설립과 이를 뒷받침해 줄 전문가 집단의 확보가 필요함
- 일몰심사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시민공청회 개최 등)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롭게 설치되거나 제정되는 기구와 사업, 법규에 대하여 신설이나 제정 전에 일몰심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일출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유관 제도와의 연계

- 조직이나 부서의 성과평가제도와 일몰심사의 상호연계가 필요함
- 성과감사제도를 통하여 감사제도와 일몰심사의 연계 및 상호보완이 필요함
- 예산제도 자체를 성과주의예산제도로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여 일몰제도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몰심사와 행정개혁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3) 본 연구와의 연관성

- 해당 연구는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을 언급하였음
 - 특히, 일몰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기간이나 주기의 탄력적인 적용과 전문적인 일몰심사기구의 설립과 같은 제안은 현행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박영도(2013),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 연구목적

- 행정규칙 일몰제의 이론적 기초와 선진국가의 일몰제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하였음
 - 특히, 2009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별 행정규칙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연구결과

- 향후 행정규칙 일몰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의 합리적인 운용기법과 방법론을 제시함
 - 행정규칙 일몰제를 확대·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적합하지 않은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행정기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일몰시점과 일몰시간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일몰제를 적용한 행정규칙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평가 내지는 심사를 위한 제도화된 절차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

3) 본 연구와의 연관성

- 해당 연구는 행정규칙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독일, 호주, 일본)의 도입현황과 운용실태, 평가제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 다만,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일몰 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일몰 부여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부여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특히, 일몰이 부여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일몰이 미부여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다. 문예영·신영임(2014), 「조세지출 일몰연장 요인분석」,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pp. 49~72

1) 연구목적

- 조세지출 항목을 기능별, 세목별 및 조문별 금액과 일몰연장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연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실증분석을 위하여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3년 실적치까지의 모든 조세지출 항목 중 총 537개를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
 - 또한, 일몰연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혜집단 여부 및 조세지출의 목적을 고려한 성장률과 소득재분배 효과성을 고려하였음

2) 연구결과

- 조세지출규모가 클수록, 지속기간이 길수록 조세지출이 연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자 집단의 특성도 조세지출 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또한, 해당 조세지출의 성장률 및 소득재분배 제고 효과가 연장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의 연장 여부에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조세지출 규모의 지속기간이나 거시경제 상황이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정책은 해당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3) 본 연구와의 연관성

- 해당 연구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연장 요인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변수가 일몰연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 조세지출의 연장 여부에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성보다 조세지출 규모나 지속기간, 수혜자 집단의 특성이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일몰 적용기한을 책정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목적, 수혜대상, 제도 시작 시기 등 특징이 될 만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일몰 적용기한의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라. 유한욱(2016),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pp. 73~92

1) 연구목적

-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안정화 방안, 즉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관리 및 정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였음

2) 연구결과

-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함께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이 「조특법」상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선정된다는 점,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사전·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 국세청의 자료협조 문제 등 성과평가의 한계점을 지적함
 - 따라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별 세법상의 조세지출도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일몰규정이 없는 대규모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함

3) 본 연구와의 연관성

- 해당 연구는 조세지출 항목 수, 규모에 대한 추이,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정비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조세지출 관련 정보공개와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함
 - 본 연구의 쟁점사항 중 하나인 일몰이 부여된 제도(특히, 조세지출 규모 300억 원 이하)와 일몰 미부여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해당 연구에서 언급된 문제점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국회예산정책처(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조세지출』, pp. 95~96

1)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및 발간하고 있음

2) 연구결과

□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및 조세지출 정비에 대한 최근 동향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세지출의 일몰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세지출 심층평가가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비중이 상당하여 일몰규정이 부재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재정지출 사업의 엄격한 관리제도 준용의 필요성, 조세지출의 폐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규정을 도입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재정지출의 경우 매년 예산 또는 결산 시에 사업별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폐지 및 조정이 이루어지나, 조세지출은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평가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체계적인 평가 수행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일몰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조세지출의 경우 정책 목표를 감안한 제도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몰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 구분할 수 있을 것임¹³⁾
 - 단기적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된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다수 일몰 규정이 있는 제도에서와 같이 비교적 짧은 2~3년의 일몰 주기를 둘 수 있을 것임
 - 정책 목적이 경제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문제 등 중·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해당 일몰규정을 4~7년 정도로 길게 할 필요가 있음(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R&D비용 세액공제,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 일몰이 도래한 주요 조세특례항목에 대한 심층평가의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비함

13) 국회예산정책처, 2016, p. 75

-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연구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일몰연장의 종합결론을 제시하거나 일몰연장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에도 세법개정안에 일몰연장으로 반영한 사례가 존재함

3) 본 연구와의 연관성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2014) 등 외부기관에서는 조세지출 일몰제도와 관련하여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한 관리 미비, 일몰규정 도입 확대,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음
 - 현행 조세특례제도에 일몰 적용기한을 차등하여 부여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이러한 외부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조세지출 운용방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일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바. 기타 관련 연구

-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세지출제도와 관련한 다른 선행연구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 II-4>에서 간략히 정리함

<표 II-4> 조세지출제도 관련 기타 연구 사례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김필현, 2010)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과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최미희·최종국, 2012)	조세부담공평의 관점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검토함

연구 제목	주요 내용
<p>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2014)</p>	<p>감사원은 조세지출 관리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조세감면 일몰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규정 신설 당시 관행적으로 일몰을 설정하였거나 일몰을 반복적으로 연장한 항목에 대하여 일몰 폐지 검토 - 한시적 지원 목적이 명백한 감면항목을 구분 및 해당 적용시한을 준수
<p>조세지출관리 및 평가체계화방안 (김영록, 2015)</p>	<p>조세지출 관리체계, 추이, 정책수혜자 등의 통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p>
<p>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채은동·이영숙, 2015)</p>	<p>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함</p>
<p>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2010)</p>	<p>OECD 주요 회원국들의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정리 및 비교분석</p>
<p>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ax Expenditures and Tax Reliefs(NAO, 2014)</p>	<p>조세감면제도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개념과 비용추정원리, 영국의 제도평가 등을 정리</p>
<p>Tax Expenditures: Overview and Analysis (Donald J. Marples, 2015)</p>	<p>조세지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조세지출제도들이 갖는 장단점을 분석함</p>

3.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쟁점사항

-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쟁점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일몰 부여 여부의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 일몰을 부여할 경우 적용기한을 제도별로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일몰 미부여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 첫 번째는, 일몰을 부여하는 제도와 부여하지 않는 제도의 구분기준에 대한 논의임
 -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적용기한을 특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몰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들도 상당수 존재함
 - 모든 제도에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일부만 일몰을 부여할 경우 일몰 부여 여부의 기준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함

- 두 번째는, 일몰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임
 - 개별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모든 제도에 특정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따라 제도별로 적용기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
 -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제도가 도입될 것을 감안한다면 일몰 부여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되나, 적용기한 결정에 어느 정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일몰 부여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임
 - 일몰이 부여된 제도는 일몰시기에 평가를 거쳐 제도 연장을 논의하므로 자연스럽게 사후관리가 취해짐

- 일몰이 부여되지 않은 제도는 별도의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면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제도의 성격에 따라 일몰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일몰 미부여 제도도 평가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Ⅲ. 국내 제도운영 분석



Ⅲ. 국내 제도운영 분석

1.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부여방식

가. 조세특례제도 일몰 부여 여부

1) 일몰기한이 없는 경우

- 검토한 294개 조세지출 항목 중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 세법상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108개 항목(전체 검토 대상 중 약 36.7%)임
- 일몰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유형은 <표 Ⅲ-1>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Ⅲ-1> 일몰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단위: 개, %, 억원)

No.	근거법	유형	항목 수	비율	항목당 조세지출 규모 ¹⁾
1	개별세법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	40	37.03	4,314.1
2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 시행(1999. 1. 1.) 전 신설되었으나 조특법 최초 시행 당시에도 일몰 규정을 두지 않은 항목	8	7.41	1,031.4
3		조특법 시행(1999. 1. 1.) 이후 신설되었으나 항목 신설 당시 일몰 규정을 두지 않은 항목	46	42.59	1,175.6
4		항목 신설 당시에는 일몰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항목	12	11.11	418.0
5		항목 신설 당시에는 일몰 규정 없었으나 중간에 일몰 규정을 두었다가 현재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항목	2	1.85	26.3
계			108 ²⁾	100	2,628.3

주: 1)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를 통해 계산하였으나 일몰이 있는 항목과 일몰 없는 항목이 혼재된 경우 또는 여러 유형이 혼재된 경우인 28개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함
 2) 전체 검토 대상 항목 294개 중 약 36.7%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항목들과 달리 개별 세법에 규정된 40개 항목들은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중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은 39개이나 항목 내에 신설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 항목으로 분류하여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함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과 제3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 4항에서 적용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항목은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함

<표 III-2> 개별 세법에 규정된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1963.1.1.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	1999.12.3.
3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9의2_3	1999.12.3.
4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가·다·라	1989.1.1.
5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나	1977.1.1.
6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마	2009.1.1.
7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12 (2015.12.15.삭제)	1978.12.5.
8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1999.12.3.
9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89①	1975.1.1.
10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0①4	1989.1.1.
11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1979.1.1.
12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6①10	1999.1.1.
13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7_3	1977.1.1.
14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2000.1.1.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	46	1994.1.1.
16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1966.1.1.
17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1977.1.1.
18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소득	12_3자	2007.1.1.
19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1975.1.1.
2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너	1978.1.1.
21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소득	12_3더	1990.1.1.
22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16①9 (소득(령)25①)	1991.1.1.
23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1989.1.1.
24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1975.1.1.
25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1991.1.1.
2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2013.1.1.
27	연금보험료공제	소득	51의3	2001.1.1.
28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2007.1.1.
29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1995.1.1.
30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1999.1.1.
31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 (구)소득51①4·5; (구)소득51의2	1996.1.1.
32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 (구)소득51의3①2	2013.1.1.
3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	52①;59의4①	1977.1.1.
34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②; (구)소득52②	1978.1.1.
3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 (구)소득52③	1978.1.1.
3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 (구)소득52⑥	1982.1.1.
37	가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1997.1.1.
38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1995.1.1.
39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23의2	2009.1.1.
4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1999.1.1.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최초 시행 당시(1999. 1. 1.)에도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던 항목은 <표 III-3>의 8개 항목임

<표 III-3> 조특법 시행(1999. 1. 1.) 전 신설된 항목 중 일몰기한 규정 없는 경우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21	1982.1.1.
2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특	76	1966.1.1.
3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1	1978.1.1.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4	1992.1.1.
5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	1978.1.1.
6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특	110	1975.1.1.
7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특	114	1974.1.1.
8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조특	115	1966.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1999. 1. 1.) 이후 신설되었으나 개별 항목의 신설 당시부터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항목은 <표 III-4>의 46개 항목임

<표 III-4> 조특법 시행(1999. 1. 1.) 이후 신설된 항목 중 일몰기한 규정 없는 경우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6의3	2015.1.1.
2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0	1999.1.1.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7	2010.1.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	2010.1.1.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0	2006.1.1.
6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70의2	2014.1.1.
7	기부장려금	조특	75	2016.1.1.
8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87②	2008.1.1.
9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5의2	2014.12.23.
10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3	2014.1.1.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4	2014.1.1.
12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조특	100의2~10	2008.1.1.
13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자녀장려금지급	조특	100의27~31	2014.1.1.
1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8	2004.1.1.
1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9	2009.1.1.
16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2010.1.1.
17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5의2	2002.1.1.
18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3	2004.1.1.
19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4	2011.1.1.
2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0	1999.8.31.
21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조특	111의4	2013.1.1.
22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6	1999.1.1.
23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	1999.1.1.
24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의2	2004.1.1.
25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의3	2009.1.1.
26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8	1999.1.1.
27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9	1999.1.1.
28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3	2009.5.21.
29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	2003.1.1.
30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의2	2004.1.1.
31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의3	2009.1.1.
32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1	2010.1.1.
33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2	2013.1.1.
34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 121의4	1999.5.24.
35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특	121의3	1999.5.24.
36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조특	121의13	2002.4.20.
3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도시개발사업)	조특	121의17①2	2005.1.1.
3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조특	121의17①4	2010.1.1.
3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	조특	121의17①6	2013.1.1.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40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새만금사업)	조특	121의17①7	2017.1.1.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④	2014.12.23.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⑤	2014.12.23.
4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⑩	2012.3.2.
44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현금영수증 사업자)	조특	126의3①	2004.1.1.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6의6	2011.5.19.
46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1의2	2009.1.1.

□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당시에는 일몰기한을 두었으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표 III-5>의 12개 항목임

<표 III-5> 신설 당시 일몰기한 두었으나 현재 일몰기한 없는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직전 일몰기한
1	창업자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5	2006.1.1.	2013.12.3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2008.1.1.	2013.12.31.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86의3	2007.6.1.	2010.12.31.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4	2001.1.1.	2008.12.31.
5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6	2008.1.1.	2013.12.31.
6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2	2011.1.1.	2013.12.31.
7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4	1999.1.1.	1999.12.31.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⑥	2012.3.2.	2013.12.31.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⑦	2012.3.2.	2013.12.31.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⑧	2012.3.2.	2013.12.31.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⑨	2012.3.2.	2013.12.31.
12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특	126의3②	2008.1.1.	2013.12.31.

-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당시에는 일몰기한 없었으나 중간에 일몰기한을 두었다가 다시 일몰기한이 없어진 경우는 <표 III-6>의 2개 항목임

<표 III-6> 신설 당시에는 일몰기한 없었으나 일몰기한 두었다가
현재 일몰기한 없는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직전 일몰기한
1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1	1978.1.1.	2012.12.31.
2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2	1982.1.1.	2012.12.31.

2) 일몰기한이 있는 경우

- 검토 대상 294개 조세지출 항목 중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186개 항목(전체 검토 대상 중 약 63.3%)임
- 일몰기한 규정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유형은 <표 III-7>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III-7> 일몰기한 규정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단위: 개, %, 억원)

No.	근거법	유형	항목 수	비율	항목당 조세지출 규모 ¹⁾
1	개별세법	개별 세법에 규정된 항목	2	1.1	16
2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 시행(1999. 1. 1.) 전 신설되었고 조특법 최초 시행 당시부터 일몰 규정을 둔 항목	32	17.2	2,708.2
3		조특법 시행(1999. 1. 1.) 이후 신설되었고 항목 신설 당시부터 일몰 규정을 둔 항목	122	65.6	455.5
4		항목 신설 당시에는 일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현재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	28	15.1	1,963.8

No.	근거법	유형	항목 수	비율	항목당 조세지출 규모 ¹⁾
5		항목 신설 당시에는 일몰 규정 있었으나 중간에 일몰 규정이 없어졌다가 현재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	2	1.1	0.0
계			186 ²⁾	100	981.7

주: 1)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를 통해 계산하였으나 일몰이 있는 항목과 일몰 없는 항목이 혼재된 경우 또는 여러 유형이 혼재된 경우인 40개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함
 2) 전체 검토 대상 항목 294개 중 약 63.3%에 해당함

- 조세지출 항목별로 적용기한이 3개월에서 6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의 적용기한을 설정한 경우가 142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76.3%)으로 가장 많음
 - 적용기한은 신설 이후 일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시기부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고 일몰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일몰 연장 시점부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함

〈표 III-8〉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기한 분포

(단위: 개, %)

적용기한 ¹⁾	2년 이하	3년	4년	5년	5.5년	6년	계
항목 수	33	142	3	4	1	3	186
비율	17.7	76.3	1.6	2.2	0.5	1.6	100

주: 1) 적용기한은 신설 이후 일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시기부터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고 일몰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일몰 연장 시점부터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함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2년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33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17.7%)임

〈표 III-9〉 적용기한이 2년 이하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조특	121의25①	2016.10.4.	0.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②	2012.3.2.	0.3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	조특	104의11①	2009.3.25.	0.8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2	2008.9.26.	1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과세특례	조특	91의15	2014.1.1.	1
6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5	2017.1.1.	1
7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조특	121의25⑦·⑧	2016.10.4.	1.3
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4	2014.5.14.	2
9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18①3	1980.1.1.	2
1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	108	1992.1.1.	2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2	1999.8.31.	2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2	2001.1.1.	2
13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14(삭제) 부칙 제62조	2002.4.20.	2
1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8의2	2003.1.1.	2
15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6	2007.1.1.	2
16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3	2008.1.1.	2
1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	2008.1.1.	2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8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11의2	2008.5.	2
19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2	2011.1.1.	2
2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7의6	2011.5.19.	2
21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3	2013.1.1.	2
22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조특	74①7바	2014.1.1.	2
23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특	74①9	2014.1.1.	2
2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특	104의26	2014.1.1.	2
25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3	2015.1.1.	2
26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2의4	2014.1.1.	2
2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7	2014.1.1.	2
28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의4	2016.1.1.	2
29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	29의5	2016.1.1.	2
30	해외주식 투자전문펀드 비과세특례	조특	91의17	2016.1.1.	2
3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	107의3	2016.1.1.	2
3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1979.1.1.	2
33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1991.1.1.	2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142개 항목(일몰 기한 있는 항목 중 76.3%)임

<표 III-10> 적용기한이 3년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1966.1.1.	3
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2	1966.1.1.	3
3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5	1970.1.1.	3
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6	1974.1.1.	3
5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7	1974.1.1.	3
6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	1976.1.1.	3
7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특	74①	1977.1.1.	3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개별소비세)	조특	111①2	1977.1.1.	3
9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가치세)	조특	106①1	1978.1.1.	3
10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9	1978.12.5.	3
11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11	1978.12.5.	3
1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3	1980.1.1.	3
1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①	1982.1.1.	3
14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	1982.1.1.	3
1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1983.1.1.	3
1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2	1983.1.1.	3
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	13①	1984.4.9.	3
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	1987.1.1.	3
19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	1987.1.1.	3
20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④·⑤·⑥	1987.1.1.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4	1987.1.1.	3
2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5·6	1989.1.1.	3
23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3	1990.1.1.	3
2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6	1990.1.1.	3
2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68	1990.1.1.	3
2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3	1990.1.1.	3
27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특	5	1991.1.1.	3
28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1	1991.1.1.	3
2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2	1991.1.1.	3
30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3	1991.1.1.	3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1992.12.8.	3
3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①1·2·3	1994.1.1.	3
3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	1994.1.1.	3
34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②9	1997.1.1.	3
3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	1997.1.1.	3
3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	1997.1.1.	3
3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6	1997.8.30.	3
38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	116①19	1997.8.30.	3
39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7	1998.1.1.	3
40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4	1998.11.17.	3
41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0	1998.2.24.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4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52	1998.9.16.	3
4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	13④	1999.1.1.	3
4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4	1999.1.1.	3
45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140	1999.1.1.	3
4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0	1999.8.31.	3
47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1999.8.31.	3
48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	1999.8.31.	3
49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3의2	2000.1.1.	3
5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의3	2000.1.1.	3
51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조특	117①16	2000.10.21.	3
5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특허권 등 취득)	조특	12②	2001.1.1.	3
53	주식의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2	2001.1.1.	3
54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특	88의5	2001.1.1.	3
55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특	89의3	2001.1.1.	3
56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2	2001.1.1.	3
57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의2①1	2001.1.1.	3
58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의2①2	2001.1.1.	3
5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6	2002.1.1.	3
60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3	2002.1.1.	3
6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8	2002.4.20.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62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9	2002.4.20.	3
6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0	2002.4.20.	3
6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특	121의11	2002.4.20.	3
6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99의4	2004.1.1.	3
6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②	2005.1.1.	3
67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	101	2005.1.1.	3
6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06의7	2005.1.1.	3
6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	조특	121의17①1	2005.1.1.	3
70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2의2	2005.7.13.	3
7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7	2005.7.13.	3
7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4	2006.1.1.	3
7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0의2	2007.1.1.	3
7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의2	2007.1.1.	3
7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	71	2007.1.1.	3
7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136③	2007.6.1.	3
7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4	2008.1.1.	3
78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의2	2008.1.1.	3
7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77의2	2008.1.1.	3
80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②	2008.1.1.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8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7	2008.1.1.	3
82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4	2008.1.1.	3
8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	122의3	2008.1.1.	3
84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특	111의3	2008.5.	3
8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의3	2009.1.1.	3
86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8	2009.1.1.	3
8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8	2009.1.1.	3
88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1	2009.1.1.	3
89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①	2009.1.1.	3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0	2009.1.30.	3
9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3	2009.3.25.	3
92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4	2009.5.21.	3
9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2010.1.1.	3
94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85의10	2010.1.1.	3
9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87의2	2010.1.1.	3
96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2	2010.1.1.	3
9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내 사업)	조특	121의17①3	2010.1.1.	3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2010.3.12.	3
9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의4	2010.3.12.	3
10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	121의21	2010.5.14.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특	8의3	2011.1.1.	3
10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	26	2011.1.1.	3
103	지방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특	74④	2011.1.1.	3
10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2011.1.1.	3
105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5의2⑤	2011.7.25.	3
10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의2	2011.7.25.	3
107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①2의3	2012.1.1.	3
108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62	2012.1.1.	3
10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2012.1.1.	3
110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9의2	2012.1.1.	3
11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④	2012.1.1.	3
11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2	2012.1.1.	3
11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조특	104의11⑤	2013.1.1.	3
1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8의2	2013.1.1.	3
115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 구역 내 신설 사업)	조특	121의17①5	2013.1.1.	3
1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조특	16의2	2013.8.13.	3
11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특허권 등 이전)	조특	12①	2014.1.1.	3
118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합병)	조특	12의3	2014.1.1.	3
119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주식취득)	조특	12의4	2014.1.1.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2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7	2014.1.1.	3
121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2014.1.1.	3
12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6	2014.1.1.	3
12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의5	2014.1.1.	3
12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의4	2014.1.1.	3
12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특허권 등 대여)	조특	12③	2015.1.1.	3
126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3	2015.1.1.	3
12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4	2015.1.1.	3
128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특	97의5	2015.1.1.	3
129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	97의6	2015.1.1.	3
13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7	2015.1.1.	3
131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29의6	2016.1.1.	3
1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조특	91의18	2016.1.1.	3
133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	97의7	2016.1.1.	3
134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8	2016.1.1.	3
135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5	2016.1.1.	3
136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조특	117①24	2016.1.1.	3
13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6	2016.1.1.	3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38	채무의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7	2016.1.1.	3
13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28	2016.1.1.	3
14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9	2016.1.1.	3
141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0	2016.1.1.	3
14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31	2016.1.1.	3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4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3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1.6%)임

<표 III-11> 적용기한이 4년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18	1982.1.1.	4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조특	121의23⑩	2012.3.2.	4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조특	121의23③	2014.1.1.	4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5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4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2.2%)임

<표 III-12> 적용기한이 5년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2	2000.10.21.	5
2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	2009.5.21.	5
3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6②16; 116①26; 118①17	2012.1.1.	5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2	2013.1.1.	5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5.5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1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0.5%)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3 제1항)는 「조특법」 제121조의23에 속한 다른 항(제3항, 제10항)과 일몰기한을 2017. 12. 31.로 동일하게 설정하다 보니 적용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임

<표 III-13> 적용기한이 5.5년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①	2012.3.2.	5.5

- 검토 대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용기한을 6년으로 설정한 경우는 3개 항목(일몰기한 있는 항목 중 1.6%)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19호 등)은 행사 연도 말일 일몰기한으로 정하여 적용기한이 6년으로 설정되었음

〈표 III-14〉 적용기한이 6년인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적용기한 (년)
1	자회사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조특	39①1	2009.5.21.	6
2	자회사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 청산 종결)	조특	39①2	2009.5.21.	6
3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6②19; 116①28; 118①19	2013.1.1.	6

- 종료 시기가 분명한 일회성의 국제행사는 행사 종료 시기를 일몰기한으로 설정 하되 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함
 -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7호 바목)은 행사 연도인 2015년말까지 적용함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 2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 지원(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19호,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28호)은 행사 연도인 2018년 말까지 적용함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7호 나·다목)은 행사 연도 이후인 2019년 말까지 적용함

〈표 III-15〉 국제행사 관련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일몰기한	총 적용기간 (년)
1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¹⁾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 기대회 조직위원회 ²⁾)	조특	74①7나	2009.1.1.	2019.12.31.	11
2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 조직위원회 ³⁾)	조특	74①7나	2010.3.12.	2019.12.31.	9.8
3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조특	74①7다	2013.1.1.	2019.12.31.	7
4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 육대회 조직위원회)	조특	74①7바	2014.1.1.	2015.12.31.	2
5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8	2016.1.1.	2018.12.31.	3
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6②19 116①28	2013.1.1.	2018.12.31.	6

주: 1), 2),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해당 법은 2017. 7. 현재에도 시행 중임

1. 신설 시기부터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몰 연장이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특정 시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적용기한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조특법」 제104조의19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5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됨
 - 「조특법」 제104조의22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운동 경기부, 장애인 운동 경기부의 운영 관련 비용 중 10%(장애인 운동경기부 20%)는 3년(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됨
 - 「조특법」 제121조의20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적용대상 및 세목에 따라 5년~7년의 적용기한을 둠

나. 조세특례제도 일몰 기간별 특성

1)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들의 특성

- 검토 대상 항목들의 신설 시기별로 일몰 규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교적 오래된 항목일수록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표 III-16> 신설 시기별 일몰 부여 여부 분포

(단위: 개)

신설 시기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10	2011~현재
일몰 없음 (항목 수)	4	17	6	24	29	28
일몰 있음 (항목 수)	2	10	13	29	57	75
소계	6	27	19	53	86	103
일몰 없음 (%)	66.7%	63.0%	31.6%	45.3%	33.7%	27.2%
일몰 있음 (%)	33.3%	37.0%	68.4%	54.7%	66.3%	72.8%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일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항목 중 약 21.3%는 국방, 외교, 농업 관련 지원(외교관, 군인, 외국인, 농·어업인 등 지원) 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고 있음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특정 대상인 외교관, 군인, 외국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 <표 III-17>과 같음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한 부모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 <표 III-18>과 같음

<표 III-17> 국방, 외교, 농업 관련 지원의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특	110	1975.1.1.
2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조특	111의4	2013.1.1.
3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특	114	1974.1.1.
4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군인, 전투경찰 등)	부가	26①10	1999.1.1.
5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조특	115	1966.1.1.
6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 121의4	1999.5.24.
7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특	121의3	1999.5.24.
8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1966.1.1.
9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1977.1.1.
10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1995.1.1.
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0	2006.1.1.
1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5의2	2002.1.1.

<표 III-1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는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이 구입 승용차)	개소	18①3가	1989.1.1.
2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1979.1.1.
3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1975.1.1.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1999.1.1.
5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5①4	1992.1.1.
6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10	1999.8.31.
7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1989.1.1.
8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2007.1.1.
9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조특	100의2~10	2008.1.1.
10	근로장려및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지급	조특	100의27~31	2014.1.1.
11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2013.1.1.

- 일몰기한 규정이 없는 항목 중 약 30.6%는 지원 기간을 단기로 한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 형성이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항목들임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사회적 기반 형성(주택 건설, 임대주택, 기업도시 개발 등)과 관련된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 <표 III-19>와 같음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중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 <표 III-20>과 같음

<표 III-19> 사회적 기반 형성과 관련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①4	1978.1.1.
2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9	2009.1.1.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3	2014.1.1.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97의4	2014.1.1.
5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도시개발사업)	조특	121의17①2	2005.1.1.
6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조특	121의17①4	2010.1.1.
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	조특	121의17①6	2013.1.1.
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새만금사업)	조특	121의17①7	2017.1.1.

<표 III -20>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No.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신설 시기 (시행일)
1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1	1978.1.1.
2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	32	1982.1.1.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7	2010.1.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	2010.1.1.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2010.1.1.
6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6	1999.1.1.
7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	1999.1.1.
8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의2	2004.1.1.
9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7의3	2009.1.1.
10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8	1999.1.1.
11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9	1999.1.1.
12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3	2009.5.21.
13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4	1999.1.1.
14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	2003.1.1.
15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의2	2004.1.1.
16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19의3	2009.1.1.
17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1	2010.1.1.
18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17①22	2013.1.1.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④	2014.12.23.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⑤	2014.12.23.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⑥	2012.3.2.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⑦	2012.3.2.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⑧	2012.3.2.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⑨	2012.3.2.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23⑩	2012.3.2.

2) 일몰기한 규정이 있는 항목들의 특성

- 일몰기한 규정이 없는 항목들과 있는 항목들 간의 차이는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일몰기한 규정 있는 항목들 중 적용기한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움
 -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1999. 1. 1.)되면서 5년의 적용기한을 둔 항목들도 있었으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되면서 해당 항목들은 현재 모두 3년의 적용기한을 갖고 있음
 - 적용 기간이 2년 이하인 항목과 3년인 항목의 목적, 수혜 대상과 같은 내용상 차이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음
 - 적용기한이 4년~6년인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최근 10년 사이에 신설된 것으로 볼 때(<표 III-11>, <표 III-12>, <표 III-13>, <표 III-14> 참조) 적용기한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은 최근 들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일몰 연장되면서 적용기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목도 있고 불규칙하게 바뀌는 항목(예를 들어 적용기한이 2년 → 3년 → 2년으로 변경)도 있어 일정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 기간(신설 시점부터 2017년 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음
 -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일몰 있는 항목 중 약 52.2%를 차지함

<표 III-21>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 기간 분포

(단위: 개, %)

총 적용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항목 수	19	23	47	53	20	15	9	186
비율	10.2	12.4	25.3	28.5	10.8	8.1	4.8	100

-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횟수를 살펴보면 <표 III-22>와 같음
 - 일몰이 도래하였을 때 일몰기한이 연장된 횟수가 3회 이상인 항목의 수는 일몰 있는 항목 중 약 68.2%를 차지함
 - 7회 연장된 항목은 「조특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개 항목이고, 11회 연장된 항목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개 항목임
 - 일몰기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연장으로 장기간 적용되어 온 조세지출 항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II-22>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횟수 분포

(단위: 개, %)

일몰 연장 횟수	1	2	3	4	5	6	7	11	계
항목 수	26	23	17	28	38	18	3	1	154
비율	16.9	14.9	11.0	18.2	24.7	11.7	1.9	0.6	100

주: 일몰 있는 조세지출 항목 184개 중 신설 이후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32개 항목은 분포에서 제외함

-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일몰 도래 예정이었던 항목들의 일몰 또는 일몰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I-23>과 같음
 - 일몰 예정이었던 항목 중 일몰된 항목의 비율은 2014년 11.9%, 2015년 16.5%, 2016년에 15.4%임

<표 III-23> 조세지출 항목의 2014~2016년 일몰 및 일몰 연장

(단위: 개,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 수	비율	항목 수	비율	항목 수	비율
일몰 항목 ¹⁾	7	11.9	17	16.5	4	15.4
일몰 연장 항목	52	88.1	86	83.5	22	84.6
계 ²⁾	59	100	103	100	26	100

주: 1) 2015년 일몰된 항목 중 4개 항목과 2016년 일몰 항목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함

2)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 검토를 통해 2014년, 2015년, 2016년 일몰 도래했던 항목의 수를 집계함

-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일몰 연장된 항목들의 개정 이유(일몰 연장 이유 포함)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24>와 같음
 - 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항목들이 일몰 연장되었음

<표 III-24> 2014~2016년 일몰 연장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이유

(단위: 개, %)

개정 이유 ¹⁾ (일몰 연장 이유)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 수	비율	항목 수	비율	항목 수	비율
경제 활력 제고	32	61.5	43	50.0	8	36.4
민생 안정	13	25.0	28	32.6	9	40.9
공평 과세	3	5.8	9	10.5	2	9.1
조세제도 합리화	2	3.8	0	0.0	0	0.0
미제시	2	3.8	6	7.0	3	13.6
계	52	100.0	86	100.0	22	100.0

주: 1) 2016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6)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201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4)과 2015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5)에서도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일몰기한 존재 여부나 적용기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 검토 항목 중 일부는 일몰기한이 상이한 항목을 다수 포괄하고 있어 조세지출 예산서상의 분류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검토하였는데 그러한 항목의 경우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확인이 어려웠음

2.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평가

가. 현행 제도들의 일몰 부여여부에 대한 평가

- 전체 검토대상 제도(총 294개) 가운데 108개 항목(36.7%)에 일몰기한이 규정되지 않음
 - 108개 항목 중 40개는 개별 세법상의 조세지출제도이며, 68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 가운데에는 27.0%(252개 중 68개)가 일몰기한이 없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제도 가운데 현재 일몰기한이 없는 68개 제도 중 애초부터 일몰이 없었던 제도가 54개로 80%에 육박함
- 이 54개 제도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은 찾을 수 없었으나, 분야 및 대상에 있어서는 몇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음
 - 분야별로는 대체로 외교, 국방, 농·어업, 금융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정책대상은 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무주택자 등)이나 기업부문의 혁신(창업, 구조조정 등) 및 사회기반시설이 다수를 차지함
- 기존에는 일몰기한이 있었으나 제도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몰기한이 사라진 14개 제도들도 상술한 분야와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음
 -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없던 제도와 기한 연장과정에서 일몰이 사라진 제도 간의 특성상의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려움
 - 오히려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와 대상이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들과 유사점이 많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몰을 부여되지 않은 제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평가됨
 -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일몰을 부여하여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막고 그 실효성에 따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임
 - 일몰을 부여하는 이유는 크게 조세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정책목적이 기한을 가지는 경우 제도를 적절하게 폐지하기 위함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들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 중 약 27%의 제도에 일몰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외사례라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높다고 판단됨

나. 현행 제도들의 적용기한에 대한 평가

- 현행 제도들의 적용기한은 대부분 3년 이하(94.0%)로 부여되고 있음
 - 적용기한이 3년인 제도가 142개로 76.3%, 2년 이하인 제도가 33개로 17.7%를 차지함

- 그러나 적용기한을 차등 부여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적용기한을 3년 이하로 부여하는 경우와 3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 사이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음

- 적용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제도는 대체로 일몰이 없는 제도들이 가지는 특성을 공유하거나 국제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적용기한 3년 초과 제도는 총 11개이며, 이 중 2개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제도임
 - 나머지 9개 제도는 대부분 기업구조조정 등 일몰이 미부여된 제도들과 유사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음

- 적용기한은 다양한 것에 반해 거의 대부분의 제도들의 일몰이 연장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운용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적용기한을 차등 부여하는 근거가 미약함
 - 90% 내외의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됨
 - 적절한 기간 동안 제도를 운용하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엄밀하게 운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제도별로 적용기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몰 시 일몰연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 의미가 있을 것임
 - 일몰연장의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적용기한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임

3. 일몰 부여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조세특례제도는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사후관리를 진행함
 - 자체평가는 현행 조세지출 항목들의 소관부처에서 각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배점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의무심층평가’라고 함
 -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심층평가를 ‘임의심층평가’라고 구분함

- 현행 제도상 일몰 미부여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체평가나 임의심층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평가나 심층평가는 일몰 도래 제도를 기본 평가대상으로 하며,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을 주기로 자체평가만을 실시함
 - 일몰이 없는 제도라도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는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음(「기획재정부훈령」 제187호 제2장 제5조 제2항)
 - 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들로서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지속적인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체평가의 경우, 제도의 소관부처에서 자신들의 제도를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존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유효성이 크지 않음
 - 일부 항목(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소관부처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소관부처의 평가의견서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 결과는 실질적으로 각 담당자의 작성 성실도 평가에 가까움
 - 자체평가에 의해 제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
 - 자체평가의 등급과 세법개정 방향이 동일하지는 않음

- 임의심층평가는 평가항목의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이 의무심층평가에 준하여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세법개정안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임의심층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의무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의무심층평가 대상 이외에는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움

- 한편, 일몰이 있다고 하여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제도들은 자체평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그 평가의 실효성이 낮음
 - 상술한 이유들로 인해 자체평가만으로는 의미 있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일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일괄적이거나 정기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일몰이 있는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초과 제도들은 심층평가를 통해 대체로 상당한 수준의 평가관리가 이루어짐
 - 심층평가는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타당성, 효과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근거로 평가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수준은 높다고 판단됨
 - 다만, 심층평가 대상 제도들 중에는 적용기한 동안의 국세청 실적자료가 충분치 못한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효과성의 분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함

IV. 해외 제도운영 분석



IV. 해외 제도운영 분석

1. 미국의 제도운영

가. 조세지출 항목의 법적 근거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지출 항목만을 따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음
- 주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소득세(Income taxes) 부분에서 조세지출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 「의회 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서 조세지출을 ‘세수를 감소시키는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을 규정한 연방 세법 조항’으로 정의함
 - 미국 예산법은 주로 소득세를 기준(normal income tax structure)으로 하여 조세지출을 정의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조세지출은 개인과 법인의 연방 소득세에 대한 특례 조항만을 포함함(JCT, 2015, p. 3)
 - 소득세 외에 소비세(excise taxes), 고용세(employment taxes), 재산세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에 대한 특례 조항도 넓은 의미의 조세지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하여 검토해오지는 않음(JCT, 2015, p. 3)

나. 조세지출 목록

-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로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음
- 구체적인 조세지출 목록은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의 조세지출 목록(Estimates of federal tax expenditures)과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부분(Analytical perspectives: tax expenditur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 입법부 관점: 합동조세위원회의 조세지출 목록

-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의회 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현 세법하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출하여야 함(2 U.S.C §602(e)(1)¹⁴⁾)
- 합동조세위원회는 의회예산처의 조세지출 보고 의무가 법에 규정되기 전인 1972년부터 조세지출과 관련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의회예산처의 보고 의무가 법에 규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세지출 관련 보고를 해옴(JCT, 2015, p. 2)
- 의회예산처는 합동조세위원회의 조세지출에 대한 추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함(JCT, 2015, p. 2)
- 입법부에서 여러 세법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로 분류하는지는 합동조세위원회가 매년 제시하는 조세지출 목록(Estimates of federal tax expenditur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행정부 관점: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목록

-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대통령 예산안에는 경제적 요인과 변화를 반영한 현 세법 하에서의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31 U.S.C §1105 (a)(16)¹⁵⁾)

14) (e) REPORTS TO BUDGET COMMITTEES.—

(1) On or before February 15 of each year,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s on the Budge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 report for the fiscal year commencing on October 1 of that year, with respect to fiscal policy, including (A) alternative levels of total revenues, total new budget authority, and total outlays (including related surpluses and deficits), (B) the levels of tax expenditures under existing law, taking into account projected economic factors and any changes in such levels based on proposals in the budget submitted by the President for such fiscal year,

15) §1105. Budget contents and submission to Congress

(a) On or after the first Monday in January but not later than the first Monday in February of each year, the President shall submit a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Each budget shall include a budget message and summary and supporting information. The President shall include in each budget the following:

- 조세지출 목록과 규모는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작성 후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대통령 예산안의 부록(Analytical perspectives: tax expenditures)에 포함시킴
 - 연도별 조세지출 목록 및 규모는 재무부 홈페이지¹⁶⁾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음
- 행정부에서 세법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로 분류하는지는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목록 비교

- 합동조세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세지출 항목과 재무부 및 관리예산처가 작성하는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규모 추정의 근거로 활용한 자료도 차이가 있어 추정 규모에도 차이가 있음(JCT, 2017, p. 18)
- (포괄 기간) 합동조세위원회는 현 회계연도를 시작연도로 5년간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는 데 반해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회계연도를 시작연도로 11년간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함
- (소규모 조세지출 항목의 처리) 합동조세위원회는 5년간 조세지출 규모가 5,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 데 반해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은 1,000만달러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함
- (규모 추정의 근거) 합동조세위원회의 조세지출 규모는 CBO의 경제 전망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데 반해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은 행정부의 경제 전망에 근거하여 산출됨

(16) the level of tax expenditures under existing law in the tax expenditures budget (as defined in section 3(a)(3) of 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2 U.S.C. 622(a)(3)) for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budget is submitted, considering projected economic factors and changes in the existing levels based on proposals in the budget.

16)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Pages/Tax-Expenditures.aspx>

- (기준 조세) 합동조세위원회는 표준 조세(normal tax baseline)를 기준으로 이를 벗어나는 예외적 조항을 조세지출로 구분하는 데 반해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준거 조세법(reference tax law) 기준도 활용하되 표준 조세 기준에 의하면 조세지출이 나 준거조세법 기준에 의하면 조세지출이 아닌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함
- 표준 조세 기준은 ‘특정 기간 동안 소비와 부의 변화로 측정되는 포괄적인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특례’를 조세지출로 보는데, 준거조세법 기준은 ‘재정지출과 유사하게 특정 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특례’만을 조세지출로 봄(OMB, 2017, p. 225)

<표 IV-1>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비교

비교 항목	합동조세위원회 (JCT)	대통령 예산안 (OMB·재무부)
기간	현 회계연도를 시작연도로 5년간의 규모 제시	직전 회계연도를 시작연도로 11년간의 규모 제시
소규모 조세지출 처리 방법	5년간 조세지출 규모가 5,000만달러 이하인 항목은 규모 미제시	1,000만달러 단위로 반올림
규모 추정의 근거	CBO의 경제 전망에 근거하여 계산	행정부의 경제 전망에 근거하여 계산
기준 조세	표준 조세(normal tax)	표준 조세(normal tax)/ 준거 조세법(reference tax law)
조세지출 규모 측정 방법	현재의 법 규정하의 세 부담과 해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차선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의 세 부담 차이	현재의 법 규정하의 세 부담과 해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차선의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가정할 때의 세 부담 차이
차이 예시	특정 기업의 현금계정 선택권을 조세지출에 포함	passive activity loss rules과 자가 주택의 귀속 소득에 대한 공제를 조세지출에 포함

자료: GAO(2005), p. 96.

-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 모두 조세지출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데 <표 IV-2>와 같이 조세지출 항목 수에는 차이가 있음
 - 조세지출의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 항목을 한 쪽에서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포함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제외하여 항목 수에 차이가 발생함
 - 하나의 항목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거나 여러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해서 제시하여서 항목 수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표 IV-2>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항목 수 비교

(단위: 개)

기능별 분류	합동조세위원회 ¹⁾ (FY2016-FY2020)	대통령 예산안 (FY2016-FY2026)
National Defense	4	1
International affairs	10	5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3	2
Energy	20	26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11	8
Agriculture	8	7
Commerce and housing	49 ²⁾	33
Transportation	6	6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8	8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36	28
Health	13	12
Income security	15	21
Social Security	1	2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4	4
General purpose fiscal assistance	3	3
Interest	1	1
Addendum: Ai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³⁾	-	13
계	192	167 ⁴⁾

주: 1) 합동조세위원회에서는 2016~2020년 사이에 조세지출 규모의 합이 5,000만달러 미만인 항목 29개와 규모 추정이 불가능한 31개는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합동조세위원회에서는 Commerce and housing과 Financial institutions를 구분해서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Commerce and housing에 통합하여 제시함

3)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해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조세지출 총 항목 수에서는 제외하고 제시하였으나 합동조세위원회에서는 각 기능에 포함시켜 제시함

4) Ai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에 속하는 13개 항목은 제외한 합계임

자료: JCT(2017), pp. 28~41.

OMB(2017), pp. 22~29.

다. 조세지출의 일몰 규정 및 현황

-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부여 기준이나 일몰기한과 관련된 통합 규정은 없으며 조세지출 항목에 따라 각각 일몰기한을 규정함
- 일몰기한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은 근거법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표 IV-3>과 같이 일몰기한(Termination)을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로 제시함

<표 IV-3> 일몰기한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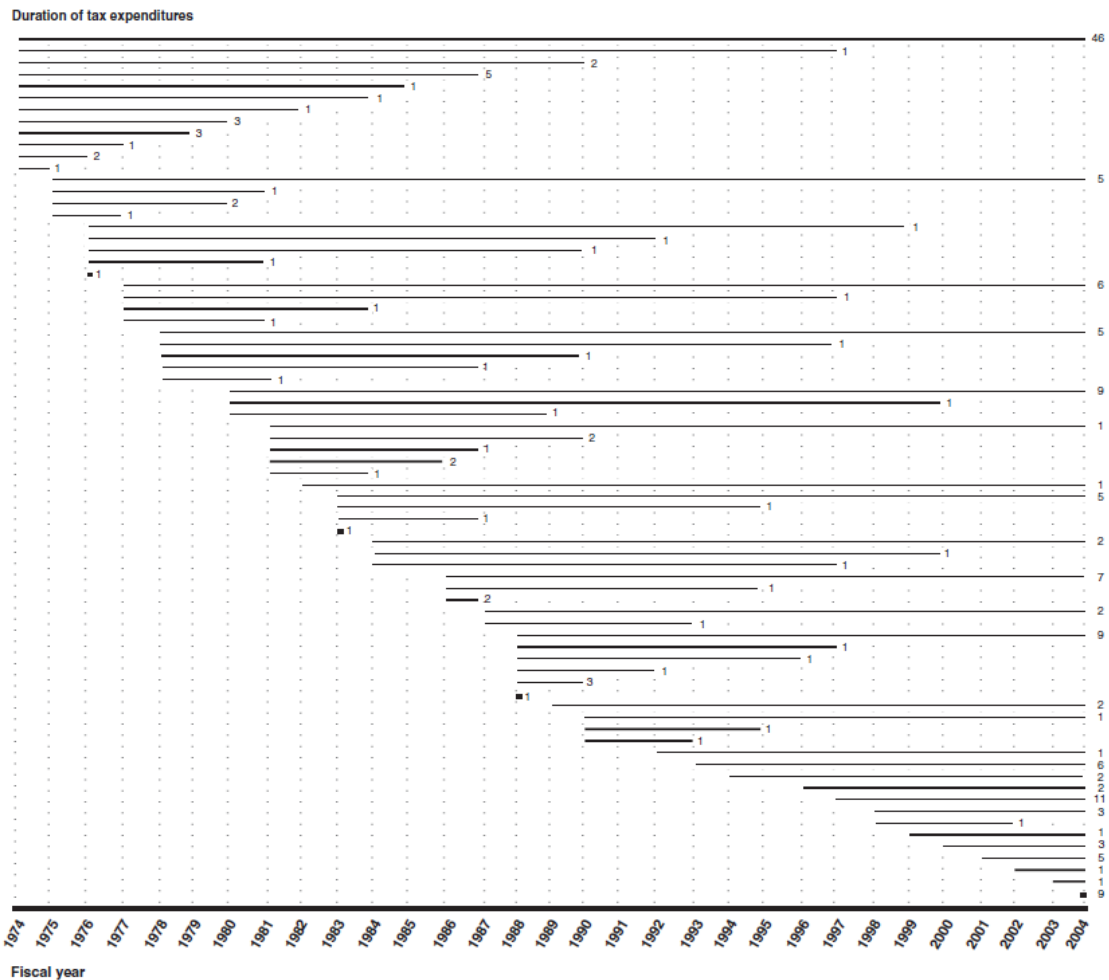
<p>Credit for certain Nonbusiness energy property</p> <p>§25C. Nonbusiness energy property</p> <p>(a) Allowance of credit</p> <p>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her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tax imposed by this chapter for the taxable year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p> <p>(1) 10 percent of the amount paid or incurred by the taxpayer for qualifi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stalled during such taxable year, and</p> <p>(2) the amount of the residential energy property expenditures paid or incurred by the taxpayer during such taxable year.</p> <p>.....</p> <p>(g) Termination</p> <p>This section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placed in service-</p> <p>(1) after December 31, 2007, and before January 1, 2009, or</p> <p>(2) after December 31, 2016..4</p>
--

자료: 미국 법전 홈페이지, <http://uscode.house.gov>, 검색일자: 2017. 6. 30.

- 합동조세위원회와 대통령 예산안의 조세지출 목록에 개별 항목의 근거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항목에 여러 법 조항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세지출 개별 항목 각각이 일몰기한을 가졌는지 일몰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움
-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부여 여부나 일몰기한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분석을 통해 조세지출 항목 대부분이 장기간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회계감사원(GAO, 2005, p. 21~25)의 분석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 수는 146개인데 그 중 32%가 1974년부터 있었던 항목이고 23%는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생긴 항목이며 45%가 1986년 이후 생긴 항목임
- [그림 IV-1]은 각 조세지출 항목의 운영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 2006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약 55%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V-1] 미국 조세지출 항목의 운영 기간



자료: GAO(2005), p. 24.

라.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과 일몰 부여

1)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 (입법 절차) 다른 세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과 관련한 세법 조항도 하원의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발의되어 하원과 상원 양쪽의 검토와 투표를 통해 법 조항으로 확정됨(Amy Hinz & Russell Spivak, 2016, p. 14)

- (PAYGO 원칙의 적용)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세입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입법하고자 할 때 PAYGO 원칙(2 U.S.C. §931-939)이 적용됨(Amy Hinz & Russell Spivak, 2016, p. 18)
 - PAYGO 원칙(pay-as-you-go budgeting rule)은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과 같은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축소나 세수 확보 방안을 같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임
 - 일부 재정지출이나 특정 세법과 관련한 입법은 PAYGO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함(2 U.S.C. §936)

- (일몰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의회의 예산 결의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은 최대 10년의 기한을 가진 일몰기한이 있는 조항으로 입법됨
 - 의회 양원의 합동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은 법에 따라 최소 향후 5년간의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2 U.S.C. §632(a)) 보통 법의 규정보다도 긴 10년간의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양원 합동 예산 결의안의 조정 지침에 따라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 조정 법안도 양원 합동 예산 결의안이 포괄하는 10년간의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 U.S.C. §641-642)
 - 예산 결의안 및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도 예산 조정 법안이 포괄하는 10년 내의 운영 기간을 갖고 신설됨

-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상원의 규칙인 버드 규칙(Byrd rule)의 적용을 받음

- 예산 조정 법안이 포괄하는 기간(10년)을 넘어서는 재정 지출 또는 세입 감소는 예산 조정 법안과 무관한 조항(extraneous provisions)의 한 유형으로 분류됨 (2 U.S.C. §644 (b)(1)(E))
- 예산 조정 법안과 무관한 조항의 입법을 제지하기 위해 상원에서 의사 진행 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5분의 3(100인 중 60인)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버드 규칙이라 함(CRS, 2010, pp. 4~5)
- 예산 조정 법안이 포괄하는 통상적인 기간인 10년을 넘어서는 조세지출 항목의 입법은 버드 규칙에 따라 상원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 과정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

2)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부여 기준

- 조세지출 항목을 일몰이 있는 일시적 조항으로 할지, 일몰이 없는 영구적 조항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법상의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의회가 세법 조항을 영구적 조항이 아닌 일몰기한이 있는 일시적 조항으로 입법하는 이유로 다음을 제시함
 -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법 조항은 일몰이 도래하여 일몰을 할 것인지 일몰 연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세법의 정책적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점이 있음
 - 경기 부양이나 재난 구호와 같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음
 - 영구적 조항에 비해 예산상 고려 즉, 세수 감소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수월함
- 반면에 Amy Hinz & Russell Spivak(2016, pp. 16~18)은 의회가 일몰 없는 세법 조항을 입법하는 이유로 다음을 제시함
 - 일몰이 없는 세법 조항은 의무 지출과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인 검토나 평가(the yearly appropriations process or annual reviews)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 의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을 입법할 때는 PAYGO 원칙과 버드 규칙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에 비해 입법하는 것이 쉽지 않음

마. Tax extender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 Tax extender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짧은 기간(1~2년)에 한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세법 조항들(또는 이들의 연장에 관한 개정 사항을 포괄하는 법)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됨

□ Tax extender에 포함된 것이 모두 조세지출 항목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조세지출 항목에 해당함

○ 합동조세위원회¹⁷⁾와 의회조사국¹⁸⁾이 제시한 Tax extender 중 2016년 일몰 조항과 합동조세위원회의 조세지출 목록 중 2016년 일몰 조세지출 항목¹⁹⁾을 비교한 결과 소비세 관련 2개 항목²⁰⁾만이 제외되었음

□ 일몰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모두 Tax extender에 포함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Tax extender와 관련된 17개의 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한시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일몰이 있는 기존 조항을 영구적 조항으로 개정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17) JCT, (2017), pp. 17~18.

18) CRS, (2016), pp. 9~12.

19) 합동조세위원회의 조세지출 추정 보고서(Estimates of Federal tax expenditures for Fiscal years 2016~2020)에서 2016년 12월말에 일몰인 조세지출 항목의 목록(Expiring tax expenditure provisions)을 제시하고 있음

20) Incentive for alternative fuel and alternative fuel mixtures(Excise tax credit)(secs. 6426(d)5, 6427(e)(6)(C) and 6424(e)(3)), Temporary increase in limit on cover over of rum excise tax revenues (from \$10.50 to \$13.25 per proof gallon) to Puerto Rico and the Virgin Islands (sec. 7652(f))

- 17개의 Tax extender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IV-4> Tax extender 목록

No.	Tax extender
1	Technical and Miscellaneous Revenue Act of 1988(P.L. 100~647)
2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9(P.L. 101~239)
3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P.L. 101~508)
4	Tax Extension Act of 1991(P.L. 102~227)
5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P.L. 103~66)
6	Small Business and Job Protection Act of 1996(P.L. 104~188)
7	Taxpayer Relief Act of 1997(P.L. 105~34)
8	Omnibus Consolidated and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1999(P.L. 105~277)
9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P.L. 106~170)
10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of 2002(P.L. 107~147)
11	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P.L. 108~311)
12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P.L. 109~432)
13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P.L. 110~343)
14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P.L. 111~312)
15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P.L. 112~240)
16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P.L. 113~295)
17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P.L. 114~113)

자료: CRS(2016), p. 20

- 최근의 Tax extender인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P.L. 11~113)」을 통해 의회는 2014년 만료 예정이었던 세법 조항 중 일부는 2016년 또는 2019년까지 연장하고 일부는 일몰기한을 없앴
 - 이전의 Tax extender에서는 지속적으로 1~2년 정도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일몰이 있는 조세 항목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입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없앤 경우가 생김
 - 현재 일몰기한이 2016년 말까지 규정된 세법 조항도 115대 의회에서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음(CRS, 2016, p. 1)

바. 조세지출 항목의 사후 관리

- 일몰 항목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평가 과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개정된 「정부성과관리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에서는 연방정부 성과계획서(Federal Government performance plan) 수립과 연방정부 우선 목표(Federal Government Priority Goals) 달성 검토 시 조세지출도 정책 수단의 하나로 검토하도록 규정함
 - 연방정부 성과계획서(Federal Government performance plan)는 매년 연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연방정부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규제 등의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조세지출도 목표 달성의 수단의 하나로 검토됨(31 U.S.C. §1115 (a)(2)·(4)(B))
 - 연방정부 우선 목표(Federal Government Priority Goals)는 연방정부 내 여러 부처가 연계된 단기간 내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최소한 분기마다 성과 달성 정도를 검토해야 하는데 재정지출, 규제 등의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조세지출의 효과도 검토됨(31 U.S.C. §1121 (a)(3)·(5), 31 U.S.C. §1122 (c)(6)·(7))
 - 개정된 「정부성과관리법」(GPRAMA)에서의 조세지출 검토는 조세지출 자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해당 정책 목표 달성과 연관된 다른 정책 수단들인 재정지출, 규제 등과의 복합적 검토라 볼 수 있음

- 「정부성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세지출이 연방정부의 정책 목표 수립 시 검토되도록 규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원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나 입법부의 예산 과정 모두에서 조세지출은 여전히 재량지출이나 의무지출에 비해 통제나 검토가 약하게 이루어진다고 봄(GAO, 2016, pp. 15-22)
 - 특히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의무지출 항목과 유사하게 재승인 절차나 검토 및 평가과정이 요구되지 않음(GAO, 2016, p. 19)

- 회계감사원은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세수에 미치는 효과, 세법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단순성, 투명

성, 행정상 가능성), 다른 정책수단과의 관계, 측정상의 문제를 제시함(GAO, 2012, pp. 3~7)

- 회계감사원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일부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조세지출 항목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함

2. 일본의 제도운영

- 일본의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운영은 「조세특별조치법」에 조세지출 항목(이하 ‘조세특별조치’)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일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동 법에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²¹⁾
 - 그러나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2010년 세제개편 당시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몰기한 부여 기준을 마련함
 - 이 기준은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에 대한 기본 방침’에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은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각 부처는 제도 신설, 연장 등의 의견을 평가서에 담아 총무성에 제출함과 동시에 세제개편 작업에도 요청함
 - 평가서에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정책 대상자 및 수혜자, 경제적 효과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평가함
 - 조세지출과 관련된 항목은 따로 집계하여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라는 명칭으로 평가 결과 보고서(총무성 작성)를 작성하여 세제개편 작업에 제공 및 공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은 조세특별조치의 신설 및 연장을 위한 정책평가서에 포함되어 제시되고, 평가서에 대한 총무성의 재검토와 각 부처의 세제개편 요구를 거쳐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조세특별조치법에 조세특별조치와 함께 규정됨

21) 이하 일본 명칭인 조세특별조치로 표기

-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일본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
 - 따라서 조세특별조치의 연도별 일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가 어려움
- 일몰기한의 부여는 해당 조세특별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법 규정 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특별조치의 도입 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조세특별조치의 도입 시 부여된 일몰기한의 연장과 조세특별조치 자체의 폐지 여부는 정책평가 결과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됨
 -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정책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세계개편 시 이루어지므로 정책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정책평가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함

가. 현황

- 일본은 2009년 6월 26일 공포법령 기준으로 총 241개의 조세특별조치가 존재하고 그 중 119개 항목에 일몰기한이 존재함(조세지출 항목은 <부표 1-1> 참조)²²⁾

<표 IV-5> 일본의 세목별 조세특별조치 항목 수(2009년 6월 기준)

(단위: 개, %)

	항목 수(A)	일몰기한 존재 항목 수(B)	비중(B/A)	총 항목 수 대비 세목별 일몰기한 존재 비중
법인세	78(32.4)	50	64.1	20.7
소득세	73(30.3)	22	30.1	9.1
상속세	13(5.4)	2	15.4	0.8
지가세	17(7.1)	2	11.8	0.8
등록·면허세	26(10.8)	23	88.5	9.5
간접세	34(14.1)	20	58.8	8.3
계	241(100.0)	119	49.4	49.4

주: ()안은 전체 항목 수 대비 비중
 자료: 2010년 일본 세계개편(안)

22) 이후 2017년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에는 조세특별조치가 500여개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조세특례 조치의 급격한 증가원인으로 2010년에 도입한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세 관련 연결법인의 조세특별조치가 추가되어 그 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조세특별조치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항목에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목별 조세특별조치 수 대비 일몰 존재의 비중은 등록·면허세가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법인세가 64.1%, 간접세 58.8%, 소득세 30.1%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 조세특별조치 중에서 일몰이 존재하는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가 20%로 가장 많은 일몰 항목이 존재하고 소득세, 등록·면허세, 간접세는 8~9%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며, 상속세와 지가세는 1% 미만 수준임

나.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 방침

□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일몰제도 운용원칙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2010년 세제개편(안)’의 ‘[별지 1]’과 ‘[별지 1]의 (별첨)’에서²³⁾ 적용원칙을 찾아 볼 수 있음

23) ‘2010년 세제개편(안) [별지 1]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 방침(平成22年度税制改正大綱【別紙 1】租税特別措置の見直しに関する基本方針)

(원문)

【別紙 1】

租税特別措置の見直しに関する基本方針

1. 見直しの対象

- (1) 租税特別措置の見直しは、租税特別措置法に規定された措置や特例等のうち、産業政策等の特定の政策目的により税負担の軽減等を行う措置（以下 「政策税制措置」という。）に該当するものを対象とする。
- (2) 政策税制措置に該当するもの（現時点で241項目）の全てについて、今後4年間で抜本的に見直す。各年の見直しの対象は、その年度末までに期限が到来する措置に、期限の定めのない措置等を随時加えたものとするを基本とする。

2. 見直しの方針（「ふるい」）

租税特別措置の見直しに当たっては、公平・透明・納得の税制の構築と財源確保の要請を踏まえつつ、以下の方針により行うこととする。

- (1) 既存の政策税制措置のうち、期限の定めのある措置については、その期限到来時に廃止する（サンセット）。ただし、別添の「指針」に照らして合理性、有効性及び相当性のすべてが明確に認められる措置に限り、その内容の厳格な絞込みを前提に、原則として3年以下の期限を付して存続させることを検討する。

なお、別添の「指針」に照らして厳格な見直しを行った結果、実質的に同じ内容の措置を20年を超えて存続させ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原則として、期限の定めのない措置とすることを検討する。

- (2) 既存の政策税制措置のうち、期限の定めのない措置については、関連する措置を見直す場合等の適時に、別添の「指針」に照らして、その適用状況や政策評価等を踏まえて存続の必要性を判断し、存続させる場合は、内容の厳格な見直しを行う。

なお、期限の定めのない措置のうち、もはや適用状況や政策評価等を踏まえた必要性を判断する必要がなく、かつ、課税の公平原則を逸脱するものではないと明確に認められるものについては、本則化の適否を検討する。

- (3) 政策税制措置を新設又は拡充する場合には、スクラップ・アンド・ビルドを基本とし、その費用対

○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특별조치 항목에 대한 재검토 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일몰기한 부여 원칙이 담겨져 있음

□ 기본적으로는 3년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은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재검토 대상

□ 2010년 세제개편 당시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는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조치 또는 특례 중 세부담 경감이 이루어지는 조치(조세지출 항목)를 대상으로 하였음

□ 재검토 대상을 정함에 있어 조세특별조치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2009년 현재 241개 항목)에 대해 향후 4년 동안 근본적인 재검토를 우선 실시하기로 함

○ 이후 매년도 실시하는 재검토 대상은 당해 연도 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함

○ 그리고 시한의 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시 검토 대상으로 정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함

2) 재검토 방침

□ 재검토 방침에 ‘일몰기한 부여 원칙’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재검토 방침을 일본의 ‘일몰기한 부여 원칙’으로 같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는 공정성·투명성·이해가능성 있는 세제의 구축과 재정확보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면서 다음의 방침에 따라 실시함

□ 첫째, 기존의 조세특별조치 가운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폐지(sunset) 함을 원칙으로 함

効果の見通しと検証可能性に留意しつつ、別添の「指針」を踏まえてその緊要性を厳格に判断し、原則として、3年以下の期限を付すものとする。

- 다만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별지 1] (별첨)의 ‘재검토 지침’에 비추어 합리성, 유효성 및 상당성 등이 모두 분명히 인정되는 조치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한을 추가하여 존속시킬 수 있음
 - (별첨)의 ‘재검토 지침’에 비추어 엄격하게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치를 20년 넘게 유지해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치로 변경함
- 둘째, 기존의 정책세제조치 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방식으로 재검토를 실시함
- 적절한 시기에 (별첨)의 ‘재검토 지침’에 비추어 그 적용 상황이나 정책평가 등을 근거로 향후 지속적으로 조세지출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판단함
 - 그 결과,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재검토를 실시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치’ 중 더 이상 적용 상황이나 정책평가 등을 감안해 보아도 그 필요성이 명확하고, 과세의 공평원칙을 일탈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준조세체계’로의 편입을 검토함
- 셋째, 조세특별조치를 신설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스크랩 앤 빌드(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영법이나 정책)’를 기본으로 함
- 비용 효율적인 전망과 검증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별첨)의 ‘재검토 지침’을 바탕으로 그 긴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3년 기한 내에서 신설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특별조치 검토 지침(‘6대 점검사항’)²⁴⁾<2010년 세제개편(안) [별지1]의 (별첨)>

24) 위 ‘2010년 세제개편(안), [별지1]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 방침’의 (별첨) 자료 (원문)

(別添)

政策税制措置の見直しの指針(「6つのテスト」)

○ 背景にある政策に今日的な「合理性」が認められるか

1. 法律に規定されるなど、所管官庁の政策体系の中で優先度や緊要性の高いものとして明確に位置付けられているか。

2. 当初の政策目標が既に達成されていないか。

□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재검토는 다음 6가지의 점검 기준에 따라 시행됨

가) 정책의 배경이 오늘날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는가?

- ① 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관 부처의 정책체계에서 우선순위와 긴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 ② 당초의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하지는 않았는가?

나) 정책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가?

- ③ 적용대상자 수가 예상과 달리 매우 소수이거나 예상치 못한 특정 사람에게 치우쳐(편향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 ④ 정책평가법에 따른 소관 부처의 사후평가 등에서 세수감소 대비 효율성(비용 대비 효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다) 보조금 등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해 '상당성'이 인정되는가?

- ⑤ 동일한 정책목적에 따른 기타의 지원 조치와 의무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세특례 항목과 적절하고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⑥ 적용실태 등으로 보아 그 정책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수단인가? 한편으로 과세형평원칙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례조치인가?

-
- 정책목적에に向けた手段としての「有効性」が認められるか
 - 3. 適用数が想定外に僅少であったり、想定外に特定の者に偏っていないか。
 - 4. 政策評価法に基づく所管官庁の事後評価等において、税収減を是認するような有効性(費用対効果)が客観的に確認されているか。
 - 補助金等他の政策手段と比して「相当性」が認められるか
 - 5. 同様の政策目的に係る他の支援措置や義務付け等がある場合に、適切かつ明確に役割分担がなされているか。
 - 6. 適用実態などからみて、その政策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政策手段としての的確であり、かつ、課税の公平原則に照らし、国民の納得できる必要最小限の特例措置となっているか。
 - ※ 上記の「合理性」、「有効性」、「相当性」の検証に当たっては、存続期間が比較的長期にわたっている措置(10年超)や適用者数が比較的少ない措置(2桁台以下)等については、特に厳格に判断する。

- 위의 ‘합리성’, ‘효과성’, ‘상당성’의 검토에 있어서 존속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특별조치(10년 이상) 및 적용 인원 규모가 비교적 적은 조치(두 자리 이하)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다.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평가²⁵⁾

- 일본은 2010년 세제개편 시 조세특별조치의 필요성 및 유효성을 사전 및 사후에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보다 강화된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 제도를 도입함
-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평가는 총무성의 정책평가라는 큰 틀 내에서 하나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됨²⁶⁾²⁷⁾
 - 이 중 법인세 관련(법인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조세특별조치는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평가 영역 내에서 또 다른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즉,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는 적용 대상 법률²⁸⁾이 따로 존재하고 평가 후 제출하는 자료와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며 평가기간도 별도로 이루어짐
 - 특별히 각 부처는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등의 신설, 확충 또는 연장을 위한 세제개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함
 - 이후 사전평가 결과도 사후평가를 통해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함
 - 그러나 법인세 관련 외의 세목에 관한 조세특별조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고 권고하는 수준임²⁹⁾

25)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uishin.html(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6)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86호),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년 법률 제323호) 제3조 제7호 및 제8호),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지침’ 정책평가 각 부처 연례회의 승인(2010년 5월 28일)

27) 총무성의 정책평가는 일본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이 평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 행정평가국의 주요업무는 ① 정부 전체의 정책평가 실시 상황 등을 정리하여 공표, ② 정책평가 결과의 예산 요구에 대한 정확한 반영 추진, ③ 정책평가 기반 정비 등임

- 총무성 행정평가사들은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그 객관성과 엄격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매년도 세제개편 작업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함

- 평가를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

28)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29)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2005년 12월 16일 각의 결정)

- 일본은 정책평가를 위해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지침과 작성양식」을 정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동 지침에는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표준지침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는 이와 별도로 각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적용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명세서를 토대로 적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도 예산서 제출 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1) 총무성의 정책평가

가)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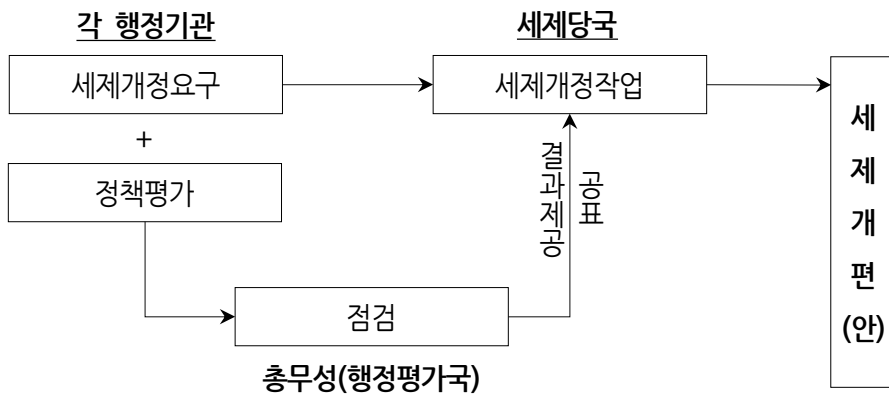
- 각 행정기관은 세제개정 요구 시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무성의 주요 점검 대상은 법인세(국세), 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지방세) 등임

- 총무성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을 점검함(평가서 양식은 <부표 1-2> 참조)
 - 주요 점검항목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적용건수·세수 감소규모 및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분석되고 있는가? 하는 항목임

- 총무성이 행하는 점검은 조세특별조치의 효율성과 관련된 점검이며, 조세특별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조세특별조치의 신설은 각 부처가 판단하여 평가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함

- 총무성의 점검결과는 세제개편 작업에 제공하고, 각 행정기관에 통지 및 공표함

[그림 IV-2] 조세특별조치 정책평가 및 점검의 흐름도



자료: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 정책평가 및 점검결과」, 2016.10

나) 정책평가시스템

□ 조세특별조치 등과 관련된 정책평가시스템은 특정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납부연기를 하는 조치에 한함

○ 사전평가

① 법인세, 법인주민세 또는 법인사업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등의 신설, 확충 또는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86호 제9조 및 동 시행령(2001년 정령 제323호) 제3조 제7호 및 제8호).

• 법인세 관련 정책평가는 의무사항임

② 그밖에 다른 세목과 관련된 조세특별조치 등의 신설, 확충 또는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전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2005년 12월 16일 각의 결정)

○ 사후평가

① 법인세, 법인주민세 또는 법인사업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동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각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본 계획을 말함)에 사후평가 대상을 명기하여야 함(기본방침 I 5가).

② 그밖에 다른 세목과 관련된 조세특별조치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사후평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기본방침 I 5가).

- 조세특별조치와 관련된 정책평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 순서 등의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련된 정책평가 실시에 관한 가이드 라인’(2010년 5월 28일 정책평가 각 부·성 연락처 승인)을 마련함
 - 각 행정기관은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세특별조치와 관련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각 행정기관의 검토 작업이나 정부의 세제개정 작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가이드 라인’ II 6(총무성에 의한 객관성 담보 평가 활동)에서는 ‘총무성 행정 평가사들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객관성과 엄격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³⁰⁾
 - 그리고 그 점검결과를 매년도 세제개편 작업에 제공하고 있음

[그림 IV-3]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의 대상 범위

	세부담 경감 조치		세부담 증가 조치	절차의 특례 등
국세	법인세	기타세목		
지방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기타세목		
	법령상 사전평가 의무부과 대상 범위 기본방침에 따른 사후평가 의무부담 범위	기본방침에 따른 사전평가 노력 의무 부담 범위 기본방침에 따른 사후평가 노력 의무 부담 범위		

자료 :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 정책평가 및 점검결과」, 2016.10

2)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과 적용실태조사보고서

- 한편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에 대하여는 2010년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을 시행하여 동 법률에 따라 2013년 3월 조세특별조치에 관한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되었음³¹⁾

30) 이는 우리나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가 실시하는 ‘조세감면 건의 의견에 대한 확인·점검’과 유사함

가)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의 공식 명칭은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임(이하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이라 칭함)
 - 동법은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를 밝히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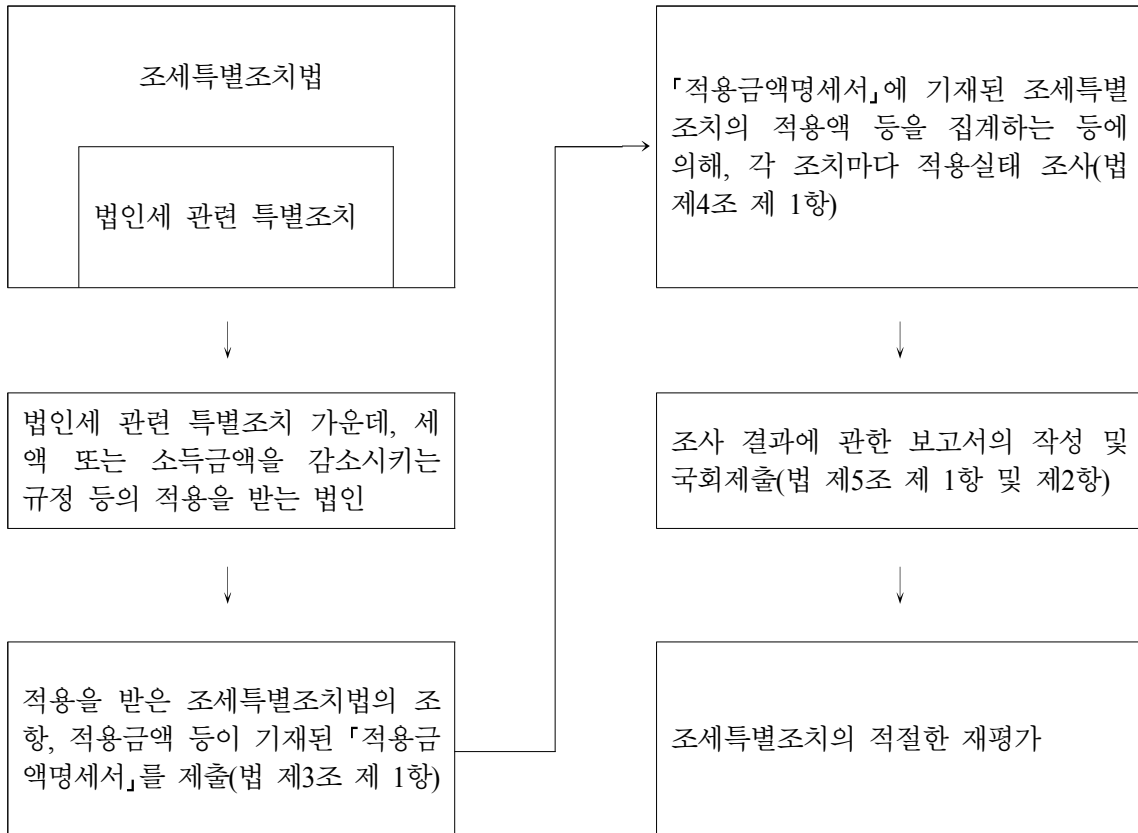
-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조세특별조치 중 법인세와 관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별조치 적용금액³²⁾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 또 다른 하나는 조세특별조치의 주무부서인 재무성으로 하여금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임

31) 같은 시기 지방세법도 개정하여 「지방세의 세부담 경감 조치 등에 대한 적용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동 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32) 여기서 말하는 적용금액이란 비과세·감면 또는 면제되는 순수세액인 조세지출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감면되는 세액과 조세지출이 소득공제 규정을 통한 소득감소액인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IV-4]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의 흐름



나)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의 주요 내용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 제정: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 최종개정: 2014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1) 목적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등의 조치에 대한 규정인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의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목적을 밝히고 있음

- ① 조세특별조치 적용의 투명화 도모
- ② 적절한 방식으로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재검토 실시

③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의 확립에 이바지

(2) 정의

- 제2조에서는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에서의 경감·면제·환급대상으로 하는 세목과 조세지출대상, 대상납세자, 신고서식, 사업연도, 적용규모, 실태조사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고 있음
 - 대상세목: 소득세, 법인세, 지방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지가세, 등록면허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석탄세, 항공기연료세, 자동차중량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등임
 - 또한 관계된 법령은 각 세목에 대한 법률과 국세통칙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임

-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조세특별조치 중 조세특별조치법 제3장에 규정된 조세지출을 대상으로 함
 - 납세자: 국세통칙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세(원천 징수에 의한 국세 제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및 원천 징수에 의한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함
 - 적용금액명세서(適用額明細書):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에 적용을 받는 법인세와 관련된 개별특별조치³³⁾의 내용을 기재한 표
 - 적용금액, 기타 ‘법인의 납세특별 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를 말함
 - 적용실태조사(適用實態調査): 재무성 장관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실지조사를 말함

33) ‘법인세 관련 특별조치’라 함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이 법인세율 특례대상의 시험·연구를 실시했을 경우의 법인세액특별공제, 중소기업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등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별조치 중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규정 등(구체적으로는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각 조세특별조치)을 말함

<표 IV-6> 법인세법 관련 조세특례(조세특별조치법 제3장)

번호	조세지출명
1	중소기업 자 등의 법인 세율의 특례
2	특별 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 특례
3	준비금 등
4	광업 소득의 과세 특례
5	대외 선박 운항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본 선박에 의한 수입 금액의 과세 특례
6	오키나와의 공인 법인의 과세 특례
7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지정 특정 사업 법인의 과세 특례
8	인증 농지 소유 자격법인 등의 과세 특례
9	교제비 등의 과세 특례
10	용도 은닉 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의 과세 특례
11	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특별 세율
자산의 양도의 경우의 과세 특례	
12	수용 등의 경우의 과세 특례
13	특정 사업 용지 매수 등의 경우의 소득 특별공제
14	특정 장기 소유 토지 등의 소득 특별공제
15	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별 공제의 특례
16	특정 자산을 매수화할 경우 등의 과세 특례
17	경기 조절을 위한 과세 특례
18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 특례 등
관련자 등에 관한 이자 등의 과세 특례	
19	국외 지배주주 등과 관련 부채의 이자 등의 과세 특례
20	관련자 등에 관한 순이자비용 등의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소득 등의 과세 특례	
21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소득의 과세 특례
22	특수관계주주 등 인 내국법인에 관한 특정 외국법인에 관한 소득의 과세 특례
23	기타의 특례
24	중소기업자인 연결 법인의 법인 세율의 특례
25	연결법인 특별 세액공제 및 감가상각 특례
26	연결법인의 준비금 등
27	연결법인의 광업소득의 과세 특례
28	대외 선박 운항 사업을 영위하는 연결법인의 일본 선박에 의한 수입 금액의 과세 특례

번호	조세지출명
29	연결법인인 오키나와의 공인법인의 과세 특례
30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연결법인인 지정 특정 사업 법인의 과세 특례
31	연결법인인 인증 농지 소유 자격법인 등의 과세 특례
32	연결법인의 교제비 등의 과세 특례
33	연결법인에 용도 은닉 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의 과세 특례
34	연결법인의 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특별 세율
연결법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의 과세 특례	
35	수용 등의 경우의 과세특례
36	특정 사업 용지 매수 등의 경우의 연결소득 특별공제
37	특정 장기 소유 토지 등의 연결소득 특별공제
38	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별공제의 특례
39	특정 자산을 매수할 경우 등의 과세 특례
40	연결법인의 경기조절을 위한 과세 특례
41	연결법인의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 특례 등
연결법인의 관련자 등에 관한 이자 등의 과세 특례	
42	연결법인의 국외 지배주주 등과 관련 부채이자 등의 과세 특례
43	연결법인의 관련자 등에 관한 순이자 비용 등의 과세 특례
연결법인의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소득 등의 과세 특례	
44	연결법인의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소득의 과세 특례
45	특수관계주주 등 인 연결법인에 관한 특정 외국법인에 관한 소득의 과세 특례
50	연결법인의 기타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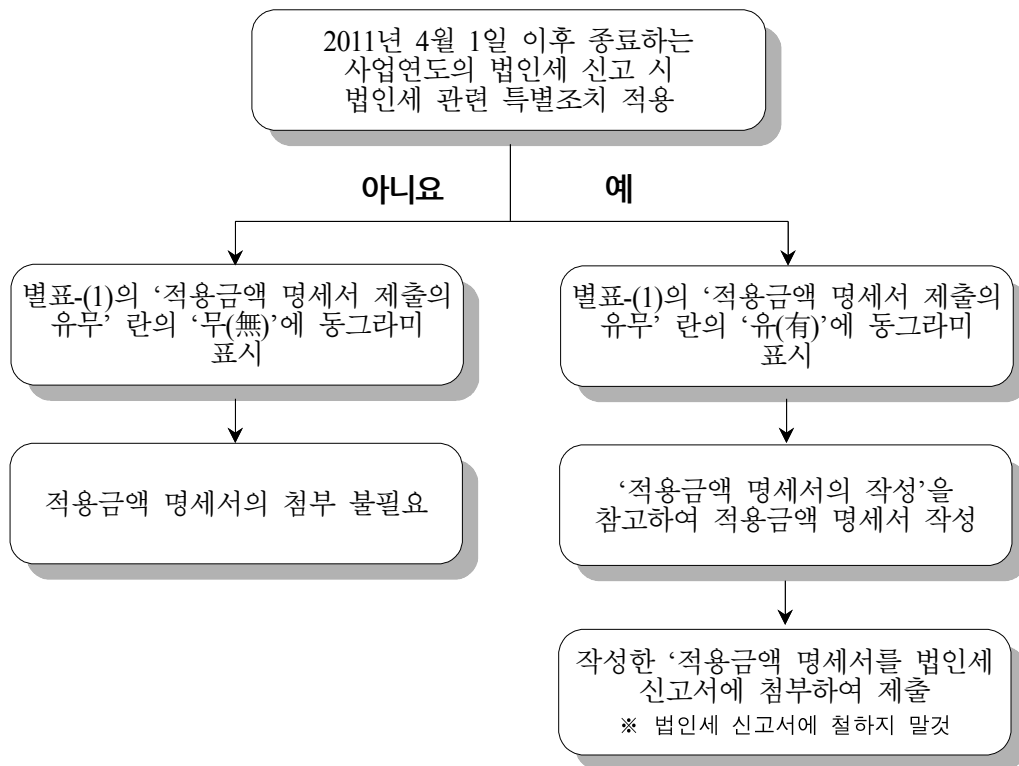
(3) 적용금액명세서³⁴⁾의 제출 의무

-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조세특별조치에 따른 적용금액(세액 및 소득공제 규정에 의한 감소액 등)을 담고 있는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4) - ‘적용금액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jp)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판매하는 회계소프트웨어 등으로부터 출력된 후백전용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법인세 신고서 용지의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적용금액명세서’의 양식을 송부
 - ‘적용금액명세서’는 국세 전자신고·납세 시스템(e-Tax)에 의한 전송 가능

- 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금액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적용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당해 사업 연도에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세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금액명세서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지 않았거나 또는 적용금액명세서 비의도적인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오류 없는 적용금액명세서의 제출이 있을 때는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를 적용함
 - 그러나 의도적으로 적용금액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허위기재한 적용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적용금액명세서’의 재제출이 필요함
- 적용금액명세서의 제출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그림 IV-5] 적용금액명세서의 제출 흐름



라. 일본의 조세특별조치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평가들 중 ‘조세지출에 관한 정책평가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함
 - 일본의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매년 10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함³⁵⁾
 - 동 보고서에서는 각 행정부처가 실시한 당해 연도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에서 요청한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신설·확대·연장 요청 등에 대한 사항과 평가에 대한 총무성의 점검 결과를 도표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보여줌
 - 총무성은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점검하여 공개하지만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신설 및 연장,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은 개진하지 않음
 - 다만, 평가서가 주어진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만을 점검하여 공개함

- 본 절에서는 2017년도 세제개편을 위해 2016년 9월 15일까지 제출된 각 부처의 조세특별조치 평가서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일견하면서 일본의 조세지출 관리 체계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일본의 조세지출 관리 체계 중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보고방식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보고방식과의 차이점도 간단히 비교할 수 있을 것임

1)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 점검 실시 현황

가) 정책평가 실시 건수

- 2017년도 세제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총무성에 제출한 조세특별조치 평가서는 13개 행정기관의 총 129건임³⁶⁾(<표 IV-7 참조>).

35) 2016년 점검결과는 10월 25일 발표함(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08132.html)

36)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또는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포함.

- 이는 부처 간 공동요청 항목으로 주관부처가 명기되지 않은 조세지출과 관련된 사전평가보고서는 제외한 수치임

<표 IV-7>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 평가 건수

(단위: 건)

행정기관명	사전평가					노력의무 대상	사후평가	합계
	의무대상							
	신설	확충	연장	확충·연장 등	계			
내각부	2	1	5	2	10	4	1	15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1	0	0	0	1	0	0	1
금융청	1	0	2	1	4	0	0	4
부흥청	0	1	0	0	1	0	0	1
총무성	0	0	1	1	2	0	1	3
외무성	0	0	0	0	0	0	1	1
문부과학성	1	0	0	0	1	1	0	2
후생노동성	2	0	3	0	5	1	1	7
농림수산성	0	1	8	1	10	0	9	19
경제산업성	5	1	6	4	16	8	16	40
국토교통성	0	1	16	2	19	2	4	25
환경성	0	0	0	0	0	0	2	2
방위성	1	0	1	0	2	2	5	9
합 계	13	5	42	11	71	18	40	129

주: '확충·연장 등'은 하나의 평가서에서 신설, 확충 또는 연장 요청 중 두 가지 이상을 요구한 것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08132.html)

나) 점검 대상 항목

- 2016년 점검에서는 의무 사전점검 항목의 평가보고서(총 71건)를 중점적으로 점검함³⁷⁾
- 2016년도는 평가지침에서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요청된 항목 중에서 정책목적에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함
 - 따라서 주요 점검 항목으로 ① 달성목표 ② 적용건수 ③ 세수감소액 및 ④ 정책효과를 설정함
- 점검 방향은 조세특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음
 - 분석 및 설명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흡한 조세지출평가서에 대해서는 작성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함
- 평가서 71건에 대하여 우선 1차로 분석을 하고 분석 및 설명 내용이 불충분한 평가서에 대하여는 각 행정부처로 하여금 2016년 9월 15일까지 분석 및 설명내용을 2차로 보완토록 함

다) 점검 결과

- 2016년도 평가서에 대한 1차 점검결과 71건의 평가서 중 모든 검사 항목에서 분석 및 설명 내용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각 행정부처로 하여금 2차적으로 보완 기회를 부여한 후 보완된 평가서를 토대로 확인·점검을 실시함
 - 2차 추가 보충설명을 통해 평가서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질적 작성수준에 도달한 항목 수는 증가하였으며 정책평가의 질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37) 의무 사전점검 대상은 법인세, 법인 주민세 또는 법인 사업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의 신설, 확대 또는 연장요청이 이루어진 항목을 말함(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2001년 법률 제 86호) 제9조 및 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시행령(2001년 정령 제323호) 제3조 제7호 및 제8호).

- 한편,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건수나 효과가 전혀 파악되거나 예측되지 않는 등 평가서로서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1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⁸⁾
- 각 행정부처에서 2차 보충(추가) 설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석 및 내용 설명이 부족한 조세특별조치 평가서가 많음
 - 평가 항목별로 평가내용이 부족한 조세특별조치 개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달성목표: 24건
 - ② 적용건수: 47건
 - ③ 세수감소금액: 29건
 - ④ 정책효과: 67건
 - 특히 ② 적용건수와 ④ 정책효과 부문에 대한 평가서 작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점검 항목별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달성목표(24건)
 - 모든 평가서에는 나름의 달성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도달하여야 할 수준을 정량적으로 보이지 않은 항목이 21건임
 - 이러한 것들은 해당 조세특별조치의 효과를 사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량적인 달성목표치를 적절히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② 적용건수(47건)
 - 적용건수를 전혀 파악 또는 예측하지 않은 평가서가 4건 존재함
 - 적용건수는 조세특별조치의 효과와 세수감소 규모를 파악 또는 예측하기 위한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적용횟수를 적절히 파악 또는 예측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파악된 적용건수의 실적이 과거 평가 시 상정한 전망과 차이가 있는 것들과 그 건수가 매우 작은 것이 20건 존재함
 - 이러한 것들은 해당 조세특별조치의 필요성과 장래의 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

38) 요청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 포함

③ 세수감소금액(29건)

- 세수감소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예측하지 못한 평가서가 9건이 있음
 - 세수감소 규모는 조세특별조치의 긍정적인 효과와 비교하여볼 때 감소규모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세수감소 규모를 적절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파악 또는 예측된 세수감소 금액의 산정 근거(산정에 이용한 계산식 및 근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평가서가 6건 존재함
 - 이러한 것들은 파악 또는 예측된 세수감소 금액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④ 정책효과(67건)

- 정책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거나 또는 예측하지 않은 평가서가 5건 존재
 - 정책효과의 파악 및 예측은 목표달성 상황이나 그 실현가능성을 파악하는 근거임
 - 더 나아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특별조치가 유효한가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 따라서 정책효과를 적절히 파악 또는 예측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파악 또는 예측된 효과가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 수 없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항목이 45건 존재함
 - 이러한 항목들은 조세특별조치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며, 아울러 목표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효과의 파악 또는 예측치에 대한 산정근거(산정 시 이용한 수치자료, 계산식 및 그 근거)의 전부 또는 일부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14건 존재함
 - 특히 정책효과의 과거 실적치와 장래 예측치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 평가서가 3건 존재
 - 이러한 평가서는 미래 정책효과가 예측한 바대로 발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산정 근거를 밝힌 뒤 분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음

<표 IV-8>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정책 평가 점검 결과(2차 보충(추가)설명 평가서 대상)
(단위: 건)

행정기관명	점검 건수	분석 및 설명 불충분				
		① 달성 목표	② 적용 건수	③ 세수 감소액	④ 효과	합계
내각부	10	0 (2)	8 (9)	5 (9)	10 (10)	23 (30)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1	0 (0)	0 (1)	0 (1)	1 (1)	1 (3)
금융청	4	4 (4)	2 (4)	3 (3)	4 (4)	13 (15)
부흥청	1	0 (1)	0 (1)	0 (1)	1 (1)	1 (4)
총무성	2	0 (1)	1 (1)	0 (2)	2 (2)	3 (6)
문부과학성	1	1 (1)	1 (1)	0 (1)	1 (1)	3 (4)
후생노동성	5	5 (5)	5 (5)	4 (5)	5 (5)	19 (20)
농림수산성	10	1 (2)	3 (7)	2 (6)	9 (10)	15 (25)
경제산업성	16	8 (12)	12 (16)	9 (16)	15 (16)	44 (60)
국토교통성	19	4 (16)	14 (19)	6 (15)	17 (19)	41 (69)
방위성	2	1 (2)	1 (2)	0 (1)	2 (2)	4 (7)
합계	71	24 (46)	47 (66)	29 (60)	67 (71)	167 (243)
분석 및 설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		47 (25)	24 (5)	42 (11)	4 (0)	117 (41)
현저하게 부족함		0 (1)	4 (11)	9 (17)	5 (19)	11 (29)

- 주: 1. () 안은 최종 점검 이전 당초 평가서 점검 현황
 2. 요청(요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필요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서는 ‘분석 및 설명 불충분’으로 분류함
 3. ‘분석 및 설명 불충분’은 ‘① 달성목표’, ‘② 적용건수’, ‘③ 세수감소액’ 또는 ‘④ 정책효과’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상했기 때문에 ‘합계’ 수치는 점검건수와 일치하지 않음
 4. ‘현저하게 부족함’은 ‘① 달성목표’, ‘② 적용건수’, ‘③ 세수감소액’ 또는 ‘④ 정책효과’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상하고, ‘합계’ 수치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에 해당하는 평가서 건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음

라) 검사 결과의 활용 및 향후 과제

□ 점검 결과의 활용

- 2016년 점검 결과 보고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서의 분석 및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 평가서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조세특별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개편 작업에서 한층 더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함

□ 향후 과제

- 적용건수나 정책효과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거나 예측하여 제시하지 않은 평가서에 대하여는 조세특별조치의 정책적 유효성을 분석 및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점검 항목을 포함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파악 또는 예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대부분의 평가서들은 향후 어떻게 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작성상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일부 행정기관은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설명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조세특별조치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절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적함
 - 따라서 다음 평가 시에는 해당 평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재한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과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 또한 ‘적용건수’가 세수감소액 및 정책효과를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기초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건수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함
-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책평가의 질이 한층 향상되도록 향후에는 평가서 내용이 충실한 특정 조세특별조치의 선도적인 평가내용을 참고하도록 함
 - 그리고 각 행정기관은 정책평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2)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를 주관하는 총무성은 각 부처에서 제시한 평가서를 확인·점검할 뿐 조세특별조치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 않음
- 다만 평가서에 주어진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를 주어진 작성지침에 따라 검토하는 역할을 할 뿐임

- 점검결과 보고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일람표를 작성함
 - 그리고 각 부처별 조세특례조치별로 중요 평가항목에 대한 총무성의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가) 점검결과 일람표

- 우선 평가서에 대한 점검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점검결과를 보여주는 일람표에 기재된 기호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며 이를 설명하면 <표 IV-9>와 같음
 - 이 기호들을 사용하여 점검항목 ① ~ ⑩번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⁹⁾

<표 IV-9> 점검결과 알림 표식

표식기호	내 용
○	분석·설명의 내용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항목
※	각 행정기관의 보충(추가)설명을 통해 분석·설명의 내용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항목
▲	분석·설명의 내용이 불충분한 항목
x	분석·설명해야 할 사항이 설정·과약 또는 예측되지 않은 항목
—	구분의 특성상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신설의 경우)
/	조세특별조치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필요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08132.html)

39) 10가지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달성목표
- ② 과거 적용건수 등
- ③ 미소규모 및 작용대상의 편향성 정도
- ④ 미래 적용 건수 등
- ⑤ 과거 세수감소액
- ⑥ 미래 세수감소액
- ⑦ 과거 효과
- ⑧ 미래 효과
- ⑨ 과거 세수감소 효과
- ⑩ 미래 세수감소 효과

- 점검결과 일람표에는 총무성이 실시한 점검결과를 위 기호들을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평가서 작성의 충실도’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래 <표 IV-10>은 경제산업성 점검결과 일람표를 나타냄
 - 우선 가장 첫 각 부처별 일련번호와 제도명이 나타나 있음
 - 그리고 조세특별조치의 신설 여부,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제도의 확대 여부 등이 ‘구분’란에 표시되어 있음
 - ‘평가서의 수정’란을 통하여 각 부처가 제시한 평가서에 대해 총무성이 보완을 요청하여 평가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
 - ‘개요’란에는 2016년도의 중점 점검사항을 나열함(2016년 중점 점검사항은 ‘달성목표’, ‘적용건수’, ‘세수감소액’, ‘효과’ 4항목)
 - 이후 점검결과에는 10가지 점검항목에 따라 위 <표 5-5>의 기호로 작성의 충실도를 표시함

- 또한 이중 번호 ‘経産10’,에 해당하는 所得拡大促進税制の見直し(소득확대촉진세제의 재검토) 항목을 예로 들어 10가지의 점검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점검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우선 동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향후 확대개편을 요구하였고, 평가서는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2016년의 4가지 중점 점검대상(표의 ‘개요’ 부분)은 모두 ‘분석·설명의 내용이 불충분함(▲ 표식)’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10가지 점검항목 중 ③ 미소규모 및 작용대상의 편향성 정도(僅少・偏りの状況)만이 분석·설명 내용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작성의 충실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표 IV-10〉 점검결과 일람표(경제산업성)

번호	제도명	구분	평가서수정	점검결과												
				개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달성목표	적용진수	세수감소액										
경産01	가스供給業に係る法人事業税の課税方式の変更	신설		○	▲	○	▲	○	▲	×	×	—	—	—	▲	
경産02	電氣供給業に係る法人事業税の課税方式の変更	신설		▲	▲	×	×	—	—	×	×	—	—	—	▲	
경産03	電氣事業者の分社化に伴い外部化するグループ会社間取引を控除する収入割の特例措置	신설		▲	○	▲	▲	—	—	▲	▲	—	—	—	▲	
경産04	卸電力取引所におけるグロス・ビディング実施時の社内取引に係る法人事業税の特例措置の創設	신설	有	▲	▲	▲	▲	—	—	▲	▲	—	—	—	▲	
경産05	電氣供給業における託送料金を控除する収入割の特例措置	연장		○	▲	×	○	▲	○	×	×	—	—	—	▲	
경産06	中小企業者等の試験研究費に係る特例措置の拡充・延長	확·연	有	○	○	○	○	▲	○	※	※	▲	▲	▲	▲	
경産07	新事業開拓事業者投資損失準備金制度の拡充	확·연		○	▲	○	▲	▲	▲	※	※	▲	▲	▲	▲	
경産08	特定事業再編投資損失準備金制度の延長	연장		▲	▲	○	▲	▲	▲	※	※	▲	▲	▲	▲	
경産09	特定都市再生建築物等の割増償却制度の延長	연장	有	○	▲	○	▲	▲	▲	○	○	▲	▲	▲	▲	
경産10	所得拡大促進税制の見直し	확대	有	▲	▲	▲	▲	○	▲	▲	▲	▲	▲	▲	▲	
경産11	中小企業者等の法人税率の特例の延長	연장		▲	▲	○	▲	○	▲	※	※	▲	▲	▲	▲	
경産12	中小企業者等が機械等を取付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中小企業投資促進税制)の拡充・延長	확·연	有	○	▲	▲	▲	○	▲	※	※	▲	▲	▲	▲	
경産13	中小企業等の貸倒引当金の特例の延長	연장		▲	○	○	▲	○	▲	※	※	▲	▲	▲	▲	
경産14	試験研究を行った場合の法人税額等の特別控除の拡充	확·연		○	▲	○	▲	▲	▲	○	○	▲	▲	▲	▲	
경産15	特定中小企業者等が経費改善設備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等の特別控除の延長(商業・サービス業・農林水産業活性化税制)	연장		○	▲	▲	▲	▲	▲	※	※	▲	▲	▲	▲	
경産16	地域未来投資促進税制(仮称)の創設	신설		▲	▲	▲	▲	—	—	▲	▲	—	—	—	—	

나) 평가서 점검 결과

- <부표 1-3>에는 ‘経産10’에 해당하는 所得拡大促進税制の見直し(소득확대촉진세제의 재검토) 항목 총무성 점검 결과표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 <부표 1-3>의 점검 결과표를 토대로 총무성은 ‘経産10’에 대하여 점검 항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및 ⑩번(▲ 표식)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석·설명 내용이 미흡한 평가서라고 판단함
 - 그리고 동 결과를 점검결과 일람표에 기호로서 표기하여 공개함

마.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1) 부처별 자체평가

-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성·효과성 및 소관부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조세감면 건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개편하여 조세지출 자체평가 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함
- 조세지출 자체평가 제도는 조세지출의 신규 도입을 위한 평가(건의서), 조세지출 시행 후 성과평가(평가서), 조세지출 평가계획(평가계획서)에 대한 소관부처의 자율적인 평가를 말함
 - 조세지출에 대한 건의서, 평가서, 평가계획서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⁴⁰⁾
 - 건의서: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 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건의서에는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
 - 평가서: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 평가서에는 현재 실시중인 조세지출의 확대·개편 또는 일몰기한의 연장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됨
 - 평가계획서는⁴¹⁾ 차기년도 평가 대상인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서, 평가서, 평가계획서 모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서는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 신규 감면제도에 대한 건의서는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 모든 신규 조세감면제도
- 건의서, 평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하여는 점수를 부여하여 확인·점검하도록 함
- 배점에 있어서 건의서는 조세지출의 목적 등 계획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었고, 평가서의 경우는 목적 달성도, 정책효과 등 성과평가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었음
 - 또한 건의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여 조세지출의 도입을 위해 각 부처가 사전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함
 - 다른 세출예산과의 중복 여부와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방안의 제시를 통하여 신규 조세지출의 도입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음

41) 평가계획서는 차년도 평가서 작성 예정 사항 중 소관 재분류 및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향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 평가계획서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아니함.

<표 IV-11> 건의서 및 평가서 확인·점검 항목 및 점수 배점

건의서			평가서		
구분(점수)	평가지표(점수)		구분(점수)	평가지표	
계획 (40)	목적 (15)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5)	계획 (30)	목적 (10)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3)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5)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4)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5)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3)
	성과지표 (25)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 (20)	성과지표 (20)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1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10)		
성과 (25)	대상자 (15)	3.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성과 (60)	대상자 (20)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10) 3-2.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조세지출 혜택을 받고 있는가?(10)
	기대효과 (택1, 10)	4-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4-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목적 달성도 (20)	4.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기타 (15)	세출예산 (10)	5. 다른 정책과의 보완효과가 있는가? 또는 다른 정책과의 중복에 대한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기타 (10)	세출예산 (10)	6. 다른 정책과의 보완효과가 있는가? 또는 다른 정책과의 중복에 대한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선행연구 (5)	6.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대안 마련 (20)	세수 보완방안 (20)	7. 적절한 세수 보완방안이 제시되었는가?			

주: () 안은 배점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도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의견 작성방법』,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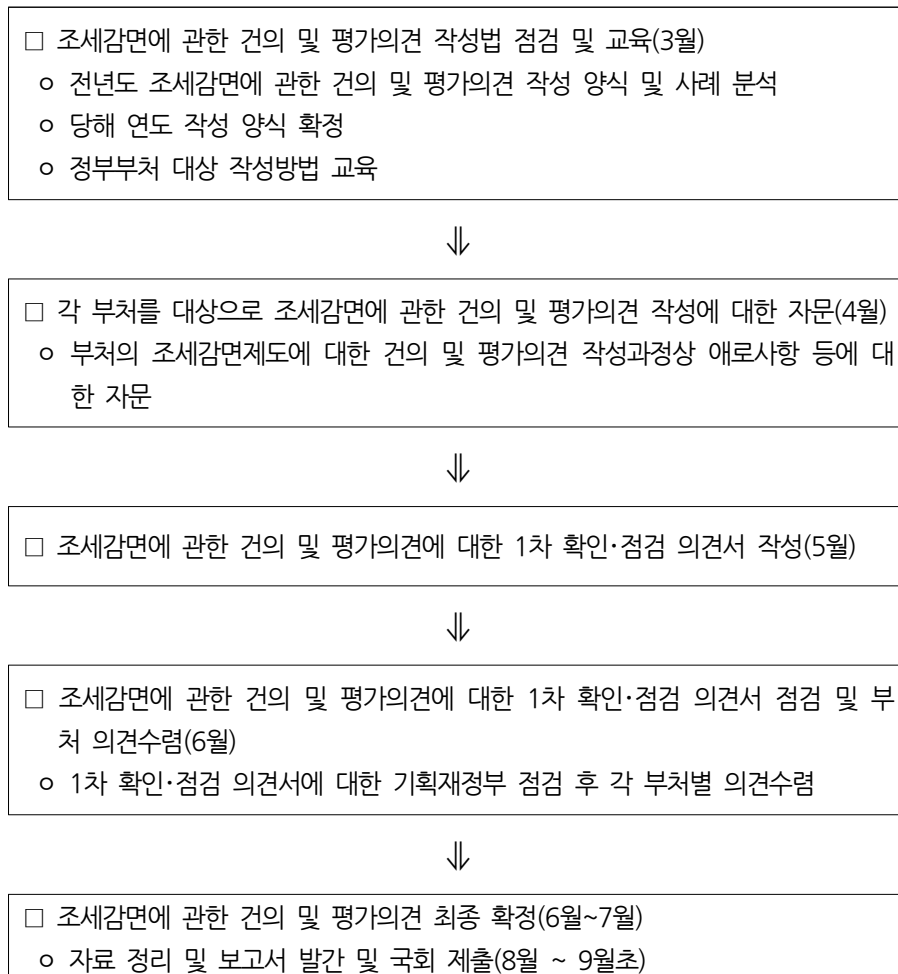
2)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 소관부처별로 작성된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확인·점검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소관 부처별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건의서 및 평가서가 매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및 자체 평가 작성지침을 잘 반영하여 작성·제출되었는지 확인·점검 후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부표 1-4> 참조)
- 이후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담조직인 조세지출성과관리팀을 통해 수행

□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그림 IV-6]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절차



바.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서 확인·점검 보고서 한·일 비교

- 기본적으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의 사전·사후 평가서와 우리나라 조세특례에 대한 건의서 및 평가서의 기술내용과 확인·점검 방식 및 절차는 매우 유사함
- 한·일 모두 조세지출 시행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함
- 확인·점검 방식에 있어서도 조세지출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건의서(일본: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일본: 사후평가서)에 작성된 내용이 주어진 작성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점검함
 - 조세지출 항목의 신규 도입과 일몰기한의 연장 및 제도 확대 개편은 국회의 세제개편 시 논의 및 결정되고 확인·점검 결과는 단지 참고 역할을 함
- 매년도 실시하는 확인·점검(일본: 재검토) 대상에 있어서도 한·일 모두 유사하며 다음과 같음
 -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조세지출 항목의 건의서(일본: 사전평가서)
 - 당해 연도 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으로 각 부처에서 평가한 평가서(일본: 사후평가서)
 - 시한의 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 수시 검토 대상으로 정하여 각 부처가 평가한 평가서
- 일본은 총무성의 평가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우리나라는 전문기관 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을 실시함
- 한국은 세수 감소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도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시행중인 항목에 대하여는 심층평가를 실시함
 - 그리고 상황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도 심층평가를 실시함
 - 심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도 건의서 및 평가서가 제출되면 확인·점검을 실시함
 - 이 심층평가 부분이 평가서 확인·점검에 있어서 유일한 차이점인 것으로 보임

<표 IV-12> 한·일간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서 확인·점검 비교(2016년 기준)

	일 본	한 국
확인·점검 결과의 국회 제출 시기	10월	9월
확인·점검 항목	<p>사전·사후평가서: 10가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성목표 2. 과거 적용건수 등 3. 미소규모 및 작용대상의 편향성 정도 4. 미래 적용 건수 등 5. 과거 세수감소액 6. 미래 세수감소액 7. 과거 효과 8. 미래 효과 9. 과거 세수감소 효과 10. 미래 세수감소 효과 	<p>건의서: 9가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목적의 명확성 1-2. 특정상황과 인과관계 1-3. 부처 정책방향·목표 연계성 2. 성과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성과지표 설정 2-2. 목표치 설정 3. 정책대상자 파악 4. 기대효과 5. 세출예산 6. 선행연구 7. 세수 보완방안 <p>평가서: 11가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목적의 명확성 1-2. 특정상황과 인과관계 1-3. 부처 정책방향·목표 연계성 2. 성과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성과지표 설정 2-2. 목표치 설정 3.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정책대상자 파악 3-2. 정책목적에 맞는 수혜자 4. 목적 달성도 5. 정책효과 6. 세출예산 7.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 의견
확인·점검 대상	사전평가서, 사후평가서	건의서, 평가서
확인·점검 주체	총무성(정책평가국)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호주의 제도운영

- 호주의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이용하여 일몰제도를 분석함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이용하여, 신설 및 폐지된 조세지출항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아봄
 - 매해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작성하여 조세감면규모 및 감면규모 추정의 정확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규 및 삭제된 항목의 리스트와 그 사유가 적시되어 있음

- 호주의 조세지출에 대한 일몰제도는 규제일몰제도와 달리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일몰을 부여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만 일몰기한을 부여하고 있음
 - 신규항목은 신설된 조세지출과 기존 감면제도 중 조세지출로 인정한 항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52항목(입법 예정 포함)을 신설 또는 신설예정이었음
 - 이 중에서 일몰기한(Expiry date)이 부여된 신규 조세지출은 총 13개 항목이며, 매년 신설된 조세지출 중 1~2개 항목에 불과함
 - 신설 또는 신설예정인 조세지출 중에 8.6%만이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신설되었음
 - 일몰기한이 부여된 신규 조세지출항목(13개)의 평균 적용기한은 약 2년 9개월이며, 신설부터 일몰기한까지의 존속기간은 1년부터 5년 3개월까지 다양함
 - 일몰기한에 종료된 조세지출은 9건이며, 나머지 4건은 다른 조세지출과 통합 등의 이유로 일몰기한이 삭제되거나 존속하게 됨

- 신규 조세지출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비율이 낮지만, 일몰기한에 따라 조세지출을 종료시키거나 필요한 경우에 다른 대체법안을 만들어 연장하는 등 일몰기한을 비교적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정한 일몰기한은 필요에 따라 삭제되거나 연장하여 운용하기도 함
 - 지난 10년간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신설된 조세지출 중 연장한 경우는 1건이며, 연장기한은 1년에 불과함

- 필요한 경우, 일몰기한 전에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일몰기한에 맞춰 대체법안을 도입하기도 함

□ 지난 10년간 발행된 호주의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바탕으로 경과규정을 제외하, 폐지되거나 기준조세로 편입된 67개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사유 및 일몰기한 설정 여부를 살펴봄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조세지출예산서의 삭제 항목내역을 조사함
- 32개 항목은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며, 35개 항목은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① 기준조세체계로 편입, ② 관련 정부정책이 중지, ③ 다른 법안에 도입 및 발의로 인해 폐지 또는 통합, ④ 최근 장기간(3~4년) 감면실적이 없는 경우와 같이 크게 4가지 이유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된 항목 35개 중에 25개는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일몰기한이 부여되었으며, 10개 항목은 조세지출이 신설된 시점에 일몰이 부여되었음
- 조세지출제도의 존속 중에 일몰기한이 부여된 경우, 일몰기한은 1~4년이고, 평균적으로 일몰부여 시점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에 일몰이 도래함
 - 일몰기한 없이 신설된 조세지출에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일몰까지 기간이 1년 이하인 항목 21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 일몰은 2회 이상 연장한 경우는 없었으며, 연장한 일몰기간은 보통 1년 이내로 설정하였음
 - 일몰을 설정하고 연장한 경우는 5건으로 연장기간은 1개월 ~ 1년이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연장하였음

〈표 IV-13〉 최근 10년간 일몰기한 운영 현황(호주)

(단위: 건, %)

구분	총 건수	일몰부여 건수	일몰부여 비율
(최근 10년)신설 또는 신설예정 조세지출	152 (40건 신설예정)	13 ¹⁾	8.6
(최근 10년)폐지가 확인된 조세지출	67	35	52.2
2016 조세지출예산서 현황	289	10	3.5

1) 실제 일몰부여 건수는 14개지만 1개 항목은 입법되지 않아 신설되지 않음

- 최근에 발행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총 20개 항목에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중 5개 항목을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음
-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일몰기한은 확인할 수 있으나, 폐지 여부 및 폐지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음

<표 IV -14> 2017년도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지출 항목(호주)

구분	제목	신설연도	일몰기한
1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the Medicare levy for residents of Norfolk Island	1985년 이전	2016. 6. 30 (경과 규정)
2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	1985년 이전	2019. 7. 1
3	Exemption of the Schoolkids Bonus	2012	2016. 12. 31 (경과 규정)
4	Exemption of payments made under the First Home Owners Grant Scheme	2000	2016 (경과 규정)
5	Tax assistance for victims of Australian natural disasters	Various	2014. 7. 1 (경과 규정)
6	Shipping - refundable tax offset for employers of qualifying Australian seafarers	2012. 7. 1	2015. 6. 30 (경과 규정)
7	Tax incentive for Standard Business Reporting software	2017. 1. 1	2018
8	Superannuation measures for low-income earners	Co-contribution (2003. 7. 1), Low income superannuation contribution(2012. 7. 1),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2017. 7. 1)	1. Low income superannuation contribution ends (2017. 6. 30) 2. Co-contribution is ongoing
9	Roll-over for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in certain circumstances	ADFs(1994), merging funds(2008), inter-fund MySuper mandatory transfers(2013), intra-fund MySuper mandatory transfers(2015)	merging funds and MySuper mandatory transfers(2017)
10	Regional Equalisation Plan rebates	2000년 7월	2017. 12. 31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6*, 2017. 1

가. 신설 조세지출의 일몰기한

- 최근 10년간 152개항목(입법 예정 포함)을 신설 또는 신설예정이었던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고 일몰기한이 부여된 13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함
 - 13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자연재해와 같은 일회성 문제에 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관련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일몰기한을 부여함
 - 자연재해(4건) 및 스포츠행사(1건)과 같이 일회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표 IV-15〉 일몰기한이 설정된 신규 조세지출의 기본 정보(호주)

번호	제목	도입연도	일몰기한	비고
1	Business Assistance Fund for disasters	'06. 3. 22	'07. 6. 30	자연재해 관련 정책
2	Cyclone Larry - fuel excise relief	'06. 3. 22	'07. 6. 30	자연재해 관련 정책
3	Capital gains tax roll-over for membership interests in medical defence organisations	'07	'10. 7. 1	의료 관련 정책-
4	Exemption of tax offsets paid under the National Urban Water and Desalination Plan	'09. 7. 1	'14. 6. 30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5	Taxation assistance for victims of Australian natural disasters	'06. 3. 22	'11. 6. 30	자연재해 관련 정책
6	Capital gains tax-optional roll-over of capital losses for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08. 12. 24	'11. 6. 30	기타 경제 관련 정책
7	Rebate for broadcasting licence fees	'10	'11	교통·통신 관련정책
8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11. 7. 1	'12. 6. 30	자연재해 관련 정책
9	Pacific Seasonal Worker Pilot Scheme	'11. 7. 1	'12. 6. 30	노동·고용 관련 정책
10	Incentives for licensees to facilitate new arrangements in the 400 MHz band	'10	'15. 12. 31	여가·문화 관련 정책
11	Exemp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cket Council for the 2015 Cricket World Cup	'13. 7. 1	'18. 6. 30	스포츠 행사 관련 정책
12	Conservation tillage refundable tax offset	'12. 7. 1	'15. 6. 30	농·임·어업 관련 정책
13	Exemption for Defence Abuse Reparation Payment Scheme	'13. 7. 1	'15. 7. 1	사회 보장 및 복지 관련 정책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06-2016*

- 일몰기한이 설정된 13개 항목의 신설된 시점에서 일몰기한까지 기간은 1년에서 5년 3개월로 다양하며, 평균 2년 9개월임
 - ‘1년 이상 ~ 2년 미만’으로 짧은 조세지출이 5건이고, ‘5년 이상’인 조세지출은 4건으로 분포가 양극단에 많이 존재하여 실제 평균일몰기간과 괴리가 있음
 - 신설된 시점부터 일몰기한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이 5건, ‘2년 이상 ~ 3년 미만’이 2건, ‘3년’이 2건, ‘5년 이상’ 4건으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16> 신규 조세지출의 일몰부여 기간(호주)

(단위: 건)

일몰기간	조세지출 수	평균
1년 이상 ~ 2년 미만	5	2년 9개월
2년 이상 ~ 3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2	
5년 이상	4	

- 일몰기한이 설정된 경우에 일몰기한에 따라 제도를 폐지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3건 중 7건이 신설 시 설정된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1년 연장 후에 폐지된 1건, 일몰기한은 1년 단축하고 폐지된 1건까지 합치면 총 9건이 일몰 종료됨
 - 나머지 4건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 또는 통합 등을 통해 일몰기한이 삭제됨
 - 일몰이 부여된 신규 조세지출의 일몰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Rebate for broadcasting licence fees”: 2011년에 일몰 1년 연장 후 2012년에 폐지됨
 - “Conservation tillage refundable tax offset”: 2013년에 일몰 1년 단축하여 2014년 7월 17일 폐지됨
 - “Pacific Seasonal Worker Pilot Scheme”: 다른 법안(Seasonal Labour Mobility Program)으로 대체 후 일몰을 삭제함
 - “Capital gains tax roll-over for membership interests in medical defence organisations”: 2010년도에 일몰기한을 삭제함

- “Taxation assistance for victims of Australian natural disasters”: 다른 법안에 통합되었다가 일몰기한이 없어진 후 2014년 6월 30일 폐지되어 경과규정으로 남아있음
- “Exemp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cket Council for the 2015 Cricket World Cup”: 다른 법안에 통합됨
- 나머지 조세지출은 신설시 설정된 일몰기한에 맞춰 종료됨

〈표 IV-17〉 신규 조세지출의 일몰 여부 현황(호주)

(단위: 건)

일몰 여부	조세지출 수
일몰기한에 따라 종료	7
일몰기한 1년 연장 후 종료	1
일몰기한 1년 단축 후 종료	1
일몰기한 삭제	2
다른 법안과 통합	2

나. 최근 폐지된 조세지출

- 지난 10년간 발행된 호주의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바탕으로 폐지되거나 기준조세로 편입된 67개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사유 및 일몰기한 설정 여부를 살펴봄
 - 32개 항목은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며, 35개 항목은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6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정보는 <부표 II-1>, <부표 II-2>에 나와 있음

1) 일몰기한 없이 폐지된 조세지출

-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고 종료된 조세지출 32건의 폐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의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기준조세체계로 편입(5건)
 - 관련 정부정책이 중지되면서 폐지(4건)
 - 다른 법안에 도입 및 발의로 인해 폐지(6건)

- 장기간 감면실적이 없는 경우(3건)
 - 폐지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조세지출 14건도 위의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할 것이라 판단됨
- 다른 법안에 의해 조세지출항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Omnibus Repeal Day Act」를 통해서 폐지 또는 개정하기도 함
- 일몰기한이 없는 경우에 규제 및 다른 법안(Omnibus Repeal Day Act 등)을 통해 폐지하기도 함
 - Omnibus Repeal Day Act는 정책의 목적과 관련된 법 및 법률 조항에 대한 폐지 및 연방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법안임
 - 정책목적에 따라 「Omnibus Repeal Day Act」을 통해 조세지출의 존속 여부가 결정하기도 함

2)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된 조세지출

-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된 항목 35개 중에 25개는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일몰기한이 부여되었으며, 10개 항목은 조세지출이 신설된 시점에 일몰이 부여되었음
- 조세지출이 신설된 항목은 “가. 신설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에 나온 9건의 조세지출과 '05년도에 도입된 조세지출 1건임
 - '05년도에 도입된 조세지출은 「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 Scheme」으로 운용기간은 2년이었으며, 일몰기한에 따라 종료됨
 -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일몰기한이 부여된 경우, 일몰기한 1~4년이고, 평균적으로 일몰부여 시점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에 일몰이 도래함
 - 일몰기한 없이 신설된 조세지출에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일몰까지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항목 21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표 IV-18> 기존 조세지출의 일몰부여 시 존속기간(호주)

(단위: 건)

일몰 부여 후 존속기간	조세지출 수	평균
1년 이하	21	1년 3개월
1년 ~ 2년 이하	2	
2년 ~ 3년 이하	1	
3년 ~ 4년 이하	1	

- 일몰기한에 따라 종료된 35개 조세지출항목 중에 일몰기한이 연장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며, 연장된 일몰기한에 맞춰서 폐지됨
 - 일몰을 설정하고 연장한 경우는 5건으로 1년 이내로 연장하였음
 - 일몰을 연장한 사례 5건 중 1건(1개월 연장)을 제외하고 모두 1년을 연장하였으며, 재연장한 사례는 없었음
 - 일몰이 연장된 후에 일몰기한에 따라 종료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Capital protected borrowings: 2013년 5월 13일 종료에서 같은 해 6월 30일로 연장되어 종료됨
 - Research and development-Premium tax concession for additional expenditure: 2010년 6월 30일 종료에서 2011년 6월 30일로 연장된 후 폐지됨
 - Research and development-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oncession: 2010년 6월 30일 종료에서 2011년 6월 30일로 연장된 후 폐지됨
 - Capital gains tax roll-overs to facilitate the consolidation of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s: 2011년 6월 30일 종료에서 2012년 6월 30일로 연장된 후 폐지됨
 - PRRT-increased deduction for petroleum exploration expenditure in designated offshore frontier areas: 2008년 종료에서 2009년 연장된 후 폐지됨

다. 일몰부여 조건 또는 원칙

- 2006년에서 2016년도 「Tax Expenditure Statement」를 분석한 결과, 신규 조세지출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일회성 문제나 스포츠행사에 일몰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몰이 설정된 신규 조세지출(13건)의 절반(5건)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의 성격에 따라 일몰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에 따른 운용기간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함(1년 ~ 5년 3개월)
-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폐지시점을 공지하는 식으로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폐지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경우(21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25건)의 84%에 해당함

-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에 부여되는 일몰기한도 폐지시점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함
- 일몰기한을 설정하면 연장을 해도 1년 이내로 연장하며, 재연장을 하지 않음
 -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연장하는 경우는 5건이지만, 연장한 기간은 1년 내외이며 재연장하는 사례는 없었음
 - 필요에 따라 일몰기한보다 1년 단축하여 폐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2013년도에 새로운 일몰기한(2014년 6월 30일)을 공지하였음
 - 신설 시 설정된 일몰기한은 2015년 6월 30일임
- 폐지시점이 확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몰기한을 부여하면 최대한 일몰기한에 따라 종료하고 있음
 - 신설 시점에 일몰이 부여된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경우(2건)는 있으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에 일몰기한을 부여하였다가 다시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사례는 없었음
 - 일몰기한이 곧 폐지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라. 조세지출 사후관리

- 일몰부여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몰종료 후에 감면규모를 추정하고 감면규모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서에서 삭제하고 있음
 - 이는 모든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며, 일몰부여 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 제도는 확인되지 않음
 - 일몰종료 후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면실적이 없어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예산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 중에서도 장기간 감면규모가 없는 경우 폐지하기도 함
-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작성하여 조세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여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 1980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이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초기(1980 ~ 1984년)에는 예산서(Budget Statements)의 부록으로 발간함
 - 1986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매년 작성하여 발행함
 - 각 조세지출항목마다 기능별 분류(Functional category)를 부여하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할 때에는 추정에 대한 신뢰도(Estimate Reliability)를 함께 제시하는 점은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와 다름
 - 아래 <표 IV-15>와 같이 규모추정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예산법령 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반기 경제재정 전망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가 발표되는 시점에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발행

<표 IV-19> 조세지출 추정규모 신뢰도 점수 및 등급

점 수	등 급
0	Very low
1	Low
2	Low
3	Low
4	Medium - low
5	Medium
6	Medium
7	Medium
8	Medium - high
9	High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6, 2017*. 1

- 호주 국회의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제도에 대해 검토(review) 일정 또는 일몰기한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⁴²⁾
 -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재정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평가와 같이 정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42) 출처: 호주 국회(Parliament of Australia) 웹사이트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5p/TaxExpenditures)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보다는 감면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감면규모 추정을 위한 방법 및 추정모형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프랑스의 제도운영

가. 프랑스의 조세지출 일몰제도 개요

- 프랑스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에 일몰 여부 및 일몰연도를 표기하고 있음
 - 다수가 ‘일몰없음’이며 4분의 1 정도에만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있음
 - 규칙화된 일몰기한 부여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2009년 이후로 제도 신설 시 평균적으로 약 40%의 항목에 일몰을 부여하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 해당 항목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일몰기한을 부여함
 -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재정법 개정안 회의를 거쳐 일몰기한이 부여되는 모습을 보임⁴³⁾
- 모든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일몰기한 부여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스크리닝 형태의 사후관리를 행하고 있음
 - 2001년에 도입된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및 하위 프로그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들에 일몰기한이 부여되는 형태를 보임

43) 프랑스는 2008년 개정된 헌법에 공공정책평가 관련 내용을 명시함. “의회는 법을 가결하고, 정부 활동을 통제하며, 공공정책을 평가한다.”(헌법 제24조),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공공정책 평가 진행 시 의회와 정부를 돕는다.”(헌법 제47조 제2항), “의회는 정부가 진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헌법 제51조 제2항)

나.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지출 항목 검토

-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의 비율은 3개년도 평균 25%이며,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 비중은 항목 수 비율에 비하여 낮은 평균 8.4%임
- 일몰기한 부여 비율은 2015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IV-20>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일몰기한이 부여된 항목의 비율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총 조세지출 항목 수	416개	410개	413개
일몰기한 없는 항목 수	307개	305개	314개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 수	109개	105개	99개
일몰기한 부여 비율	26.20%	25.61%	23.97%
일몰기한 부여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 비중	7.91%	8.88%	8.51%

주: 조세지출 규모 비중은 각 연도 예산서의 조세지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정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세지출 항목들의 일몰기한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신설 시 일몰기한을 명시한 항목 수, 적용기한별 항목 수 등이 매년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표 IV-21>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 특징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일몰기한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	5개	6개	5개
적용기한 ⁴⁴⁾ 1년 이상 3년 미만	32개	31개	31개
적용기한 3년 이상 5년 미만	37개	45개	40개
적용기한 5년 이상 7년 미만	19개	14개	10개
적용기한 7년 이상 10년 미만	6개	9개	8개
적용기한이 10년 이상	2개	2개	5개
경과규정	14개	4개	5개
합계	115개	111개	104개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표 IV-22〉 일몰기한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

순서	항목명	도입 연도	일몰 연도 ⁴⁵⁾	적용 기한 ⁴⁶⁾	세목	정책목적	기능별 분류
1	산림 경영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세액공제	2013	2017	5년	소득세	산림 분야 지원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2	중소기업의 로봇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2013	2015	3년	소득세 및 법인세	기업의 투자 장려	경제
3	해외 프랑스령 내 공공주택부문 투자 세액공제	2013	2017	5년	법인세	해외 프랑스령 지원	해외
4	택지 양도의 부동산 수익 공제	2014	2017	4년	소득세	주택의 개축 및 공급 확대	영토와 주거의 평등
5	국제 스포츠 대회 관련 프랑스 기관 이익의 면세	2014	2017	4년	소득세 및 법인세	국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6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조직의 원천징수세 면제	2014	2017	4년	기타 직접세	국제 스포츠 관련 기관 지원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7	부동산 생전 증여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14	2015	2년	인지세	부동산 건축 규제 해소	영토와 주거의 평등
8	신축 주거용 부동산 생전 증여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14	2016	3년	인지세	주택 건설 재개	영토와 주거의 평등
9	특정 부동산 무상 양도 시 인지세 면제	2014	2017	4년	인지세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	영토 정책
10	언론사 자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2015	2018	4년	소득세	언론 산업 지원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11	중소기업 투자 저축 계좌의 증권 양도 시 선택적 과세이연	2015	2017	3년	소득세	중소기업 지원 저축 장려	국가 재정 확보

44) 제도가 개정되면서 일몰이 부여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상 일몰연도-개정연도)+1년을 적용기한으로 계산함.

순서	항목명	도입 연도	일몰 연도 ⁴⁵⁾	적용 기한 ⁴⁶⁾	세목	정책목적	기능별 분류
12	3D 프린터에 대하여 24개월 가속 감가상각	2015	2017	3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에너지 집약 기업 지원	경제
13	축산 폐수 저장시설에 대하여 예외적 감가상각	2015	2017	3년	소득세 및 법인세	농업 분야 지원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14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대한 예외적 소득공제	2015	2017	2년 ¹⁾	소득세 및 법인세	에너지 집약 기업 지원	경제
15	3.5톤 이상의 천연가스 및 바이오메탄 차량 특별공제	2015	2017	3년	소득세 및 법인세	환경 친화적 소비 장려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
16	투자로 분류되는 특정장비 초과감가상각	2015	2016	2년	소득세 및 법인세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	경제

주: 1) 해당 항목의 경우 2015년도에 도입되었으나 2016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산정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확인 가능한, 2013년도 이후에 신설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40개이며,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16개 항목은 도입 시 일몰연도를 부여받았음

○ 예산서 작성 이전에 도입된 제도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신설 시 일몰부여 비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일몰기한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들의 제도 적용기한은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이며, 세목, 정책목적 및 관련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및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몰 부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위의 ‘국제 스포츠 대회 관련 프랑스 기관 이익의 면세’ 항목과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조직의 원천징수세 면세’ 항목의 경우 같은 재정지출

45) 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상 일몰연도를 일몰연도로 표기함.

46) 일몰기한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들의 경우 (일몰연도-도입연도)+1년을 적용기한으로 계산함.

프로그램 산하 조세지출 항목으로서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같은 일몰연도를 부여받았음

- 하지만 ‘부동산 생전 증여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항목과 ‘신축 주거용 부동산 생전 증여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항목의 경우 같은 재정지출 프로그램 산하 조세지출 항목으로서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으나 서로 다른 일몰연도를 부여받음
- 위의 항목들 중 적용기한이 제일 짧은 항목의 경우 2년인데, 조세지출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신설 시 1년의 적용기한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 2015~2017년도 사이에 일몰에 변화가 생긴 항목들에 대하여 특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그 전까지는 일몰이 없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가 2015년도 말 또는 2016년도에 일몰이 부여되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부터 부여받은 일몰이 기입된 항목들
 - 총 9개의 항목 중 8개가 1년의 일몰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급하게 해당 항목을 폐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 해당 항목과 관련된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는 ‘영토와 주거의 평등’,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경제’, ‘건강’,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임
2. 그 전까지는 일몰이 없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가 2014년도 말 또는 2015년도에 일몰이 부여되어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부터 부여받은 일몰이 기입된 항목들
 - 총 4건으로서 2017년도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몰기간이 다양함
3. 원래 일몰기한을 부여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서에서부터 일몰 없음으로 분류된 항목들
 - 총 4건이며 모두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임
4. 원래 일몰기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서에서부터 일몰 없음으로 분류된 항목

- 총 1건으로 집단저축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법정 의무 납입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내용이며 2013년도 초에 일몰을 부여하였다가 2013년도 말에 일몰을 삭제함
 - 5. 2015년도 말 또는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2017년도 예산서에서부터 해당 내용이 반영된 항목들
 - 총 9건이며 수혜 내용이 다양하고 적용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성됨
 - 6. 2014년도 말 또는 2015년도에 법 개정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2016년도 예산서에서부터 해당 내용이 반영된 항목들
 - 총 8건이며 수혜 내용이 다양하고 적용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성됨
 - 7. 2015년도 초와 2015년도 말에 각각 일몰이 연장되어 조세지출예산서상 2개년 연속 일몰이 연장된 항목
 - 총 1건이며 농촌활성화구역에 설립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임
 - 8. 원래 일몰이 없는 항목이었으나 2014년도 말 법 개정으로 일몰이 부여되었고 다음연도에 곧바로 다시 일몰이 삭제되어 현재 일몰 없음으로 분류된 항목
 - 총 1건으로 승인된 조합에 가입한 납세자의 가입 및 회계 비용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내용임
-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III-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은 일몰기한이 부여되는 과정의 특성상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함
- 모든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은 성과평가 과정을 통해 부여되며 해당 성과평가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수행되기 때문임
 - 간혹 재정지출 성과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세지출 항목 자체의 실적치가 없거나 당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을 부여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성과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일몰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이민, 망명 및 통합’ 기능별 분류의 하위 프로그램인 ‘통합 및 프랑스 국적의 취득(P104)’과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여전히 재정지출 사업으로서 운용되고 있으나 해당 조세지출 항목만 그 효용성이 문제가 되어 2013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 따라서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 항목들의 일몰기한 특성을 분석해 보아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음

〈표 IV-23〉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관련 조세지출 일몰기한 부여 비율

기능별 분류명	관련 총 조세지출 항목 수			일몰기한 부여한 항목 수			총 조세지출 항목 수 대비 비율(%)			일몰기한 부여한 항목의 비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건강	11개	11개	10개	1개	1개	1개	0.24	0.24	0.24	9.09	9.09
경제	79개	74개	77개	22개	15개	14개	5.29	3.66	3.39	27.85	20.27	18.18
고용 및 노동	26개	25개	25개	3개	3개	3개	0.72	0.73	0.73	11.54	12.00	12.00
공공재정 및 인사관리	2개	2개	2개	0개	1개	0개	0	0.24	0	0	50.00	0
공영방송	3개	3개	3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공적개발지원	1개	1개	1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국가재정 확보	28개	28개	30개	0개	0개	1개	0	0	0.24	0	0	3.33
국방	4개	4개	4개	3개	3개	3개	0.72	0.73	0.73	75.00	75.00	75.00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32개	31개	31개	9개	8개	10개	2.16	1.95	2.42	28.13	25.81	32.26
문화	27개	21개	22개	5개	2개	2개	1.2	0.49	0.48	18.52	9.52	9.09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4개	10개	9개	2개	6개	5개	0.48	1.46	1.21	50.00	60.00	55.56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	33개	33개	34개	8개	7개	7개	1.92	1.71	1.69	24.24	21.21	20.59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15개	17개	17개	0개	3개	2개	0	0.73	0.48	0.00	17.65	11.76
안보	3개	3개	3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연구 및 고등교육	16개	16개	15개	6개	6개	4개	1.44	1.46	0.97	37.50	37.50	26.67
연대, 통합 및 평등한 기회	27개	26개	25개	2개	1개	0개	0.48	0.24	0	7.41	3.85	0
영토와 주거의 평등	49개	50개	50개	22개	23개	25개	5.29	5.61	6.05	44.90	46.00	50.00
영토 정책	23개	22개	20개	13개	11개	9개	3.13	2.68	2.18	56.52	50.00	45.00
이민, 망명 및 통합	1개	1개	-	1개	1개	-	0.24	0.24	-	100.00	100.00	-
정부 활동 및 통독	1개	1개	1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정의	1개	1개	4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개	1개	1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참전용사 지원 및 기념	6개	6개	6개	0개	0개	0개	0	0	0	0	0	0
학교 교육	2개	2개	2개	0개	1개	1개	0	0.24	0.24	0	50.00	50.00
해외	21개	21개	21개	12개	13개	12개	2.88	3.17	2.91	57.14	61.90	57.14
합계	416개	410개	413개	109개	105개	99개	26.20	25.61	23.97	21.91*	25.99*	19.86*

주: *의 해당 수치는 합계치가 아닌 평균치를 의미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가장 많은 조세지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는 ‘경제’이며 그다음은 ‘영토와 주거의 평등’,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 ‘농업, 식량, 농촌의 임 산업’, ‘국가재정 확보’ 순임

-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중 ‘문화’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관련 조세지출 항목 수가 6개 줄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의 경우 6개가 증가하였음
 - 2015년에는 ‘문화’로 분류되었던 조세지출 항목 중 4개는 2016년에는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청각작품에의 자금조달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 ② 영화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③ 오디오 녹음물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 ④ 시청각 작품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6년부터 ‘도서와 문화산업(P344)’이라는 프로그램이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기능별 분류에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위의 조세지출 항목들의 연계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가 ‘문화’에서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으로 바뀌었음

- ‘국가재정 확보’ 및 ‘연대, 통합 및 평등한 기회’ 기능별 분류의 경우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의 수에 비해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의 수가 적음
 - 해당 기능별 분류의 성격상 관련 조세지출 항목을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5~2017년도 예산서상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의 비율이 50% 이상인 적이 있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는 ‘이민, 망명 및 통합’, ‘국방’, ‘해외’, ‘영토 정책’,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영토와 주거의 평등’, ‘학교’임

- ‘국방’ 관련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기한이 있는 것은 3개이며, 해당 항목들 모두 제도 신설 시 일몰기한을 부여받았음

- 일몰기한이 없는 나머지 항목 1개의 조세특례 내용은 예비군 훈련 등 시민 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의 영속성이 필요하여 일몰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 3개는 모두 일시적인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여 해당 항목의 정책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들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명예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직업군인 전용 저축(PMID) 불입금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② 국방부의 구조조정 또는 개편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자를 위한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③ 방위산업 재배치 구역에 설립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학교 교육’ 관련 조세지출 항목은 총 2개이며, 그 중 1개의 항목이 2015년도에 일몰기한을 부여받음
-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우리나라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일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임
 - 2015년도에 일몰을 부여받은 항목은 기업의 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도입연도가 1958년으로 매우 오래된 제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일까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으며, 그 배경에는 2014년 7월에 입안되어 채택된 「연수생 관리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⁴⁷⁾이 있음
 - 연수 기간 측면에서 상기 법과 기존의 해당 조세지출 관련 행정조치⁴⁸⁾가 충돌하여 적용기한 1년이라는 짧은 일몰기한을 부여하였음
- ‘영토와 주거의 평등’ 기능별 분류의 경우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 수가 많으며 동시에 일몰기한을 부여한 항목의 비율도 높아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부록 III-2>에 관련 내용을 정리함

47)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

48)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근거법은 행정조치 BOI-RSA-CHAMP-20-30-10-10임.

- 2015~2017년도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계된 조세지출 총항목 수는 50개이며, 그 중 25개에 일몰이 부여됨
- 일몰이 없는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길고 그 중 다수가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지속성이 필요한 항목들일 가능성이 높음
- 그 밖의 뚜렷한 일몰 부여 기준은 발견할 수 없음

- 일몰을 부여받은 항목들 중에서도 연계된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의 성격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 운용의 장·단기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적용기한을 나누어 아래 표에 정리하였음
- 일몰이 있는 항목들 중 약 70%의 항목들이 적용기한 5년 미만임

<표 IV-24>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적용기한 구성 비율

(단위: 개)

기능별 분류	일몰 존재	적용기한 분류					경과 규정
		1~2년	3~4년	5~6년	7~9년	10년 이상	
건강	1	1	-	-	-	-	-
경제	14	5	7	-	1	-	1
고용 및 노동	3	1	1	-	-	-	1
국가재정 확보	1	-	1	-	-	-	-
국방	3	-	1	-	2	-	-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10	2	6	2	-	-	-
문화	2	-	2	-	-	-	-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5	-	4	1	-	-	-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	7	4	1	-	2	-	-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2	-	2	-	-	-	-
연구 및 고등교육	4	2	2	-	-	-	-
영토와 주거의 평등	25	11	10	2	-	-	2
영토 정책	9	1	2	2	2	1	1
학교 교육	1	1	-	-	-	-	-
해외	12	3	1	3	1	4	-
합계	99	31	40	10	8	5	5

주: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기능별 분류의 경우 제외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국방’과 ‘영토 정책’, ‘해외’에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7년 이상의 적용 기한을 가진 항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의 특성상 조세지출 항목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내용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신설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의 정확한 적용기한을 파악하여야 함
- 보다 정확한 적용기한 분포의 확인을 위해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된 항목 중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신설 시점부터 2017년도 예산서 기준 일몰연도까지의 총 적용기한을 확인함
-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 수는 총 73개이며, 그 중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항목 수는 33개임
 -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항목들 중 신설 시부터 일몰이 존재했던 항목은 27개이며, 나머지 6개 중 3개는 신설 시엔 일몰이 없었던 항목, 3개는 신설 시 일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임
 - 신설 시 일몰이 존재했던 항목들의 최초 적용기한은 2년부터 9년까지로 다양하며 다수가 3~4년의 적용기한에 분포되어 있음
 - 2014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 중 최초 적용기한이 5년 이상인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전에는 없던 최초 적용기한이 2년인 항목이 신설됨
 - 신설 시 최초로 부여받은 적용기한 분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함

<표 IV -25>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의 최초 적용기한

(단위: 개)

도입연도	항목 수	적용기한 분류				
		2년	3년	4년	5년	9년
2009	6	-	1	-	2	3
2011	5	-	1	4	-	-
2012	1	-	-	-	1	-
2013	3	-	1	-	2	-
2014	6	1	1	4	-	-
2015	6	1	4	1	-	-
합계	27	2	8	9	5	3

주: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기능별 분류의 경우 제외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신설 시에는 일몰이 없었으나 그 후에 일몰이 부여된 항목을 포함하여 일몰이 존재하는 항목 30개의 총 적용기한 분포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칙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 총 적용기한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표기된 일몰연도를 폐지 시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1년부터 17년까지 다양함
 - 일몰 연장 횟수도 0회부터 3회까지 존재하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늘어나는 기간도 1년부터 8년까지 제각각임
 - 성과평가의 결과 및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몰 연장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일몰 연장 횟수가 0인 항목 중 다수가 2014년 및 2015년에 신설된 항목임
 - 행정상 일몰연도는 바꾸지 않고 예산상 일몰연도만을 연장한 사례도 있음
 - 첫 연장 때 일몰을 2년 연장하였고 그 후 일몰을 아예 없앤 항목도 있음
 -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해외 프랑스로)에서의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항목 2개의 경우 적용기한을 단축했다가 다시 연장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I-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IV-26>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의 총 적용기한

(단위: 개)

도입연도	항목 수	적용기한 분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7년	일몰 삭제
2009	6	-	1	3	-	1	1	-
2011	7	2	-	-	3	1	-	1
2012	1	-	-	1	-	-	-	-
2013	4	-	1	1	1	1	-	-
2014	6	1	5	-	-	-	-	-
2015	6	1	5	-	-	-	-	-
합계	30	4	12	5	4	3	1	1

주: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기능별 분류의 경우 제외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세목별로 일몰을 부여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득세와 법인세가 조세지출 항목 수에 비하여 일몰을 부여한 항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기할 점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의 경우 모든 조세지출 항목이 일몰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임
-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명시하는 기타 세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총 4가지이며 구체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음
 - 시청각 및 전자 통신 부문 운영자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
 - 공영방송 관련 세금
 - 소유한 자동차 중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자동차에 대한 연간 세금
 - 금융거래세

〈표 IV-27〉 세목별 조세지출 일몰기한 부여 비율

세목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항목 수(개)		비율(%)		항목 수(개)		비율(%)		항목 수(개)		비율(%)	
	전체	일몰	전체	일몰	전체	일몰	전체	일몰	전체	일몰	전체	일몰
소득세	189	55	45.43	50.46	187	56	45.61	53.33	186	48	45.04	48.98
소득세 및 법인세	50	26	12.02	23.85	49	25	11.95	23.81	52	30	12.59	30.61
법인세	44	15	10.58	13.76	40	11	9.76	10.48	40	9	9.69	9.18
기타 직접세	13	3	3.13	2.75	11	1	2.68	0.95	11	1	2.66	1.02
인지세	44	6	10.58	5.50	46	8	11.22	7.62	44	5	10.65	5.10
부가세	41	0	9.86	0	41	0	10.00	0	41	0	9.93	0
에너지세	25	4	6.01	3.67	26	4	6.34	3.81	28	5	6.78	5.10
기타 세금	10	0	2.40	0	10	0	2.44	0	11	0	2.66	0
합계	416	109	100	100	410	105	100	100	413	98	100	100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프랑스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부가가치세의 공통 원칙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 위원회 지침(2006/112/EC)」을 적용받아 필수재로 분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은 조세지출로 분류하지 않음
- 특정 부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있음

- 하지만 필수재 여부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가 조세지출인지 또는 기준조세체계인지를 구분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생활 영위를 위하여 알코올류를 제외한 식음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저율과세하는 것은 기준조세체제로 분류되지만, 알코올류를 제외하고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세를 저율과세하는 것은 조세지출임
- 따라서 조세특례 제도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프랑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중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매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IV-28〉 부가가치세 감면 중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23개

항목명
- 생활 영위를 위한 알코올류를 제외한 식음료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 연극 및 서커스 등 공연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난방용 목재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CGI 281 octies(부가세율 2.1%)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정부와 합의된 공공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 특정 조건하의 공공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 예술 작품 및 골동품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지방정부가 수도 및 소독업체 등에 제공한 수도 및 환급금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하수도 이용료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박람회 등 유사한 행사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동물원 및 식물원, 박물관, 기념관 등의 입장료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여객 운송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영화관 입장료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 TV 수신료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애니메이션 공원 방문 비용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책, 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에서 정한 저작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0%의 부가세율 적용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지방정부가 지역 TV 방송국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지방정부가 지방도로 관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 적용
- 해외 프랑스령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개량 작업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2.1%의 부가세율 적용
- 해외 프랑스령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양도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2.1%의 부가세율 적용
- 서적에 대하여 5.5%의 부가세율 적용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다. 일몰제도 관리 방안

- 프랑스의 경우 조세지출의 일몰만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정법 개정안 작성의 일환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를 수행함
 - 재정법 개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은 매년 작성되며 그 과정에서 전년도 성과보고서(RAP, Rapports Annuel de Performance)와 차기년도 성과계획서(PAP, Projets Annuel de Performance)를 발표함
 - 성과계획서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해당 성과계획서 작성의 주요안점 및 목표와 성과지표, 연계된 조세지출에 대한 내용 개관, 하위 프로그램 및 사업별 지출액 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성과보고서 역시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해당 성과보고서에 대한 총평 및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내용, 연계된 조세지출 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성과보고서에서는 연계된 조세지출 각 항목의 전년도 최종 규모와 해당년도의 추정치 및 실제 지출 규모, 이 세 가지를 제시하여 조세지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공공정책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곳은 재정경제부의 예산국이며 성과평가 포럼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하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그 중에서도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본 보고서의 목적인 조세지출 일몰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현행 공공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는 매우 체계적이며 일관성 또한 겸비하고 있어 전체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성과평가 과정은 곧 재정법 개정안 작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간 일정은 하기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재정법 개정안 부록 문서에 수록됨

<표 IV-29> 재정부 개정안 작성을 위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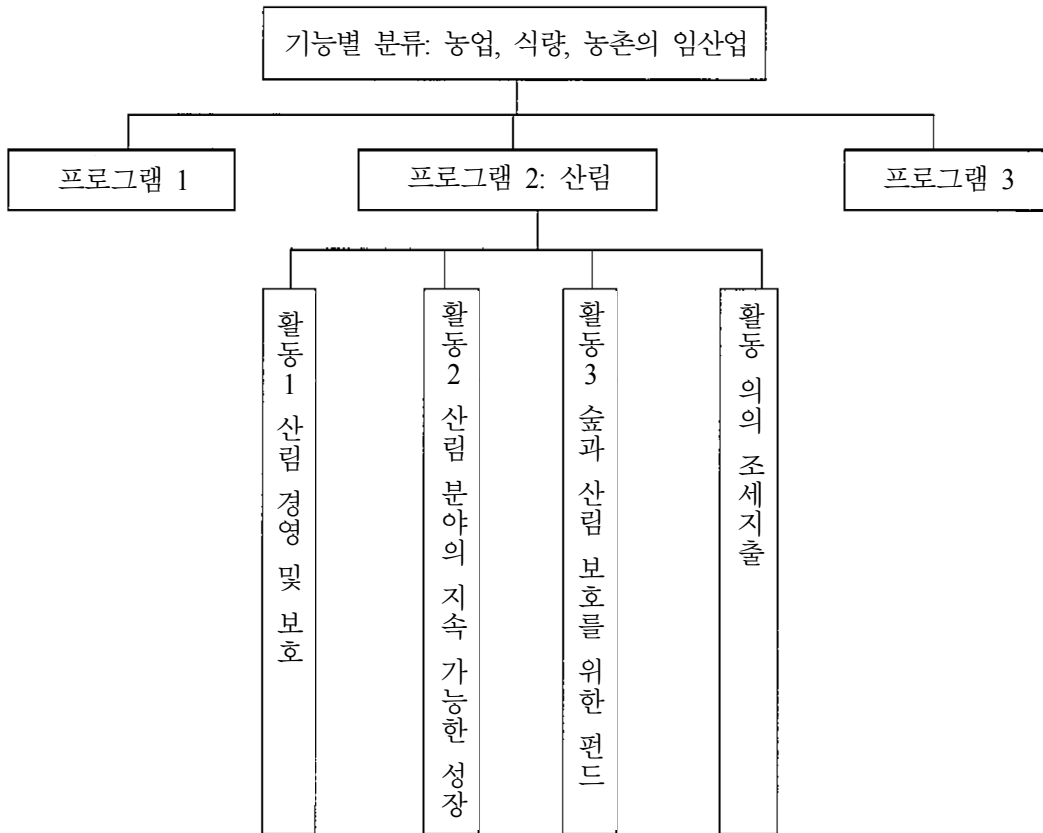
시기	재정부 개정안 작성 과정
3월	- 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범부처공공정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관련 부처 장관 회의
4월	- 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성과관리토론회 진행
5월	- 차기년도 성과관리토론회 진행 - 5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 결과 취합
6월	- 차기년도 공공재정 진로토론회 진행 - 토론회 자료로서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및 프로그램 목록, 각 프로그램별 목적과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관련 내용 작성
7월	- 차기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 각 부처별로 성과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8월	- 수집된 공공정책 성과 관련 DB에 대한 토론 - 기능별 분류별로 차기년도 성과계획서 발표
9월	- 차기년도 횡단정책문서 발행
10월의 첫번째 화요일	- 차기년도 재정부 개정안 발표

자료: Guide de la performance(MEF, 2015.3.)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프랑스의 재정지출은 세 단계로 구성됨

- 가장 상위 단계는 기능별 분류(mission)로서 정부 예산의 편성 단위임
 - 하나의 기능별 분류에는 일정한 범위의 예산이 매년 변동 없이 부여되며 의회의 논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기능별 분류의 하위 사업인 프로그램 간에만 예산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능별 분류 전체의 예산을 바꿀 수 없음
-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programme)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능별 분류를 구성하며 성과관리의 단위로 활용됨
 - 각 프로그램마다 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여되며 프랑스의 공공정책 성과평가는 프로그램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제일 하위 단계는 활동(action)으로서 세부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래의 그림을 통해 프랑스의 재정지출 사업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그림 IV-7] 재정지출 사업구조



자료: 프랑스 예산국 성과평가 포럼 웹사이트(<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식화함

-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및 성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조세지출 항목은 전체 기능별 분류 중 일부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성과보고서도 일부의 기능별 분류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성과평가 포럼 웹사이트에 공개함
 - 성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기능별 분류의 경우 아예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함
 - 조세지출 항목과 연계된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의 대부분은 성과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으나 ‘공영방송’ 기능별 분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평가 포럼 웹사이트에서 해당 성과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조세지출 항목과 연계되지 않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중에서도 성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IV-30> 각 기능별 분류의 조세지출 연계 및 성과보고서 발행 여부

기능별 분류명	조세지출			성과보고서	
	2015	2016	2017	2015	2016
국제 통화 협상					
국가의 외교 행위				○	○
국가의 일반 행정 및 영토 관리				○	○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	○	○	○	○
공적개발지원	○	○	○	○	○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					
참전용사 지원 및 기념	○	○	○	○	○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서비스 향상					
공영방송	○	○	○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국가의 통제와 지침				○	○
도로의 교통 및 주차문제 통제					
항공 노선 개발 및 통제					
분류 불가능				○	○
문화	○	○	○	○	○
국방	○	○	○	○	○
농촌지역 등 개발					
정부 활동 감독	○	○	○	○	○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	○	○	○	○	○
경제	○	○	○	○	○
영토와 주거의 평등	○	○	○	○	○
국가재정 확보	○	○	○	○	○
학교 교육	○	○	○	○	○
농촌지역 전개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의 재정적 지원					
학습의 근대화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금					
공공재정 및 인사관리	○	○	○	○	○
국가의 부동산 자산 관리					
국가의 전파 스펙트럼, 전기 통신 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자원의 관리 및 재활용					
이민, 망명 및 통합	○	○		○	○
미래에의 투자					
정의	○	○	○	○	○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	○	○	○	○
해외	○	○	○	○	○

기능별 분류명	조세지출			성과보고서	
	2015	2016	2017	2015	2016
프랑스 정부의 그리스 디레버리징에의 참여					
국가의 재정적 참여					
연금					
영토 정책	○	○	○	○	○
공권력				○	○
타국에의 대출					
사기업 또는 개인에의 대출					
준비금					
공보 및 간행물					
연구 및 고등교육	○	○	○	○	○
사회보장제도				○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	○	○	○
상환 및 공제				○	○
건강	○	○	○	○	○
안보	○	○	○	○	○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					
연대, 통합 및 평등한 기회	○	○	○	○	○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	○	○	○	○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고용 및 노동	○	○	○	○	○

자료: 프랑스 예산국 성과평가 포럼 웹사이트(<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재정지출 사업의 일부로 분류되어 성과평가를 함
- 즉 하나의 기능별 분류 안에 프로그램 및 사업과는 별개로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세지출 항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기능별 분류도 존재함
 - 조세지출만을 따로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지출의 일몰도 해당 기능별 분류의 하위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거나 연장 또는 삭제되는 형태를 보임
 - 재정지출 성과평가에 따라 일몰이 결정되므로 일몰 부여에 규칙성이 없으며, 전년도에 일몰을 부여하였다가 그다음해에 다시 일몰을 없애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일몰 부여방식이 다분히 작위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5. 캐나다의 제도운영

가. 캐나다 조세지출 일몰제도

- 캐나다의 경우 일몰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인 일몰 기준이나 일몰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음
 - 일부 조세지출 항목을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음

나.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신설·폐지된 항목

- 1991년부터의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총 65개항목이 도입되고 26개항목이 폐지되었음
 - 199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규로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항목은 총 10개 항목임
 - 이 폐지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항목 존속기간이 2년에서 14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특정한 일몰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표 IV-31>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신규 도입 후 폐지된 항목

(단위: 년)

번호	항목명	신규 도입 및 폐지 연도	존속 기간
1	Home Renovation Tax Credit	2009~2010	1
2	Family Tax Cut	2014~2016	2
3	Small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1992~1994	3
4	Supplementary Low-Income Credit	1998~2000	3
5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computer equipment	2009~2012	4
6	Interest o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s	1992~1995	4
7	Low tax rate on general income of small business between \$200,000 and \$300,000	2001~2005	4
8	Tax rate on resource income	2001~2007	7
9	Child Tax Credit	2007~2015	8
10	Corporate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ax Credit	2003~2016	14

주: 1. 도입 및 폐지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캐나다의 과세연도인 1-12월에 맞추어 존속 기간을 계산함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위의 10개 항목들 중 캐나다 예산안을 통해 파악되는 항목들의 폐지 유형들을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 도입 시점부터 정책 목적 달성이 예상되는 기간을 산정하여 폐지 시점을 정해두고 도입함
 - 「Home Renovation Tax Credit」의 경우 2009년 예산안에서 2009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도입한다고 공표함
 - 캐나다의 주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물을 사고파는 매매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해 해당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함
 -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computer equipment」의 경우 2009년 예산안을 통해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 전까지 구입된 컴퓨터 일체(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도입됨
 - 해당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구형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입 시점에는 과세특례 수혜대상과 일반 과세대상 사이의 세율 격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격차가 사라져 과세특례 항목이 폐지된 경우도 존재함
 - 「Low tax rate on general income of small business between \$200,000 and \$300,000」의 경우 2000년 예산안을 통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나 2004년부로 수혜대상과 일반 과세대상 사이의 세율 격차가 사라져 항목이 폐지됨
 - 소기업에 대한 유사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다른 조항을 통한 소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Tax rate on resource income」의 경우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00)에서부터 논의되어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2003년 예산안에서 향후 5년간 점진적 세율 감소 계획을 발표함
 - 자원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시키고 캐나다 천연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세 저세율 과세혜택을 부여함
 - 5년간 점진적으로 자원부문에 대한 법인세를 낮춘 결과 일반 법인세와 같은 수준까지 낮아져 해당 과세특례 항목이 사라짐

- 도입시점에는 폐지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도입 후 해당 항목의 경제적 효과,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폐지를 결정한 항목도 존재함

- 「Family Tax Cut」의 경우 2015년 예산안에서 전년도인 2014년부터 해당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공표하였으나 2016년 예산안에서 폐지를 결정함
 - 2016년 예산안에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더 나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과세연도부터 「Income Splitting for Couples with Children (Family Tax Cut)」을 폐지함
 -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2015)에 따르면 부부(혹은 그에 준하는 파트너) 간 소득공제분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함
- 「Corporate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ax Credit」은 2003년 예산안에서 「Tax rate on resource income」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어 2012년 예산안에서 2015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공표함
 - 2015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공제분의 경우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므로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2016년에도 조세지출이 발생함
 - 광물채광산업의 경우 오랫동안 다양한 과세특례를 받아왔으므로 다른 산업부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 항목을 폐지함

□ 제도 도입 후 더 발전된 제도로 대체된 경우도 존재함

- 「Child Tax Credit」의 경우 2007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2014년 10월 정책 발표를 통해 2015년 과세연도부터 「the enhanced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으로 대체되었음

다. 조세지출 평가 체계

1) 캐나다 조세지출 보고서

<표 IV-32> 조세지출 보고서 분석 기준

번호	구분	번호	구분
1	항목의 개괄적 정의(Description)	10	기능별 분류(Subject)
2	해당 세목(Tax)	11	CCOFOG 2014 code ¹⁾
3	수혜자(Beneficiaries)	12	관련 정부 프로그램(Other relevant government programs)

번호	구분	번호	구분
4	감면방법(Type of measure)	13	추정에 사용된 자료(Source of data)
5	관련 법령(Legal reference)	14	실적치 추정 방법 (Estimation method)
6	시행 연도 및 최근 연혁 (Implementation and recent history)	15	예측치 추정 방법(Projection method)
7	도입 목적(Objective)	16	수혜자 수(Number of beneficiaries)
8	분류(Catagory)	17	추정 및 예측 값(Cost information)
9	기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Reason why this measure is not part of benchmark tax system)	.	.

주: 1) “CCOFOG 2014 code”는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2014 code”의 약자로 캐나다 통계청에서 금융, 재정 및 공공부문 통계발표에 사용되는 분류 코드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캐나다 재무부에서는 매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7년 보고서 기준 총 208개의 항목에 대하여 위의 17개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캐나다의 경우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세목은 소득세“Personal Income Tax(PIT)”,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CIT)”,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GST)”이며 한 항목에 두 개 이상의 세목이 포함되기도 함

<표 IV-33> 조세지출 감면방법

번호	구분	번호	구분
1	면제(Exemption)	5	환급 및 환불(Rebate and refund)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 및 영세율(Exemption and zero-rating under the GST)	6	저세율(Preferential tax rate)
3	세액 감면(Deduction)	7	부가세(Surtax)
4	세액공제(Credit)	8	과세이연(Timing preference)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감면방법”의 경우 위와 같이 8개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 법적으로 면제나 영세율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효과를 갖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other”로 분류함
 - “Surtax”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부차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질적인 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부(負)의 조세지출로 분류함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상 “담배 생산자의 수익에 대한 부가세(Surtax on the profits of tobacco manufacturers)” 항목만이 이에 해당함

〈표 IV-34〉 조세지출 도입 목적별 분류 기준

구분	번호	내용
세계 구조상의 목적	1	납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2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경감 조치
	3	과세 의무가 다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조치
	4	이중과세 방지
	5	응능부담의 원칙 실현
	6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
	7	교육비용에 대한 고려
	8	조세 평등 실현
	9	유사한 상황에서의 과세중립성 확보
	10	정부 간 조세협약 이행
	11	법령 이행
기타 목적	12	과세단위 확대 및 조정
	13	소득 지원 및 과세특례 부여
	14	저축 장려
	15	투자 유도 및 장려
	16	교육에 대한 투자 장려
	17	고용 장려
	18	경쟁력 확보 지원
	19	사업 활동 지원
	20	경제적 목적 달성
	21	사회적 목적 달성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도입 목적”은 해당 항목이 도입되거나 연장될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 목적으로 위의 21개 기준으로 분류됨

- “분류”는 조세지출 항목이 조세제도 구조상의 목적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그 이외의 목적에 의해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분류로 위에서 언급된 “도입 목적”의 상위 분류법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서 “세제 구조상의 목적”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조세지출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일부로 분류됨
 - 캐나다의 경우 기준조세체계를 가장 기본적인 세제만으로 정의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표 IV-35> 조세지출 기능별 분류 기준

번호	구분	번호	구분
1	예술 및 문화	11	가계
2	경제활동 - 농업 및 어업	12	건강
3	경제활동 - 천연자원	13	주거
4	경제활동 - 연구 및 개발	14	소득 지원
5	경제활동 - 중소기업	15	정부 간 조세협약 이행
6	경제활동 - 기타	16	국제
7	기부, 증여, 자선사업 및 비영리 사업단체	17	은퇴
8	교육	18	저축 및 투자
9	고용	19	사회
10	환경	20	기타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기능별 분류”는 보고서 분류 편의를 위하여 만든 구분법으로 정책 도입목적은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함
 - 캐나다의 경우 세수손실법을 이용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실적치와 예측치를 나누어 추정함
 - 세수손실법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징수된 세수입과 조세지출이 없었다면 징수되었을 세수입을 비교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므로 실적치 또한 추정치로 판단함

- 일반적으로 총 8년에 대한 실적치 및 예측치를 추정하며 보고서 발간년도 기준 과거 6년, 보고서 발간년도, 향후 1년에 대한 수치를 추정함
- 실적치 추정 시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수집되지 않는 경우 실적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측치로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보고서 발간년도부터 2~3년 전까지를 예측치로 판단함
 - 즉, 가장 과거부터 3~4년에 대한 추정치만 실적치로 표기하며 이후의 추정치는 모두 예측치로 표기함

□ 매년 약 208개의 항목을 위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각 항목당 보고서 약 한 페이지 분량의 개괄적 내용으로 정리 및 발표함

□ 각 항목에 대한 개괄적 분석 후 특정 사안이나 항목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함

- 매년 두세 개 정도의 평가 내용을 공개하며 특정 항목 및 주제에 대하여 분석함
 - 2017년을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A Statistical Profile of Federal Tax Expenditures, 1991~2015,” “Evaluation of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and the Children’s Arts Tax Credit,” “Evalua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을 주제로 분석함

□ 2017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개제된 세부 분석 내용 중 “A Statistical Profile of Federal Tax Expenditures, 1991~2015”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함

- 세목별 항목 수 및 조세지출 금액의 변화, GDP 대비 조세지출 비율, 규모가 가장 큰 15개 항목, 도입 목적에 따른 항목 수 및 조세지출 금액 변화 등을 분석함
- 또한, 개인 소득과 관련된 조세지출이 갖는 분배효과에 대해서도 기준조세체계에서와의 세율 비교,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수혜액 등을 분석하였음

<표 IV-36> 조세지출 도입 목적에 따른 항목 변화 분석(1991~2015)

(단위: 개, 십억캐나다달러, %, %p)

도입 목적	항목 수 (2015)	항목 수 변화 (1991~2015)	2015년 기준		1991-2015년		
			총액	총액 대비 비율	증감액	증감 비율	총액 대비 비율 변화
기타 목적	124	25	100.0	84.8	43.5	77	1.5
저축 장려	8	2	40.5	34.3	17.7	78	0.8
사회적 목적 달성	53	17	23.5	20.0	8.7	59	-1.9
투자 유도 및 장려	24	0	24.6	20.9	12.8	109	3.5
소득 지원 및 과세특례 부여	13	4	8.5	7.2	3.4	67	-0.3
고용 장려	7	3	1.6	1.3	-0.1	-7	-1.2
경제적 목적 달성	8	0	0.8	0.7	0.9	n/a	0.7
기타	10	-1	0.5	0.4	0.1	34	-0.1
세계 구조상의 목적	58	12	17.9	15.2	6.5	58	-1.5
응능부담의 원칙 실현	9	3	4.9	4.2	1.1	28	-1.5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	11	3	5.7	4.8	3.8	195	2.0
납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12	-1	0.7	0.6	-0.9	-57	-1.8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경감 조치	13	3	0.1	0.1	0.0	6	-0.1
기타	9	-1	6.4	5.5	2.6	68	-0.2
총합	182	37	117.9	100.0	50.1	74	

자료: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 여러 분석들 중 “도입 목적에 따른 항목 수 및 조세지출 금액 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위의 표에서 크게 “기타목적”과 “세계 구조상의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기타목적”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계 구조상의 목적”은 한국의 조세지출 분류상 개별 세법상의 조세지출 및 기준조세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기타목적”에 포함되는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의 약 85%를 차지하며 “세계 구조상의 목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총액 대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도와 비교하여 각 항목에서의 증감이 약간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타목적”에 포함되는 항목의 수나 조세지출 금액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현상은 변화지 않음
 - “세계 구조상의 목적”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개별 세법상의 조세지출과 유사한 성격의 항목으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분류 간 비율이 한국의 조세지출 항목에서 보이는 비율과 일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나라마다 조세지출 분류법이 다르므로 캐나다의 경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분석 등을 참고하여 일몰 부여 및 기한 선정에 대한 접근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 방안 마련에 앞서 동 분석과 같이 현재 조세지출 제도가 세법별, 기능별 분류에 따라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해당 분석을 시행하였음
 - 각 분류에서의 특징에 따라 일몰에 관한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국가를 참고로 하여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법을 구축해야 함

2) 조세지출 평가⁴⁹⁾

- 재무부는 연방조세체계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조세지출을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는 조세정책부(Tax Policy Branch)에서 맡고 있는 정기적 조세정책 개발 업무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됨
 - 재무부는 특정 항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과 협업하여 조세지출 항목을 평가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문화나 사회와 관련된 조세지출 항목 평가 시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기도 함

49) Government of Canada(2016),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및 캐나다 현지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 조세지출 평가는 일부 특수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음
 - 조세지출에 대한 일부 검토들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거나 관련 공공기관 및 외부 자문을 통해 진행되기도 함
 - 2016년도 예산안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연방재정지출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연방조세지출과 연방재정지출 모두에 대하여 이 같은 검토를 시행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감사원(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의 정부 정책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언 및 각계의 제언을 수렴하여 이루어짐

- 조세지출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침은 없으나 조세정책부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각 항목들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심층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신규 조세지출 도입 시 시행하는 분석과 같은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신규 조세지출의 도입에 대한 분석은 조세정책부에서 담당하며 이 분석은 다른 부처와 협업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하고 분석하며 정책 결정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됨
 - 관련성, 정책 개입의 필요성 및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의 일관성
 - 정책 목표 달성의 효과성
 - 경제적 효율, 시행 및 납세순응비용 등에서의 효율성
 - 재정적 영향
 - 분배 효과
 -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 고려사항(국가 경쟁력, 조세조약 등)
 - 사회적·환경적 고려사항
 - 분석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나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은 상위 기관으로 넘겨져 정책 도입에 대한 결정 시 참고가 됨
 - 일본 총무성(2011)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이 3월 예산안에서 세계개편안(정부안)을 발표하면, 이 안은 하원의 심의를 거쳐 6~7월경에 이루어지는 정책 수

립에 반영됨

- 하원에서는 해당 안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 요인, 수혜 대상, 그리고 목적 등에 대한 분석과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거의 원안대로 가결됨
- 일부 평가의 경우 조세지출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표됨
 - 일본 총무성(2011)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 조세정책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세정책을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 또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의사 결정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고 매년 3월 정부 예산안(세제개편 포함) 발표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함
 - 캐나다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평가 내용은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보다는 법인세, 소득세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연구개발 투자 감세의 국제비교, 법인세와 투자 등)
 - 평가의 내용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공개하지 않음
 - 조세지출 보고서에 개별 항목 분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2002년 이후 분석 주제가 3가지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조세지출 검토⁵⁰⁾

- 캐나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연방조세지출 중 비효율적이고 조악하게 설계된 항목들을 조세지출 검토를 통해 구분하고 삭제하여 명료한 연방조세체계를 구축을 도모할 것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캐나다 시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 검토를 실시할 것을 공표함
 - 조세지출 검토는 재무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약 150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실시됨
 - 관련 부처 및 외부 자문과 협업하기도 함

50) Government of Canada(2016), <http://www.fin.gc.ca/access/tt-it/rfte-edff-eng.asp>(캐나다 재무부 홈페이지) 및 캐나다 현지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 조세지출 검토 체계

○ 검토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됨

- 1단계: 모든 항목에 대한 기초 검토
- 2단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다음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제언
 -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매년 모든 항목에 대한 1단계 기초 검토를 진행하여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추려내므로 특정 항목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지 않음

○ 조세지출 검토는 그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 이슈들을 포함하는 공통 평가체계를 통해 진행함(재정지출에도 같은 이슈를 기반으로 한 평가체계가 사용됨)

- 관련성: 해당 과세특례가 현 연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역할, 책임 및 규칙에 부합하며 시행 가능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효과성: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함
- 형평성: 국민들이 받는 과세특례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
- 효율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최소화 또는 주어진 비용에서의 수혜 범위 최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 대체가능성: 재정지출 등 대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해당 항목이 대체 가능한 재정지출 등의 제도보다 위의 네 가지 관점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

□ 검토는 여러 분야에서 초빙된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며 이들은 검토 전반에서 분석 자문 역할을 함

□ 해당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재무부 내의 정보 이외에 주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기도 함

6. 주요국의 제도운영 요약(소결)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일몰기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되는 항목들을 Tax extender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 조사국에서 발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는 일몰 연장된 항목들의 과거 일몰 연장 연혁을 제시함
 - 일몰 연장된 항목들의 일몰 연장으로 인한 추정 비용(조세지출 규모), 항구화될 경우의 추정 비용(조세지출 규모)도 함께 제시함
 - 일몰 연장된 항목들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별로 일몰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항구화된 항목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몰기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실질적으로는 항구화된 항목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 미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해 일몰 연장 연혁, 일몰이 계속해서 연장될 경우의 추정 비용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수혜자별 검토) 일몰 있는 항목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없는 항목 중 정책상 필요가 있을 때 개별 항목별로 자체평가, 심층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기능별, 수혜자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조세지출을 기능별 또는 수혜자별로 구분하여 관련 조세지출 항목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AYGO 원칙의 엄격한 적용) 일몰 연장되는 조세지출 항목의 세수 감소 효과와 세입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국가재정법」 제87조⁵¹⁾에서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

51)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⁵²⁾에서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일몰 연장하려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규모 추정 곤란 항목이 많고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나. 일본

□ 일몰제도의 운영

- 일본의 일몰제도는 신규 도입을 위한 사전평가, 재검토 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후평가 그리고 총무성의 확인·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시 논의하여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세특별조치의 도입 및 사후 운영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도운영 원칙이 존재함
 - 첫째, 기한의 정함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폐지(sunset)함을 원칙으로 함
 - 재검토를 통하여 3년 이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치를 20년 넘게 유지해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치로 변경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52)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둘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치’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재검토를 실시함
 - 검토 결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치’ 중 더 이상 적용 상황이나 정책평가 등을 감안해 보아도 그 필요성이 명확하고, 과세의 공평원칙을 일탈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준조세체계’로 편입함
- 셋째, 조세특별조치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 기한 내에서 신설할 수 있음
- 각 부처의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평가 시에도 ‘조세특별조치 검토 지침(‘6대 점 검사항)’에 따라 정책의 ‘합리성’, ‘효과성’,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존속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운영된 조세특별조치(10년 이상) 및 적용 인원 규모가 비교적 적은 조치(두 자릿수 이하)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일몰기한의 부여는 법령으로 정하여진 완전한 규칙성을 가진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제개편 시 각 부처의 요구(신규 도입, 연장)와 총무성 등의 확인·점검, 세제심의위원회 및 의회 등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유사하게 명문화된 일몰기한 부여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신규 도입 시 3년 내에서 일몰기산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연장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일몰기산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양국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조세지출 항목의 도입 후 정책평가를 실시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도 존재함
 - 즉, 도입 후 3년 만에 일몰기산의 연장을 판단하는 경우 3년간 분석 자료로는 조세지출 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조세지출 일몰기산을 규정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없으나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음
- 세수 감소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지속가능성이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5년의 일몰기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일몰기한을 부여할 것과 영구화할 조세지출 대상을 명확히 선별하여 영구화 항목은 조세지출이 아니 기준조세체계에서 다름
- 세계(체육, 학술)행사 등 이미 기한이 정해져 있고 조세지출 지원 세목(분야)이 정해지고 과세하기 곤란한 항목은 조세지출로 분류하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계대회가 끝나면 주관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보고할 때 조세지출 규모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매년도 자체평가를 대체
- 조세지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국세청 등에서 수집하는 조세특례 관련 신고 자료가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납부 면제 항목의 경우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면대상 금액을 신고서 서식에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세지출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사후관리)

-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조세지출을 주관하는 소관부처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의 도입 및 연장,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함
 - 이후 일본은 총무성 정책평가국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진행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해 확인·점검이 진행됨
 - 조세지출 항목의 건의서 및 평가서에 대한 작성상의 충실도만을 점검할 뿐 조세지출 항목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따라서 큰 틀에서는 양국 모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단순 확인·점검 항목 이외에 일정기준(규모 30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는 심층평가라는 과정을 따로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절차가 보이지 않음
 - 반면에 일본은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에 대하여는 ‘적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지출의 성과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세청 등에 수집되는 조세 자료가 세금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축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심층적인 평가의 실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분석을 위한 자료의 축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 호주

- 호주는 조세지출을 신설할 경우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비율이 작으며, 필요에 따라 일몰기한을 삭제 또는 연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됨
 - 자연재해 등과 같은 특정 재난, 국제행사와 같이 조세지출의 존속기간이 확정적인 경우에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 조세지출의 관련 정책에 따라서 일몰기한이 다양하게 설정되며, 최근 10년에는 1년 내외로 짧게 설정하거나 5년 이상으로 크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몰기한이 제도의 존속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몰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은 일몰기한에 맞추어 제도가 폐지됨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일몰기한을 부여하고 일몰시점에 폐지하거나, 다른 법안 도입 및 발의 등을 통해 제도를 종료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일몰을 부여한 시점에서 폐지까지 존속기간은 1년이며, 제도의 성격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몰기한을 부여하지 않고 폐지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사유로 폐지됨
 - 기준조세체계로 편입
 - 관련 정부정책이 중지되면서 폐지
 - 다른 법안의 도입 및 발의로 인해 폐지
 - 장기간 감면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
- 조세지출의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반기 경제재정전망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를 통해 조세지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음
 - “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작성하여 조세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제도에 대해 검토(review) 일정 또는 일몰기한을 도입할 예정임

라. 프랑스

- 프랑스는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기한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15~2017년도 프랑스의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2009년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 중 37%가 신설 시 일몰을 부여받았으며, 2013년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가 신설 시 일몰을 부여받아 일몰을 가지고 도입되는 제도의 비율이 소폭 상승함
 - 또한 신설 시 최초로 부여하는 일몰기한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조세지출 규모가 증대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하지만 2009~2013년 사이에 일몰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들 중 약 87%가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일몰 도입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있음
 - 2009~2013년 사이에 일몰을 가지고 신설된 항목 수는 15개이며, 그 중에서 13개가 일몰이 연장되었음을 <부표 III-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은 성과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성과평가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세지출 일몰기한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함
 - 그 결과, 연속성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능별 분류의 경우 그와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 부여 비율이 낮거나, 7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진 항목 수가 많은 특징을 보임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15~2017년도 예산서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서 보다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신설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의 정확한 존속기간을 파악하여야 함
- 세목별로 일몰기한 부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가 일몰기한 부여 항목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부가세 및 기타 세금 관련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몰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음

- 부가세의 경우 관련 조세특례 제도 중 일부가 기준조세체계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프랑스의 성과관리는 재정지출 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지출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이 부여됨
 - 그 결과 같은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같은 연도에 같은 일몰기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관련 조세지출의 존폐가 결정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일몰에 변화가 생긴 항목들을 특징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징이 생긴 이유 및 일몰 변화의 명확한 규칙성 등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 즉 일몰 연장 또는 해당 항목 폐지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일몰제도 운영방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서 프랑스의 성과관리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관리포럼 웹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보고서 및 국회 회의록 등을 모두 검토한다면 프랑스의 일몰제도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마.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특정 조항에 일몰기한을 부여할 것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일몰 조항이 부여된 항목도 없음
 - 일부 특수한 조세지출의 경우, 도입 시점부터 폐지 기간을 정해두고 도입되어 정해진 시점에 폐지되었음
 - 도입 후 해당 항목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폐지되거나 더 개선된 항목으로 변경되는 항목들도 존재하였음

-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조세지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제도 투명성을 제고시킴

- 조세지출제도 분석에 있어 “조세지출 평가”와 “조세지출 검토”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음
 - “조세지출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 재정적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며 이 분석의 결과 및 정책 제언은 상위 기관으로 보고되어 정책 결정 시 참고가 되기도 함
 - “조세지출 검토”는 2016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조세지출 평가”보다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폐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
 - “조세지출 검토”는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 각 항목에 대한 기초 검토를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따로 분류함
 - 1단계 검토를 통해 걸러진 항목들에 대하여 2단계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영속될 항목에 불필요한 연구 자원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여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
 - 또한, 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항목의 존폐가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를 통해 특정 항목에 일몰을 부여하지 않아도 폐지가 필요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일몰 운영을 원칙화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규칙성이나 체계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
-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의 의무심층평가 대상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들의 사후관리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그렇지만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운영방식과 비교한다면 일몰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한다고 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사례에서 일몰제도 운영방식이나 사후관리 방법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나 몇몇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일몰(또는 폐지시점)에 맞춰 대부분 제도를 종료함
 -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항목들은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함
 - 프랑스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기한을 성과평가를 통해 부여함
- 이하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우리나라 조세특례제도의 분석, 국내외 각종 제도 현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영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제언을 정리함

1.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가. 일몰 부여여부에 대한 정책제언

1) 이상적인 정책방향

-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들은 일몰을 부여하고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조세지출제도는 개별 세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몰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개별 세법 내에서 다루는 것이 원래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전환은 조세 감면의 기득권화를 막고 조세감면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었음(윤충식 외, 2016)
 - 이는 또한 조세지출의 필수적인 특징인 폐지 가능성 측면에서도 합당한 조치임
 - 장재형·임재현(2015)에서는 조세지출의 요건으로 OECD 및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특정성, 폐지 가능성, 제도의 목적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일몰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지 가능성이 낮은 제도를 굳이 조세지출 제도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하기보다 기준조세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편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신규 조세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몰이 없는 제도들은 가능하면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만약,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관 실행에 제약이 클 경우에는 현재의 일몰 미부여 제도들을 유지하되 후술할 일몰 미부여 제도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차선이 될 것임

-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몰기한이 있었으나 나중에 기한이 사라지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일몰기한을 삭제하기보다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제도들은 처음에는 일몰기한을 적용하여 관리하려 했으나 적용기한이 다하였을 때 일몰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에도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도가 시작되었더라도 폐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기존조세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2) 현실적인 대안

- 지금까지의 논의가 가장 이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차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제도 중 일몰이 없는 제도가 68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세법으로 이 모든 제도를 이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조세특례제도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분류한다 하더라도 기존 제도들의 근거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대안도 고려해 봄
-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김학수(201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제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조세특례 항목들을 관리 실효성 측면에서 세 가지(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관리배제)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일몰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김학수(2017)에서는 조세지출제도를 구분짓는 OECD의 세 가지 기준인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항목을 관리의 실익에 따라 관리대상 제외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함
 - 관리대상 제외 항목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의 기준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부표 V-1> 참고)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지 가능성이 낮은 경우(<부표 V-1>, <부표 V-2> 참고)

-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은 이해관계자 등의 정치 개입에 따라 폐지 가능성은 낮더라도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부표 V-1>, <부표 V-3> 참고)
 -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부록으로 이와 거의 유사하게 관리 가능성의 개념으로 조세지출제도를 구조적 지출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함
- 일몰 운용에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에만 일몰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관리배제, 잠재적 관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관리배제 항목에 일몰을 부여하지 않고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에 일몰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구분이라 할 수 있으나,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에 대한 일몰 부여 여부는 다소 모호할 수 있음
 - 그러나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제도 중 개별 세법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잠재적 관리대상을 폐지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도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3단계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짐
- 조세지출 항목들 중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꾸지는 못함
 -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조세지출항목에 일몰을 부여하는 기준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관리기준과 일몰 부여기준이 동일하게 되므로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

나. 적용기한에 대한 정책제언

-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일괄 부여방식과 차등 부여방식의 두 가지 대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1) 일괄 부여방식

- 모든 조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임
 - 현행 조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에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임
 - 분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을 임의적으로 차등 부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제도에 동등하게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것인 단순 명료함
 - 적용기한을 다양하게 가져갈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괄 부여방식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일괄적으로 적용기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3년 기한으로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임
 - 적용기한을 1년 또는 2년으로 부여할 경우, 모든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임
 - 제도별로는 단기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괄 부여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모든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1, 2년의 기간은 짧게 판단됨
 - 적용기한을 4,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하기에는 그 기간이 길게 보임
 - 제도별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단기에도 실효성 여부가 판단되는 제도도 있는바, 모든 제도에 일괄 부여하기에 4년 이상은 길게 판단됨

2) 차등 부여방식

- 적용기한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제도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임

- 이때도 지나치게 다양한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이원화하여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적용기한을 길게(3년 초과) 가져가야 할 제도들은 장기 적용기한으로, 그렇지 않은 제도들은 단기 적용기한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 기본적으로는 단기 적용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적용기한을 부여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제안함
 - 기본 적용기한(단기)은 2년으로 부여함
 - 제도의 특성이나 국내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일 경우, 4년으로 적용기한을 구분하여 부여함
- 예를 들어, 고용 및 투자 분야는 특성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 관련 제도 위주로 장기 적용기한을 부여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일용직과 같은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대한 구인·구직은 개인의 생애주기와 기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지원제도가 단기간 내에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움
 - 설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도 단기간 내에 이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원정책에 기업들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함
- 조세지출 규모가 큰 제도들도 장기 적용기한 부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가 큰 제도들은 경험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문예영·신영임, 2014)
 - 일몰이 연장되는 경향이 강한 성격의 제도들에 굳이 단기 적용기한을 부여하여 반복적으로 일몰을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로 적용기한을 가져가는 편이 효율적인 일몰 배정이 될 수도 있음
 - 부가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심층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적용기한을 장기로 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제도의 적용기한이 짧을 경우, 제도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효과성 등 평가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제약이 큼

- 다만, 단기로 분류되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다소 짧을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나 이는 일몰 연장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기 적용기한인 2년이라는 시간이 제도별로 효과를 나타내기에 애매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몰 도래 시 일몰 연장이 결정될 경우 제도의 속성을 고려하여 새로 적용하는 적용기한은 단기에서 장기로, 또는 장기에서 단기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일몰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도입 당시 분류된 기간(장·단기)이 이후 부적절하게 판단될 경우, 제도 시행 후 일몰 연장할 때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즉, 시행 시에는 단기로 분류했어도 장기간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몰 연장 때 장기로 분류하여 재부여되는 적용기한을 4년으로 함

3) 공통사항

- 적용기한 부여방식(일괄 부여, 차등 부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추가로 제안함
 - 하나는 일회성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몰 의무제에 대한 것임
- 조세특례제도가 일회성 사안에 대한 지원제도일 경우에는 적용기한을 그 정책대상의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행사의 지원이나 진행이 확정된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예를 들어, 농협중앙회의 분할) 지원과 같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 정책대상의 일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함
 - 이 경우, 적용기한에 대한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정책대상의 일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적용기한에 대한 부여방식(일괄 부여, 차등 부여)에 무관하게 일몰을 강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일몰제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일몰연장이 다반사로 일어나며 일몰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임

- 지나치게 일몰연장이 일반화되면 실질적으로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만 늘어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몰 연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3회차 적용기한이 다하여 일몰이 도래하면(즉, 2회의 일몰 연장이 되면 3회 연장 없이) 자동으로 일몰되도록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함
 - 각 제도의 연장 필요성에 무관하게 무조건 3회 일몰기한이 정해지면 추가적인 연장은 인정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임
 - 앞서 일몰 부여 방식을 일괄이나 차등방식 중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3회 연장하게 되면 약 10년간의 제도 운용기간을 둔 뒤 일몰시키는 것이므로 제도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우려는 크지 않음
 - 일괄방식으로 일몰을 부여하는 경우, 3회차 일몰도래까지는 총 9년의 제도 운용기간이 지나 일몰시키는 것임
 - 차등방식에서 단기로 분류된 제도라도 3회 일몰이 연장될 정도라면 처음 연장 시에 장기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3회차 적용기한까지 총 운용기간은 10년이 됨
 - 최단기로 일몰시키는 사례는 차등방식에서 계속 단기(2년)로 분류하여 3회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로 이때는 6년의 운용기간만을 지나나 이런 제도는 장기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단기로 분류되었으므로 6년 만에 일단 일몰시켜도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됨
 - 만약 3회 이상으로 일몰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면, 먼저 일몰시킨 뒤 다시 입법절차를 거쳐 해당 제도를 재시행하면 됨
 - 일몰을 원래 부여하지 않던 제도들은 적용하지 않음
 - ‘가’항(일몰 부여 여부에 대한 정책제언)에 의해 일몰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는 제외되고 일몰을 부여하는 제도들에 한하여 적용을 제안함
 - 일몰이 없는 제도들은 이와 같은 삼진아웃방식의 강제 일몰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일몰을 의무화할 경우, 제도의 항구화를 제어할 수 있으며 재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후관리보다 더 엄격하고 확실한 제도 관리가 기대됨

2. 조세특례제도 사후관리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변화를 주는 개선방안을 고려한다고 할 때 단기 개선방안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임의심층평가로 판단됨
 - 자체평가는 소관부처 및 제도 담당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유인도 없거니와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 자체평가에서는 지금과 같은 평가보다는 부처 담당자들의 제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무심층평가는 그 대상과 평가방법론, 진행과정 등에서 이미 체계를 갖춘 상황으로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임의심층평가는 대상이나 그 평가진행 과정에서 임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사후관리가 취약한 제도들은 일몰이 없거나 일몰이 있어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이 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심층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음
 - 100개가 넘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되도록 많은 수를 포괄하여 평가하려면 임의심층평가가 의무심층평가의 모든 방법론을 준용하기에는 제약이 큼
 - 의무심층평가의 분석방법을 모두 따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증자료가 필요하나 규모가 작은 제도 등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임의심층평가는 그 대상에 따라 의무심층평가의 분석방법 중 일부는 생략 가능한 약식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 그럼에도 핵심적인 평가항목(예를 들어, 타당성 등)은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더 많은 조세특례제도가 실질적인 평가에 노출되도록 만듦

-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평가는 과감히 폐지하고 일몰 미부여 제도나 일몰 부여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제도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자체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이면서도 심층평가보다는 간략하게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회의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명시해야 함
 - 평가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 행정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므로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편이 나음

-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예를 들어, 민간 전문가 3인(학계, 연구계, 업계 등에서 적절히 선별)과 기획재정부 조문담당자 1인, 소관부처 담당자 1인 등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미리 설정한 평가 항목에 맞춰 평가를 진행함
 - 또는 조세지출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대행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평가위원회(전문연구기관, 기획재정부 조문담당자, 소관부처 담당자)를 운영하는 사례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몰 부여 제도는 매 일몰 시, 일몰 미부여 제도는 매 5년마다 평가를 진행함
 - 일몰 미부여 제도는 장기간의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 적용기한(4년)을 부여한 제도 이상의 평가주기를 가지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일몰 미부여 제도가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도 평가결과의 수준에 따라 다음 세법개정에서 바로 폐지하거나 단기 일몰을 부여한 뒤 일몰시킴
 - 단기 일몰을 부여하면 연장 없이 일몰 도래 시 폐지하도록 함
 - 이것은 호주나 프랑스에서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임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심화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심층평가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층평가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임의심층평가가 아닌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임의심층평가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강제성을 부과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무심층평가의 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 고 문 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2014.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조세지출』, 2016.
- _____,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조세지출』, 201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5.
- _____, 『규제개혁백서』, 2016.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 8. 6.
- _____, 「2015년 세법개정안」, 2015. 8. 6.
- _____, 「2016년 세법개정안」, 2016. 7. 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담금 제도개선」, 2009. 6. 24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5.
- _____, 『2016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6.
- 김영록, 『조세지출관리 및 평가체계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 김종세,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법학연구』, 제42집, 2011, pp. 25~43.
- 김필현,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0.
- 김학수,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201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7.
-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문예영·신영임, 「조세지출 일몰연장 요인분석」, 『예산정책연구』, Vol. 3, No. 2, 국회예산정책처, 2014, pp. 49~72.
-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 _____,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 법제처 보도자료,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2009. 1. 29.
-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평가』, 2015.

- _____, 『부담금평가』, 2016.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제2차 회의 자료」, 1998.
- 유한옥,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pp. 73~92.
- 윤충식·장태희·박재혁,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장재형·임재현,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1(2), 한국국제조세 협회, 2015.6, pp. 1~45.
- 채은동·이영숙,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89호, 국회 예산정책처, 2015.
- 최미희·최종국,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2.
- 하혜수·임도빈,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1998.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200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2008. 5. 27.
- _____,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2008. 12. 23.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7. 4. 26.

- Donald J. marples, *Tax Expenditures: Overview and Analysis*, 2015.
- NAO,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ax Expenditures and Tax Reliefs*, 2014.
-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미국>

- Amy Hinz and Russell Spivak, “An analysis of the tax expenditure budget,” Harvard Law School Federal budget policy seminar Briefing Paper, No. 57, 2016, pp. 1~40.
- Bill Heniff Jr,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The Senate’s “Byrd Ru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 CRS, *Tax provisions Expiring in 2016(“Tax Extenders”)*, 2016.
- GAO, *Governmen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Tax Expenditures Represent a Substantial Federal Commitment and Need to Be Reexamined*, 2005.

_____, *Tax policy: Factors for evaluating expiring tax provisions*, 2012.
_____, *Tax expenditures: Opportunities exist to use budgeting and agency performance processes to increase oversight*, 2016.
JCT, *Background information on tax expenditure analysis and historical survey of tax expenditure estimates*, 2015.
_____, *Estimates of federal tax expenditures for fiscal years 2016-2020*, 2017.
_____, *List of expiring federal tax provisions 2016-2026*, 2017.
OMB,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 2017.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Pub. L. No. 93-344, 88 Stat. 297, 1974.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가재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37&efYd=20170621#0000>, 검색일자: 2017. 7. 17.

미국 법전, <http://uscode.house.gov>, 검색일자: 2017. 6. 30.

<일본>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2016.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 정책평가 및 점검결과」, 2016.10

일본 총무성,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2015년 3월 24일 일부개정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등과 관련되는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3년 8월 5일 일부개정,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uishin.html)

<http://law.e-gov.go.jp/htmldata/S32/S32HO026.html>

<호주>

경제인연합회, 「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실효성 제고방안」, 201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 편-』, 2012.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2007. 12.
The Treasury(australia), 2005~2016 「*Tax Expenditures Statement*」, 각 연도
호주 국회(Parliament of Australia) 웹사이트
(<http://www.aph.gov.au>)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 2014.
République Français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 2015.
République Français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 2016.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Guide de la Performance*, 2015. 3.

프랑스 예산국 성과평가포럼,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검색일자:
2017. 7. 28.

프랑스 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egifrance.gouv.fr/>, 검색일자: 2017. 6. 15.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1992~2017
Government of Canada, “The Budget”, 1992~1993
Government of Canada, “The Budget Plan”, 1994~2008
Government of Canada, “Economic Statement and Budget Update”, 2000
Government of Canada, “Improving the Income Taxation of the Resource Sector in Canada”, 2003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2009~2013
Government of Canada, “The Road to Balance: Creating Jobs and opportunities”, 2014
Government of Canada, “Strong Leadership: A Balanced-budget, Low-tax Plan for Jobs, Growth and Security”, 2015
Government of Canada, “Growing the Middle Class”, 2016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The Family Tax Cut”, 2015

総務省, “租税特別措置等に係る政策評価に関する政策効果等の分析手法に関する調査研究”,
2011

캐나다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fin.gc.ca/access/tt-it/rfte-edff-eng.asp>, 검색일자: 2017. 4. 21.

부 록



<부록 I> 일본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자료

<부표 I -1> 일본의 세목별 조세지출항목 현황(2009년 6월 26일 법령공포 기준)

- ※ 1. '적용기한'란에 날짜가 존재하는 경우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으로 분류
- 2. '적용기한'란에 '없음'으로 표기된 경우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 분류
- 3. '적용기한'란에 '없음'으로 표기되고 일부에 날짜가 존재하는 경우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 분류
- 4. 위 분류는 필자가 구분한 것으로 엄밀성을 가진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법인세 관련(78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	중소기업자등 법인세율 특례 (中小企業者等の法人税率の特例)	2011.3.31
2	시험연구시행시 법인세액 특별공제 (試験研究を行っ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	없음 (주1)증가액 등에 관한 조치 2010.3.31. (개인: 2010년분) (주2)공제상한금액 등의 특례 2011.3.31. (개인 : 2011년분)
3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의 특별공제 (エネルギー需給構造改革推進設備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1.3.31. 2012.3.31
4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中小企業者等が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0.3.31
5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事業基盤強化設備を取得した場合等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1.3.31. (개인: 일부 2011년분)
6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情報基盤強化設備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0.3.31
7	공해방지시설의 특별상각(公害防止用設備の特別償却)	2011.3.31 2010.3.31(설비별 기한)
8	지진방재대책용 자산의 특별상각 (地震防災対策用資産の特別償却)	2011.3.31 2010.3.31
9	특정전기통신설비 등의 특별상각 (特定電気通信設備等の特別償却)	2010.3.31
10	자원재생활설비 등의 특별상각 (資源再生化設備等の特別償却)	2010.3.31
11	특정 지역의 산업 기계 등의 특별 상각 (特定地域における工業用機械等の特別償却)	2011.3.31. 2010.3.31
12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기계 등의 할증 상각 등 (障害者を雇用する場合の機械等の割増償却等)	2011.3.31. 2010.3.31
13	지원사업소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취득자산의 할증상각 (支援事業所取引金額が増加した場合の三年以内取得資産の割増償却)	2013.3.31.(개인: 2013년분)
14	우량 임대 주택의 할증 상각 (優良賃貸住宅の割増償却)	2010.3.31. 2011.3.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5	해외투자손실준비금 (海外投資等損失準備金)	2010.3.31
16	금속광업등 광해방지준비금 (金屬鉱業等鉱害防止準備金)	2010.3.31 (개인: 2010년분)
17	특정재해방지준비금 (特定災害防止準備金)	2011.3.31 2010.3.31
18	보험회사등의 이상위험 준비금 (保險会社等の異常危険準備金)	없음 (주)적립률특례는 2010.3.31
19	탐광 준비금 또는 해외 탐광 준비금 (探鉱準備金又は海外探鉱準備金)	2010.3.31
20	새로운 광상 탐사비용 또는 해외 신 광상과 광석비용 특별공제 (新鉱床探鉱費又は海外新鉱床課税の特別控除)	없음
21	대외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본선박에 의한 수입금액의 과세특례 (対外船舶運航事業を営む法人の日本船舶による収入金額の課税の特例)	2010.3.31 (계획인정기한)
22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農業経営基盤強化準備金)	2011.3.31
23	농지등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農用地等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24	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 (交際費等の損金不算入)	2010.3.31
25	은닉자금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使途秘匿金の支出がある場合の課税の特例)	2010.3.31
26	토지양도 등이 있는 경우 특별세율 (土地の譲渡等がある場合の特別税率)	없음 (주)적용중지조치 및 적용제외 조치는 2013.12.31
27	단기소유에 따른 토지 양도 등의 경우 특별세율 (短期所有に係る土地の譲渡等がある場合の特別税率)	없음 (주)적용중지조치 2013.12.31
28	특정기금에 대한 부담금 등 손금산입 특례 (特定の基金に対する負担金等の損金算入の特例)	없음
29	인정특정비영리 활동법인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등 특례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に対する寄附金の損金算入等の特例)	없음
30	특정지역고용 회사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特定地域雇用会社に対する寄附金の損金算入の特例)	없음
31	중소기업자 등 이외의 법인결손금 소급 의한 환급 비적용 (中小企業者等以外の法人の欠損金の繰戻しによる還付の不適用)	2010.3.31
32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 상각 자산의 취득 가액의 손금 산입의 특례 (中小企業者等の少額減価却資産の取得価額の損金算入の特例)	2010.3.31
33	특정목적회사에 관한 과세특례 (特定目的会社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34	농림 중앙 금고의 합병 등에 관한 과세특례 (農林中央金庫の合併等に係る課税の特例)	2010.3.31. 2011.3.31
35	오키나와 관광진흥지역에서 산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観光振興地域において工業用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36	오키나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에서 산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情報通信産業振興地域において工業用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37	오키나와의 산업고도화지역에서 산업용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産業高度化地域において工業用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38	오키나와의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자유무역지역에서 산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自由貿易地域及び特別自由貿易地域において工業用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39	오키나와의 금융업무특별지역에서 산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金融業務特別地区において工業用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40	오키나와의 특정중소기업이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 특별공제 (沖縄の特定中小企業者が経営革新設備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又は法人税額の特別控除)	2012.3.31
41	선박의 특별상각 (船舶の特別償却)	2011.3.31. (설비당 기한)
42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의 문화학술연구지역 문화학술 연구시설의 특별상각 (関西文化学術研究都市の文化学術研究地区における文化学術研究施設の特別償却)	2011.3.31
43	집적지역의 집적산업자산의 특별상각 (集積区域における集積産業用資産の特別償却)	2011.3.31
44	사업혁신설비 등의 특별상각 (事業革新設備等の特別償却)	2011.3.31 2012.3.31
45	공동이용시설 특별상각 (共同利用施設の特別償却)	2011.3.31
46	새로운 용도의 쌀 가공품 등 생산 설비 특별상각 (新用途米穀加工品等製造設備の特別償却)	2011.3.31
47	오키나와의 낙도 지역의 여관업용 건물 등 특별상각 (沖縄の離島地域における旅館業用建物等の特別償却)	2012.3.31
48	의료용기기 등 특별상각 (医療用機器等の特別償却)	2011.3.31
49	경영기반강화계획을 실시하는 지정 중소기업자의 기계 등에 대한 할증상각 (経営基盤強化計画を実施する指定中小企業者の機械等の割増償却)	2012.3.31
50	사업소내 탁아시설 등 할증상각 (事業所内託児施設等の割増償却)	2011.3.31
51	특정재개발건축물 등 할증상각 (特定再開発建築物等の割増償却)	2011.3.31
52	창고용 건물 등 할증상각 (倉庫用建物等の割増償却)	2011.3.31
53	직접 조림비용의 손금산입 특례 (植林費の損金算入の特例)	2011.3.31
54	특별상각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상각 한도액 계산의 특례 (特別償却不足額がある場合の償却限度額の計算の特例)	없음
55	준비금 방식에 의한 특별 상각 (準備金方式による特別償却)	없음
56	신간선 철도 대규모 개선준비금 (新幹線鉄道大規模改修準備金)	없음
57	사용한연료재처리준비금 (使用済燃料再処理準備金)	없음
58	원자력발전시설해체준비금 (原子力発電施設解体準備金)	없음
59	원자력보험 또는 지진보험에 관한 이상위험준비금 (原子力保険又は地震保険に係る異常危険準備金)	없음
60	간사이 국제공항 정비 준비금 또는 중부 국제공항 정비 준비금 (関西国際空港整備準備金又は中部国際空港整備準備金)	없음
61	특별수선준비금 (特別修繕準備金)	없음
62	사회·지역공헌준비금 (社会・地域貢献準備金)	없음
63	중소기업 등의 대손충당금 특례 (中小企業等の貸倒引当金の特例)	없음 (주)이월한도할증조치 2011.3.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64	오키나와 정보통신산업특별지구내 공인법인의 소득 특별공제 (沖縄の情報通信産業特別地区における認定法人の所得の特別控除)	2012.3.31
65	오키나와 특별자유무역지역 내 공인법인의 소득 특별공제 (沖縄の特別自由貿易地域における認定法人の所得の特別控除)	2012.3.31
66	오키나와 금융업무특별지구 내 공인법인의 소득 특별공제 (沖縄の金融業務特別地区における認定法人の所得の特別控除)	2012.3.31
67	상공조합 등 유보소득 특별공제 (商工組合等の留保所得の特別控除)	2011.3.31
68	기술연구조합의 소득계산 특례 (技術研究組合の所得計算の特例)	2011.3.31
69	특정 의료법인의 법인세율 특례 (特定の医療法人の法人税率の特例)	없음
70	전·폐업지원금 등에 관한 과세 특례 (転廃業助成金等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71	특정 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따른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등의 특례 (特定株式投資信託の収益の分配に係る受取配当等の益金不算入等の特例)	없음
72	손해보험회사의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등의 특례 (損害保険会社の受取配当等の益金不算入等の特例)	2014.3.31
73	투자 법인에 관한 과세 특례 (投資法人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74	특정 협동조합 등의 법인세율 특례 (特定の協同組合等の法人税率の特例)	없음
75	특정 목적신탁에 따른 수탁법인의 과세특례 (特定目的信託に係る受託法人の課税の特例)	없음
76	특정 투자신탁에 따른 수탁법인의 과세특례 (特定投資信託に係る受託法人の課税の特例)	없음
77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정지 (退職年金等積立金に対する法人税の課税の停止)	2011.3.31
78	적격퇴직연금계약에 따른 퇴직연금 등 적립금 금액 계산의 특례 (適格退職年金契約に係る退職年金等積立金の額の計算の特例)	없음

□ 소득세 관련(73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79	대체국채 등의 이자 등의 과세특례 (振替国債等の利子等の課税の特例)	없음
80	민간 국가외채 등 이자·발행 차금의 과세특례 (民間国外債等の利子・発行差金の課税の特例)	2010.3.31
81	상장회사 등의 개인주식공개매입의 경우 간주배당 과세의 특례 (上場会社等の自己の株式の公開買付けの場合のみない配当課税の特例)	2010.3.31
82	급여소득자 등이 주택자금 대부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 (給与所得者等が住宅資金の貸付け等を受けた場合の課税の特例)	2010.12.31
83	우량 주택지 조성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장기양도소득과세의 특례 (優良住宅地の造成等のために土地等を譲渡した場合の長期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2013.12.31
84	특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特定土地区画整理事業等のために土地等を譲渡した場合の譲渡所得の特別控除)	없음
85	특정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 (特定住宅地造成事業等のために土地等を譲渡した場合の譲渡所得の特別控除)	없음 (일부 2011.12.31)
86	특정 거주용 재산의 대체 및 교환의 경우 장기양도소득 과세특례 (特定の居住用財産の買換え及び交換の場合の長期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2009.12.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87	특정 사업용 자산의 대체 및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特定の事業用資産の買換え及び交換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개인: 2011.12.31 법인: 2011.3.31. (일부 2011.12.31)
88	승계업무의 사업계획 시행구역 내 토지 등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承継業務の事業計画の施行区域内にある土地等の交換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2009.6.30
89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취득비 특례 平成13年9月30日以前に取得した上場株式等の取得費の特例	2010.12.31
90	특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금액의 공제 등 特定中小会社が発行した株式の取得に要した金額の控除等	없음
91	특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관련된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 特定中小会社が発行した株式に係る譲渡損失の繰越控除等	없음
92	공사채 등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公社債等の譲渡等による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93	거주용 재산의 대체 등의 경우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또는 이월공제 居住用財産の買換え等の場合の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2009.12.31
94	특정 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또는 이월공제 特定居住用財産の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2009.12.31
95	올림픽 등의 성적우수자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교부되는 금품 등의 비과세 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等における成績優秀者を表彰するものとして交付される金品等の非課税	없음
96	특정 신규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特定新規中小会社が発行した株式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97	외국 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특례 外国組合員に対する課税の特例	없음
98	장애자 등의 소액예금 이자소득 등 비과세와 관련된 한도의 특례 障害者等の少額預金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に係る限度額の特例	없음
99	장애자 등의 소액공채 이자 비과세 障害者等の少額公債の利子の非課税	없음
100	근로자 재산형성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勤労者財産形成住宅貯蓄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없음
101	근로자 재산형성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勤労者財産形成年金貯蓄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없음
102	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계약에 근거한 생명보험 차익 등의 과세특례 勤労者財産形成貯蓄契約に基づく生命保険等の差益等の課税の特例	없음
103	납세준비에금 이자 비과세 納税準備預金の利子の非課税	없음
104	특별 국제금융거래계정 예금 등의 이자 비과세 特別国際金融取引勘定において経理された預金等の利子の非課税	없음
105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上場株式等に係る配当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06	확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배당소득 確定申告を要しない配当所得	없음
107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관련한 원천징수 세율 등의 특례 上場株式等の配当等に係る源泉徴収税率等の特例	없음
108	상속재산에 관련된 주식을 발행한 상장회사 등 이외의 주식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간주배당 과세특례 相続財産に係る株式をその発行した上場会社等以外の株式会社に譲渡した場合のみ없음配当課税の特例	없음
109	육우 판매에 따른 농업소득 과세특례 肉用牛の売却による農業所得の課税の特例	개인: 2011년분 법인: 2012.3.31
110	청색신고특별공제 青色申告特別控除	없음
111	사회보험 진료보수 소득계산의 특례 社会保険診療報酬の所得計算の特例	없음
112	가내수공업자 등의 사업소득 소득계산의 특례 家内労働者等の事業所得等の所得計算の特例	없음
113	특정의取締投 등이 받은 신주예약권 등의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비과세 등 特定の取締投等が受ける新株予約権等の行使による株式の取得に係る経済的利益の非課税等	없음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14	근로자가 받는 재산형성수당 등에 관한 과세특례 勤労者が受ける財産形成給付金等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115	퇴직 근로자가 변제를 받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과세특례 退職勤労者が弁済を受ける未払賃金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116	산림소득개산경비공제 山林所得の概算経費控除	없음
117	산림소득에 관련된 산림계획 특별공제 山林所得に係る森林計画特別控除	2011년분
118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장기양도소득 과세특례 居住用財産を譲渡した場合の長期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19	장기양도소득의 개산취득비 공제 長期譲渡所得の概算取得費控除	없음
120	수용 등에 따른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収用等にに伴い代替資産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121	교환 처리에 따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交換処分等に伴い資産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122	환지처분 등에 따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換地処分等に伴い資産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123	수용교환 등의 경우의 양도소득 등 특별공제 収用交換等の場合の譲渡所得等の特別控除	없음
124	농지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의 특별공제 農地保有の合理化等のために農地等を譲渡した場合の譲渡所得の特別控除	없음
125	거주용 재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居住用財産の譲渡所得の特別控除	없음
126	특정 토지 등의 장기양도소득의 특별공제 特定の土地等の長期譲渡所得の特別控除	2010.12.31
127	기성시가지 내 토지 등의 중고층내화건축물 등의 건설을 위한 대체 및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既成市街地等内にある土地等の中高層耐火建築物等の建設のための買換え及び交換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28	특정 교환 분합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했을 경우 과세특례 特定の交換分合により土地等を取得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129	대규모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조성을 위한 교환 등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大規模な住宅地等造成事業の施行区域内にある土地等の造成のための交換等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30	인증된 사업용지정적화계획 사업용지의 구역 내 토지 등의 교환 등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認定事業用地適正化計画の事業用地の区域内にある土地等の交換等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2011.3.31
131	특정 보통재산과 그 인접한 토지 등의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의 특례 特定普通財産とその隣接する土地等の交換の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32	2009년 및 2010년에 토지 등의 선행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平成二十一年及び平成二十二年に土地等の先行取得をした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2010.12.31
133	특정관리주식 등이 가치를 잃은 경우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의 과세특례 特定管理株式等が価値を失った場合の株式等に係る譲渡所得等の課税の特例	없음
134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또는 이월공제 上場株式等に係る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없음
135	상속재산에 관련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相続財産に係る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136	국가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国等に対して財産を寄附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の非課税	없음
137	국가등에 대해 중요 문화재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国等に対して重要文化財等を譲渡した場合の譲渡所得の課税の特例	없음 (일부 2012.12.31)
138	물납에 의한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物納による譲渡所得等の非課税	없음
139	주택차입금 등을 가진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공제 住宅借入金等を有する場合の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3.12.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40	특정의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차입금 등을 가진 경우의 소득세 특별공제의 공제액에 관한 특례 特定の増改築等に係る住宅借入金等を有する場合の所得税額の特別控除の控除額に係る特例	2013.12.31
141	전국건강보험협회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받는 부가적 급부 등에 관련된 과세특례 全国健康保険協会が管掌する健康保険等の被保険者が受ける付加的給付等に係る課税の特例	없음
142	선물거래의 차금 등 결제에 관련된 손실 이월공제 先物取引の差金等決済に係る損失の繰越控除	없음
143	공적연금 등 공제 최저공제금액 등의 특례 公的年金等控除の最低控除額等の特例	없음
144	동거 특별장애자 또는 노부모 등에 관련된 부양공제 특례 同居の特別障害者又は老親等に係る扶養控除等の特例	없음
145	미망인 공제 특례 寡婦控除の特例	없음
146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한 경우의 기부금공제 특례 또는 소득세액의 특별공제 政治活動に関する寄附をした場合の寄附金控除の特例又は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4.12.31
147	기존 주택의 내진 개보수를 할 경우 소득세액의 특별공제 既存住宅の耐震改修をした場合の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3.12.31
148	기존 주택에 관한 특정 개보수 공사를 한 경우 소득세액 특별공제 既存住宅に係る特定の改修工事をした場合の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0.12.31
149	인정된 장기우량주택신축 등을 했을 경우 소득세액 특별공제 認定長期優良住宅の新築等をした場合の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1.12.31
150	전자증명서를 갖는 개인의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고에 관한 소득세액 특별공제 電子証明書を有する個人の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申告に係る所得税額の特別控除	2010년분
151	외국금융기관 등의 채권 현선거래에 관련된 이자 과세특례 外国金融機関等の債券現先取引に係る利子の課税の特例	없음

□ 상속세 관련(13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52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금의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小規模宅地等についての相続税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53	직계존속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금의 비과세 直系尊属から住宅取得等資金の贈与を受けた場合の贈与税の非課税	2010.12.31
154	주택취득 등 자금의 증여에 관련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특례 住宅取得等資金の贈与に係る相続時精算課税制度の特例	2009.12.31
155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 유예 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贈与税の納税猶予	없음
156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 유예 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相続税の納税猶予	없음
157	비상장 주식 등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금의 납세 유예 非上場株式等の贈与者が死亡した場合の相続税の納税猶予	없음
158	특정 계획산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特定計画山林についての相続税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59	국가 등에 대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의 상속세금의 비과세 등 国等に対して相続財産を贈与した場合等の相続税の非課税等	없음
160	증여세 기초공제 특례 贈与税の基礎控除の特例	없음
161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납세유예 農地等を贈与した場合の贈与税の納税猶予	없음
162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 등 農地等についての相続税納税猶予等	없음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63	상속세 납세 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의 특정 대출 특례 相続税の納税猶予を適用している場合の特定貸付けの特例	없음
164	특정 대부한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특례 特定貸付けを行った農地又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の相続税の課税特例	없음

□ 지가세 관련(17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65	지가세 과세의 정지 地価税の課税の停止	없음
166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 전액 출자에 관련된 회사의 토지 등 과세특례 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の全額出資に係る会社の土地等の課税の特例	없음
167	건물이 국가의 시설 등으로 관용되고 있는 경우의 토지 등 비과세 建物が国の施設等として慣用されている場合の土地等の非課税	없음
168	사업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등 비과세 事業協同組合等が中小企業者の集団化等のために有する土地等の非課税	없음
169	특정 도시계획 주차장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등의 비과세 特定の都市計画駐車場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の非課税	없음
170	민간 도시개발추진기구가 가지는 토지 등의 비과세 民間都市開発推進機構が有する土地等の非課税	2009년분
171	우량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련된 공급예정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優良な住宅地の造成事業等に係る供給予定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2	여객 회사가 가지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旅客會社が有す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2001년분
173	장애자를 고용하는 사업소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障害者を雇用する事業所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4	목재시장 등의 용도에 제공된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木材市場等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5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등의 용도에 제공된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의 계산의 특례 特別避難階段の附室等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6	특정부설의무주차시설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特定の附置義務駐車施設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7	환경시설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環境施設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8	공개공지 등에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公開空地等に係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79	특정지구시설 등의 용도에 제공된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特定の地区施設等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80	특정방송시설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의 특례 特定の放送用施設の用に供されている土地等についての課税価格の計算の特例	없음
181	농업협동조합 등이 합병한 경우 과세특례 農業協同組合等が合併した場合の課税の特例	없음

□ 등록·면허세 관련(26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182	특정인증장기우량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세율 경감 特定認定長期優良住宅の所有権の保存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0.3.31
183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등이 받을 권리고환수속개시의 등기부 면세 マンション建替事業の施行者等が受ける権利交換手続開始の登記簿の免税	2010.3.31
184	농지보유 합리화 법인이 농업용지를 취득한 경우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의 경감 農地保有合理化法人が農用地を取得した場合等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2011.3.31
185	어업협동조합이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세율 경감 漁業協同組合が漁業協同組合連合会から権利義務の承継により不動産等を取得した場合の所有権の移転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0.3.31
186	인증사업 재구축계획 등에 근거하는 등기 세율 경감 認定事業再構築計画等に基づき行う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187	인증 경영기반강화계획 등에 근거하는 등기 세율 경감 認定経営基盤強化計画等に基づき行う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188	농림중앙금고 등이 실시하는 조직 재편성에 의해서 하는 등기 세율 경감 農林中央金庫等が行う組織再編成によってする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189	간사이 국제공항주식회사 등의 등기의 면세 関西国際空港株式会社等の登記の免税	2010.3.31
190	국제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세율 경감 国際船舶の所有権の保存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0.3.31
191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교환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 경감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から交換により土地を取得した場合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09.6.30
192	특정목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근거한 특정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 경감 特定目的会社が資産流動化計画に基づき特定不動産を取得した場合等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193	인증 철도사업재구축실시계획에 근거한 철도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 경감 認定鉄道事業再構築実施計画に基づき鉄道施設を取得した場合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10.3.31
194	독립행정법인 등의 권리 또는 자산의 승계에 따른 등기 등의 면세 独立行政法人等の権利又は資産の承継に伴う登記等の免税	없음 (일부2013.11.30)
195	토지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세율의 경감 土地の売買による所有権の移転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3.3.31
196	주택용 가옥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의 경감 住宅用家屋の所有権の保存登記の税率の軽減	2011.3.31
197	주택용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의 경감 住宅用家屋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11.3.31
198	주택취득자금대출 등에 관련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세율 경감 住宅取得資金の貸付け等に係る抵当権の設定登記の税率の軽減	2011.3.31
199	이용권 설정 등 촉진사업으로 농업용지 등을 취득했을 경우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 경감 利用権設定等促進事業により農用地等を取得した場合等の所有権の移転登記の税率の軽減	2011.3.31
200	신용보증협회 등이 받는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세율 경감 信用保証協会等が受ける抵当権の設定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1.3.31
201	권고에 의해서 하는 등기의 세율 경감 勧告等によってする登記の税率の軽減	없음 (일부2011.3.31)
202	회사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세율 경감 会社分割に伴う不動産の所有権の移転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2.3.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203	인증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등에 기초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세율 경감 認定民間都市再生事業計画等に基づき建築物を建築した場合等の所有権の保存登記等の税率の軽減	2011.3.31
204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에서 교환에 의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의 등기의 면세 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から交換により建物を取得した場合の登記の免税	2011. 12.31
205	철도사업자가 취득한 특정철도시설에 관련된 토지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면세 鉄道事業者が取得した特定の鉄道施設に係る土地等の所有権の移轉登記等の免税	2016.3.31
206	동산양도등기 등에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세율 특례 動産讓渡登記等に係る登録免許税の税率の特例	없음
207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특별공제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の申請の場合の登録免許税額の特別控除	2011.3.31

□ 간접세 관련(34개 항목)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208	입국자가 수입하는 위스키 등에 관한 주세의 세율 특례 入国者が輸入するウイスキー等に係る酒税の税率の特例	2010.3.31
209	입국자가 수입하는 권련담배의 담배세금의 세율 특례 入国者が輸入する紙巻たばこのたばこ税の税率の特例	2010.3.31
210	입국자가 수입하는 위스키 등 또는 권련담배의 소비세 비과세 入国者が輸入するウイスキー等又は紙巻たばこの消費税の非課税	2010.3.31
211	맥주 관련 주세 세율 특례 ビールに係る酒税の税率の特例	2010.3.31
212	인수와 관련된 석유제품 등의 석유석탄세 면세 引取りに係る石油製品等の石油石炭税の免税	2010.3.31
213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용 특정휘발유 등에 관련된 석유석탄세 환급 石油化学製品の原料用特定揮発油等に係る石油石炭税の還付	2010.3.31
214	특정 중유를 농림어업용으로 제공할 경우 석유석탄세 환급 特定の重油を農林漁業の用に供した場合の石油石炭税の還付	2010.3.31
215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에 소비되는 휘발유의 면세 등 石油化学製品の製造のため消費される揮発油の免税等	없음
216	자동차 중량세의 면세 등 自動車重量税の免税等	2012.4.30
217	외항선 등에 싣고 물품의 양도 등에 관련된 소비세 면세 外航船等に積み込む物品の譲渡等に係る消費税の免税	없음
218	외국공관 등에 대한 과세자산양도 등에 관련된 소비세 면세 外国公館等に対する課税資産の譲渡等に係る消費税の免税	없음
219	해군판매소 등에 대한 물품양도에 관련된 소비세 면세 海軍販売所等に対する物品の譲渡に係る消費税の免税	없음
220	청주 등에 관한 주세율 특례 清酒等に係る酒税の税率の特例	2013.3.31
221	저알코올분의 증류주류 등에 관한 주세율 특례 低アルコール分の蒸留酒類等に係る酒税の税率の特例	없음
222	외항선 등으로 싣는 주류의 면세 外航船等に積み込む酒類の免税	없음
223	주류의 간주제조의 규정적용 제외의 특례 酒類のみ製造の規定の適用除外の特例	없음
224	외항선 등에 싣는 제조 담배의 면세 外航船等に積み込む製造たばこの免税	없음
225	바이오 에탄올 등 휘발유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バイオエタノール等揮発油に係る課税標準の特例	2013.3.31
226	휘발유세 및 지방휘발유세 세율의 특례 揮発油税及び地方揮発油税の税率の特例	2018.3.31

번호	조치 및 시책명	적용기한
227	반출과 관련된 휘발유의 특정용도 면세 移出に係る揮発油の特定用途免税	2018.3.31
228	인수와 관련된 휘발유의 특정용도 면세 引取りに係る揮発油の特定用途免税	2018.3.31
229	반출과 관련된 간주(대체, 유사)휘발유의 특정용도 면세 移出に係るみ없음揮発油の特定用途免税	없음
230	인수와 관련된 간주(대체, 유사)휘발유의 특정용도 면세 引取りに係るみ없음揮発油の特定用途免税	없음
231	반출과 관련된 휘발유의 외국공관용 면세 移出に係る揮発油の外国公館等用免税	없음
232	인수에 관한 특정석탄의 석유석탄세 면세 引取りに係る特定石炭の石油石炭税の免税	2011.3.31
233	인수와 관련된 오키나와 발전용 특정석탄의 석유석탄세 면세 引取りに係る沖縄発電用特定石炭の石油石炭税の免税	2012.3.31
234	석유 아스팔트 등에 관련된 석유석탄세 환급 石油アスファルト等に係る石油石炭税の還付	2011.3.31
235	오키나와 노선 항공기에 실는 항공기연료 관련 항공기연료세 세율의 특례 沖縄路線航空機に積み込まれる航空機燃料に係る航空機燃料税の税率の特例	2012.3.31
236	특정도서 노선 항공기에 실는 항공기연료 관련 항공기연료세 세율의 특례 特定離島路線航空機に積み込まれる航空機に燃料に係る航空機燃料税の税率の特例	2011.3.31
237	자동차 중량세율의 특례 自動車重量税率の特例	2018.4.30
238	사용제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중량세의 환급 使用済自動車に係る自動車重量税の還付	없음
239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계약서 등에 관련된 인지세 세율의 특례 不動産の譲渡に関する契約書等に係る印紙税の税率の特例	2011.3.31
240	도도부현이 수행하는 고등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都道府県が行う高等学校の生徒に対する学資としての資金の貸付けに係る消費貸借契約書等の印紙税の非課税	없음
241	납세준비에금통장의 인지세 비과세 納税準備預金通帳の印紙税の非課税	없음

9	유효성 등	1	적용대상자 수	
		2	세수감소액	
		3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	《효과》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10	상당성	1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	
		2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	
		3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11	관련 전문가의 의견			
12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실시 시기			

<기재요령>

I. 조세특별조치 관련 정책의 사전평가서

조세특별조치의 신설·확대 또는 연장 요청을 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 양식에 따라 사전평가서를 작성함. 또한 각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정책세제조치 검토지침(6대 점거사항)’에서 도입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조치(10년 이상)와 적용 대상자 수가 비교적 적은 조치(두 자리수 이하) 등에 대해서 특히 엄격하게 판단할 것에 유의할 것

1. 「정책평가 대상으로서 조세특별조치의 명칭」에는 정책평가 대상인 조세특별조치의 명칭을 기재
2. 「대상세목」에는 이하의 내용을 기재
 - 정책평가 대상 세목
 - 세목마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86호)

- 제9조 및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년 정령 제 323호)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정하는 정책평가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표기
- 정책평가 대상인 조세특별조치 도입 요청에 대해서, 재무성 주세국(主稅局)에 제출하는 '세제개정 요망 사항 일람표' 및 총무성 자치세무국에 제출하는 '지방세제 개정 요망 사항 총괄표'의 요청 번호 기재
 - 해당 조세특별조치의 신설, 확대, 연장 여부 구별하여 표기
3. 「조세특별조치 등의 내용」 난에는 각 항목을 다음에 따라 기재
- 《내용》에는 조세특별조치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
 - 기재내용으로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대상자(대상사업분야) 및 특례내용(예: 대상시설 등의 취득가액의 〇%의 특별상각 또는 〇%의 세액공제 등)을 기재함
 - 《관련조항》에는 조세특별조치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의 조항을 기재
4. 「담당부서명」에는 정책평가를 담당할 담당 과 및 실 등의 이름을 기재
5. 「평가 실시시기 및 분석대상 기간」은 정책평가를 실시한 시기 및 분석대상 기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6. 「조세특별조치의 설립연도 및 개정경위」에는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에 따른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설립연도 및 과거의 개정경위를 기재
 - 또한, 개정경위는 개정연도와 함께 개정내용도 간결하게 기재
7. 「적용 또는 연장기간」에는 요청내용에 따른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기재
- 8-① '정책목적 및 근거'는 다음에 따라 기재
-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는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목적 및 근거' >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의 법령, 내각의 결정 등 근거(명칭, 연월일 및 규정의 내용발취 요약)를 구체적으로 작성
- 8-② '정책체계에서 정책목적의 위상'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기재

- 해당 정책목적이 정책체계 내에 명기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기재하고, 정책체계 내에 직접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책체계 내에 나타나는 어떤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술함
- 8-③ 《달성목표 및 실현시 정책목적에 대한 기여도》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
-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에 따라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달성 목표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또한 해당 목표의 측정지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목적에 대한 조세특별조치의 달성목표 실현시 기여도》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 8-③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기재한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목표달성의 실현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양자간의 관계(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9-① ‘적용대상자 수’에는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과거의 적용대상자 수 및 적용금액(과거실적) 또는 장래의 적용대상자 수 및 적용금액(미래추정)을 연도별로 기재
- 조세특별조치의 신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추정치를 기재하고,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추정치와 과거의 실적을 함께 기재(과거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집계된 수치로 작성)
 - 산정근거는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의 공표지침(2010년 5월 28일 정책평가 각 부처 연락회의 승인(이하 ‘정보공개지침’))’에 의거 공개(평가서에 첨부하여 공개 가능)
 - 또한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자 수나 적용금액이 예상 외로 미소하거나, 예상치 않게 특정 대상에게만 치우쳐 있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여주어야 함
- 9-② ‘세수감소액’에는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결과 감소되는 세액을 연도별로 기재
- 조세특별조치의 신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의 추정치를 기재하고,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 추정치 외에 과거 실적치도 기재(과거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집계된 수치로 작성)

-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지침’에 근거하여 공개(평가서에 첨부하여 공개 가능)

9-③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는 다음에 따라 기재

- 《효과》 위 8-①에 기재한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당해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또는 달성하였는가?)에 대해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또한, 상기 8-③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목표달성 상황을 상기 8-③에 기재한 측정지표에 의해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파악한 후 조세특별조치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재
 - 이때 조세특별조치의 신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효과는 추정에 의한 것을 기재
 -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추계 이외에 과거의 실적을 파악하여 기재
 - 조세특별조치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와 확대 또는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목표(가장 최근의 신설, 확대 또는 연장 요구 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재
 - 또한 기대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목표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위 9-①, 9-② 및 9-③의 《효과》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세수감소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면 그 이유를 기재
 - 이 경우 상기 9-③의 《효과》란에 기재된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당해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다양한 파급효과 파악에도 노력하여야 함
 - 동시에 효과의 발생 여부와 정도가 지역마다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역별 효과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기재하여 공개
 - 또한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실시한 기간 동안 해당 특별조치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10-①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정책목적 실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해당 조세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10-②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슷한 정책 목적을 가진 여타의 지원조치와 의무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이러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조세특별조치와 여타 지원조치 및 의무사항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
- 10-③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란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국세에 연동하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가 각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관련 전문가 의견’ 란에는 ‘조세특별조치에 관한 정책평가의 내용에 대한 심의회’ 등에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 경우 그 요점을 기재
12.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실시 시기’ 란에는 조세특별조치의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실시한 시기를 기재
-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총무성 행정평가국에 의한 확인·점검이 실시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번호를 기재

9	유효성 등	1	적용대상자 수	
		2	세수감소액	
		3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	《효과》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10	상당성	1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	
		2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	
		3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11	관련 전문가의 의견			
12	평가결과의 반영방향			
13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 평가의 실시 시기			

<기재요령>

II.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의 사후 평가서

조세특별조치에 관한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 양식에 따라 사후평가서를 작성함. 또한 각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정책세제조치 검토지침(6대 점검사항)’에서 도입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조치(10년 이상)와 적용 대상자 수가 비교적 적은 조치(두 자리수 이하) 등에 대해서 특히 엄격하게 판단할 것에 유의 할 것

1. 「정책평가 대상으로서 조세특별조치의 명칭」에는 정책평가 대상인 조세특별조치의 명칭을 기재
2. 「대상세목」에는 이하의 내용을 기재

- 정책평가 대상 세목
- 세목에 대해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2005년 12월 16일 내각 회의 결정) 1.5에서 규정하는 정책평가의 의무화 대상 또는 대상 외의 것
- 3. 「조세특별조치 등의 내용」 난에는 각 항목을 다음에 따라 기재
 - 《내용》에는 조세특별조치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
 - 기재내용으로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대상자(대상사업분야) 및 특례내용(예: 대상시설 등의 취득가액의 〇%의 특별상각 또는 〇%의 세액공제 등)을 기재함
 - 《관련조항》에는 조세특별조치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의 조항을 기재
- 4. 「담당부서명」에는 정책평가를 담당한 담당 과 및 실 등의 이름을 기재
- 5. 「평가 실시시기 및 분석대상 기간」은 정책평가를 실시한 시기 및 분석대상 기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6. 「조세특별조치의 설립연도 및 개정경위」에는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설립연도 및 과거의 개정경위를 기재
 - 또한, 개정경위는 개정연도와 함께 개정내용도 간결하게 기재
- 7. 「적용기간」에는 요청내용에 따른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기간을 기재
- 8-① ‘정책목적 및 근거’는 다음에 따라 기재
 -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는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목적 및 근거’ >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의 법령, 내각의 결정 등 근거(명칭, 연월일 및 규정의 내용발취 요약)를 구체적으로 작성
- 8-② ‘정책체계에서 정책목적의 위상’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기재
 - 해당 정책목적이 정책체계 내에 명기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기재하고, 정책체계 내에 직접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책체계 내에 나타나는 어떤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술함
- 8-③ 《달성목표 및 실현시 정책목적에 대한 기여도》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

-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에 따라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달성 목표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또한 해당 목표의 측정지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목적에 대한 조세특별조치의 달성목표 실현시 기여도》에는 위 8-①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기재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 8-③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기재한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목표달성의 실현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양자간의 관계(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9-① ‘적용대상자 수’에는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과거의 적용대상자 수 및 적용금액(과거실적)을 연도별로 기재
- 과거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집계된 수치로 작성
 - 산정근거는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의 공표지침’에 의거 공개(평가서에 첨부하여 공개 가능)
 - 또한 적용대상자 수나 적용금액이 예상 외로 미소하거나, 예상치 않게 특정 대상에게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여주어야 함
- 9-② ‘세수감소액’에는 당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결과 감소되는 세액(과거 실적)을 연도별로 기재
- 과거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집계된 수치로 작성
 -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지침’에 근거하여 공개(평가서에 첨부하여 공개 가능)
- 9-③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는 다음에 따라 기재
- 《효과》 위 8-①에 기재한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당해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어떻게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또한, 상기 8-③의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목표달성 상황을 상기 8-③에 기재한 측정지표에 의해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파악한 후 조세특별조치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재
 - 기대하는 목표(가장 최근의 신설, 확대 또는 연장 요구 시 상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재
 - 또한 기대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목표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

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위 9-①, 9-② 및 9-③의 《효과》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세수감소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면 그 이유를 기재

- 이 경우 상기 9-③의 《효과》란에 기재된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당해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다양한 파급효과 파악에도 노력하여야 함
- 동시에 효과의 발생 여부와 정도가 지역마다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역별 효과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기재하여 공개
- 또한 이전에 실시한 기간 동안 해당 특별조치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0-①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해당 조세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10-②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슷한 정책목적 가진 여타의 지원조치와 의무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이러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에 당해 조세특별조치와 여타 지원조치 및 의무사항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

10-③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란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특별조치(국세에 연동하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가 각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관련 전문가 의견’란에는 ‘조세특별조치에 관한 정책평가의 내용에 대한 심의회’ 등에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 경우 그 요점을 기재

12. ‘평가결과의 반영방향’란에는 사후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조세특별조치의 본래 의도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13.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실시 시기’란에는 조세특별조치의 확대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실시한 시기를 기재

-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총무성 행정평가국에 의한 확인·점검이 실시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번호를 기재

<부표 I -3> 총무성 점검 결과표 예시

※ 경제산업성의 ‘소득확대 촉진세제의 재검토(経産10, 所得擴大促進税制の見直し)’ 항목에 대한 총무성의 점검 결과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10가지 점검 항목별로 소개함(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총무성의 점검 결과를 번역한 것임)

① 달성목표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개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의 선순환 실현’이라는 달성 목표에 대해 달성해야 할 수준이 정량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그 적절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설명]</p> <p>① 달성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GDP 명목성장률 3%(정부목표)에 맞춘 임금인상 추진</p>
<p>[점검 결과]</p> <p>①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음</p>

② 과거 적용건수 등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과거 적용건수(소득세)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p> <p>② 과거 적용건수(2013년도와 2015년도의 법인세)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p> <p>③ 과거 적용건수(2014년도의 법인세)에 대해 ‘78,261건’을 제시하였으나, 산정 근거(산정시 이용한 수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다음과 같음</p> <p><소득세></p> <p>2014년 적용자수: 10,186명</p> <p>※ 2014년은 국세청 ‘소득세신고 표본조사’에 따르면 실적규모는 조사 중</p> <p>※ 2015, 2016, 2017년도는 조사 중</p> <p>② 다음과 같음</p> <p><법인세></p> <p>2013년도 적용실적: 10,874건</p> <p style="padding-left: 20px;">(내역) 대기업: 1,009건, 중소기업: 9,865건</p> <p>2014년도 적용실적: 78,261건</p> <p style="padding-left: 20px;">(내역) 대기업: 4,075건, 중소기업: 74,186건</p> <p>2015년도 적용실적: 110,104건 (미공개분으로 추정치)</p> <p style="padding-left: 20px;">(내역) 대기업: 8,542건, 중소기업: 101,562건</p>

<p><지방세></p> <p>※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조사 중</p> <p>③ 2013년도, 2014년도는 재무부 ‘적용실태조사보고서’의 실제값, 2015년도는 동 보고서 미공개분으로 추정치임</p>
<p>[점검 결과]</p> <p>①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과거 적용건수(2013년도와 2015년도 소득세)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p> <p>②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과거 적용건수(2015년도 법인세)에 대해 ‘추정치는 기업표본조사 × 세제이용기업비율(설문)에 의해 산출’이라는 설명에서 산정근거(산정에 이용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p>③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됨</p>

③ 소액의 조세지출규모·편향된 적용대상의 정도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없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p>
<p>[점검 결과]</p> <p>없음</p>

④ 미래 적용건수 등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미래 적용건수 및 적용금액 규모의 예측치가 제시되지 않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다음과 같음</p> <p>2016년 적용 예정: 118,133건(추정치)</p> <p>※ 2016년도는 해당보고서 미공개분으로 추계치임</p> <p>※ 2017년도는 정밀 조사 중</p>
<p>[점검 결과]</p> <p>①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소득세의 미래 적용건수 및 2017년도 법인세의 미래 적용건수 및 실적규모의 예측치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p>또한 2016년도의 법인세에 미래 적용건수의 경우 ‘추정치는 기업표본조사 × 세제이용기업 비율(설문)에 의해 산출’이라는 설명에서 산정근거(산정에 이용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⑤ 과거 세수감소액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과거 세수감소액이 세목별로 파악되지 않음</p> <p>② 과거 세수감소액(2013년도와 2015년도)이 파악되지 않음</p> <p>③ 과거 세수감소액(2014년도 법인세)이 ‘2,478억엔’이라고 제시하였지만 산정 근거(산정시 이용한 수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다음과 같음</p> <p><소득세></p> <p>※ 조사 중임</p> <p><지방세></p> <p>○ 법인주민세(중소기업자 등에만 적용): 2013년도 실적: 23억엔, 2014년도 실적: 137억엔</p> <p>② 다음과 같음</p> <p>2013년도 법인세 실적: 420억엔 (내역) 대기업: 288억엔, 중소기업: 132억엔</p> <p>2014년도 법인세 실적: 2,478억엔 (내역) 대기업: 1,688억엔, 중소기업: 790억엔</p> <p>2015년도 세수감소액: 2,517억엔(미공개분으로 추정치임) (내역) 대기업: 2,064억엔, 중소기업: 452억엔</p> <p>※ 2013·2014년도는 재무성 ‘적용실태조사보고서’의 실적치, 2015년도는 해당 보고서의 미공개분으로 추정치임</p> <p>③ 2013년도, 2014년도는 재무성 ‘적용실태조사보고서’의 실적치</p>
<p>[검사 결과]</p> <p>① 보충 설명에 따라 과거 세수감소액(소득세)이 파악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p> <p>②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과거 세수감소액(2015년도 법인세)에 대해 ‘추정치는 업체당 직원 급여 등 지급 증가액 × 10%(중소기업 20%) × 세액공제 적용 법인수에 따라 계산’이라는 설명에서 산정근거(산정에 이용한 수치)을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p>③ 보충설명을 통해 분석·설명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됨</p>

⑥ 미래의 수입 감소 금액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미래 세수감소 규모를 예측하지 않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2016년도 예상 규모: 2,842억엔</p> <p>※ 2016년도는 해당 보고서 미공개분으로 추정치임</p> <p>※ 2017년도는 조사 중</p>
<p>[검사 결과]</p> <p>①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소득세의 미래 적용건수 및 2017년도 법인세의 미래 적용건수 및 실적규모의 예측치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p>미래 세수감소액(2016년도 법인세)에 대해 ‘추정치는 업체당 고용관리자 급여 등 지급 증가액 × 10%(중소기업 20%) × 세액공제 적용 법인수에 따라 계산’이라는 설명에서 산정근거(산정에 이용한 수치)을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⑦ 과거 효과

<p>[분석·설명 내용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과거 효과에 대해 ‘많은 기업에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량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미파악에 대한 적절한 이유도 밝히지 않음</p> <p>② ‘개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의 선순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본 특례조치에 의해 근로자의 급여가 증가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음</p> <p>따라서 본 특례조치로 인한 기업 근로자의 소득수준 추이 또는 전체 소득수준 상승에 대한 기여도 등과 같은 더 적절한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 설명]</p> <p>① 많은 기업에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계 생활투쟁에 의한 임금인상률(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연합) 조사) 2014년 2.07%(중소기업 1.76%) 2015년 2.20%(중소기업 1.88%) 2016년 2.00%(중소기업 1.81%) <p>※ 임금인상률에는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세제조치만의 효과로 측정된 것은 아님</p> <p>② 과거 효과에 있어 임금 인상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세제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인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기업에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 달성목표인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p>
<p>[검사 결과]</p> <p>① 보충 설명을 통해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임금인상은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제조치로 인한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p> <p>경제상황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본 조세특별조치만의 직접적인 효과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p> <p>②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p>

⑧ 미래의 효과

<p>[분석·설명 내용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미래 효과에 대해 ‘많은 기업에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량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미파악에 대한 적절한 이유도 밝히지 않음</p> <p>② ‘개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의 선순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본 특례조치에 의해 근로자의 급여가 증가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음</p> <p>따라서 본 특례조치로 인한 기업 근로자의 소득수준 추이 또는 전체 소득수준 상승에 대한 기여도 등과 같은 더 적절한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많은 기업에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짐 ○ 춘계 생활투쟁에 의한 임금인상률(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연합) 조사) 2014년 2.07% (중소기업 1.76%) 2015년 2.20% (중소기업 1.88%) 2016년 2.00% (중소기업 1.81%) ※ 임금인상률에는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세제조치만의 효과로 측정된 것은 아니나 임금인상은 장래에도 장기적으로 대처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세제조치에 의해 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필요가 있음</p> <p>② 미래 효과와 관련하여 본 세제개정 요구에 의해 더욱 임금인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노동분배율 추이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기업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함. 따라서 본 세제개정 요구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한층 더 임금 인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p>
<p>[점검 결과]</p> <p>① 보충 설명에 의한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 할 점의 일부가 해소되었지만, 장래 효과(2017년도)를 예측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임금인상은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세제조치로 인한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 경제상황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본 조세특별조치만의 직접적인 효과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사후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도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p> <p>②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음</p>

⑨ 과거 세수감소 효과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과거의 세수감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점검 항목인 ⑤과거 세수감소 규모 및 ⑦과거 효과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한 점이 있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⑤번 및 ⑦번 점검 항목에 대해 정량적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정함</p>
<p>[검사 결과]</p> <p>①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음</p>

⑩ 미래 세수 감소 효과

<p>[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p> <p>① 미래의 세수감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점검 항목인 ⑥미래 세수감소액 및 ⑧미래 효과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한 점이 있음</p>
<p>[경제산업성의 보충(추가) 설명]</p> <p>① 점검 항목 ⑥번 및 ⑧번에 대해 정량적 효과 나타내는 수치로 수정함</p>
<p>[검사 결과]</p> <p>① 분석·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음</p>

<부표 1-4> 우리나라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보고서 예시

□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 다음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조세지출 항목의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예로 든 것임.

※ 동 평가서는 확인·점검결과 점수 33점에 ‘보통’의 평가를 받은 항목임

평가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예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조세법 제87조의6)			
평가지표	부처 평가	확인·점검 의견	점검 결과
계(100)	100		33
1-1. 목적의 명확성 (3점)	3		3
1-2. 특정상황과 인과관계 (4점)	4		4
1-3. 부처 정책방향·목표 연계성 (3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정책방향이 조세지출 목적에 나타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연계성이 부족함 - 당해 조세지출에 대한 부처의 정책방향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 지원인지 경계가 모호함 	1
2-1. 성과지표 설정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성과지표가 본 조세지출의 도입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함 	5
2-2. 목표치 설정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 - 단순 공급계획으로 조세지원과의 연관성 의문 	5
3-1. 정책대상자 파악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대상자의 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 조세지출의 대상이 개인투자자이나 임대주택 관련 사업자도 정책대상자로 포함시킴 	5

평가지표	부처 평가	확인·점검 의견	점검 결과
3-2. 정책목적에 맞는 수혜자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조세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에서 ‘현재 임대주택리츠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없음’을 제시함 	0
4. 목적 달성도 (20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도를 제시하지 않음 	0
5. 정책효과 (20점)	20	<p>(효율성/형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이 실제 특정부문 또는 경제변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규범적인 예상 효과만을 제시함.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함 - 효율성: 운용기간이 5년 이상 되었음에도 실제 실적에 의한 효과보다는 선행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효과로 제시함 - 형평성: 리츠 공모 활성화에 따른 소득 분배에 기여함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도입 당시 소수의견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자금의 통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함.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도 필요함 	10
6. 세출예산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보완 또는 대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II-5-일반재정(1)의 단위사업으로 임대주택리츠출자(409)가 존재함(사업내용: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임대주택 리츠에 도시주택기금 재원으로 출자) 	0
7.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31까지 일몰연장 의견 제시 - 세제지원 대상에 상장리츠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감면 건의·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2016.

□ 건의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 ※ 다음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6조의2 제1항(신설))’ 조세지출 항목의 건의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예로 든 것임
- ※ 동 건의서는 확인·점검 결과 점수 33점에 ‘보통’의 평가를 받은 항목임

건의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예시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 세액공제(조특법 제76조의2 제1항(신설))				
평가지표	부처 평가		확인·점검 의견	점검 결과
계(10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세액공제액 규모가 300억원 초과로 예비 타당성 평가 대상임 ○ 법인기부금의 30%세액 공제시 기부금 증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나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 있음 ○ 지난 연도에도 요청한 항목임 	33
1-1. 목적의 명확성 (5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제시 특정상황은 과거 7년 동안 기업의 예술분야 사회 공헌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복지·종교 등 기타 비영리 분야 대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 비중이 매우 낮다는데서 출발하고 있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대내외 환경하에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비용 및 기부금의 감소는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 ○ 이러한 추세적 감소 경향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려움 	2
1-2. 특정상황과 인과관계 (5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뚜렷한 인과관계 미흡 - 세액공제율을 30%로 정한 근거 제시 필요하며, 문화융성 확산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경로 근거 제시 미흡 	2
1-3. 부처 정책방향·목표 연계성 (5점)	5			5

평가지표	부처 평가	확인·점검 의견	점검 결과
2-1. 성과지표 설정 (20점)	20	○ 성과지표가 투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10
2-2. 목표치 설정 (5점)	5	○ 제도 도입으로 5배 이상의 기부금이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이 조세가격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 단순히 제도의 잠재적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수행한 설문을 통해서 확보한 목표 기부금액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2
3. 정책대상자 파악 (15점)	15	○ 정책대상자의 총규모와 계층별 분포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	7
4. 기대효과 (10점)	10	(효율성) ○ 조세지출이 산업부문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음	5
5. 세출예산 (10점)	5	○ 다른 세출예산과의 중복성,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 미제시	0
6. 선행연구 (5점)	5		5
7. 세수 보완방안 (20점)	0	○ 축소 대안 미제시 - 평가기준 상 소관부처의 기존 제도의 축소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5점처리	-5

<부록 II> 호주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자료

<부표 II -1> 최근 10년간 일몰기한이 없이 폐지된 조세지출

번호	제목	도입연도	폐지 사유
1	Exemption for certain benefits provided to employees training under the Australian Traineeship System	'86	관련 정부정책 중지
2	Tax offset of interest on certain government securities	'85이전	확인 불가
3	Higher rate of excise levied on leaded petrol	'94	종료 후 감면실적 없음
4	Concessional excise for snuff	1902	종료 후 감면실적 없음
5	The Simplified Tax System	'01	확인 불가
6	Income tax exemption for the Australian Film Finance Corporation	'88	확인 불가
7	Exemption of Sugar Industry Exit grants	'03	확인 불가
8	Tax offset for child care	'04	확인 불가
9	Exemption of rent subsidy payments under the Commonwealth/State mortgage and rent relief schemes	'85년 이전	확인 불가
10	Education Tax Refund	'08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11	Exemption of the Baby Bonus	'04	관련 정부정책 중지
12	Exemption of Family Tax Benefit, Parts A and B	'00	확인 불가
13	Exemption of Utilities Allowance and Seniors' Concession Allowance	'04	확인 불가
14	Income tax exemption for LPG conversion grants	'06	확인 불가

번호	제목	도입연도	폐지 사유
15	A reasonable overtime meal allowance	'87	감면실적 없음
16	Deemed tax credits under tax sparing provisions in Australia's tax treaties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일몰 종료 후 감면실적 없음
17	Exemption of Tobacco Growers Adjustment Assistance grants	'06	감면실적 없음
18	Tax exemption for farm help re-establishment grants	'97. 12. 1	확인 불가
19	New tax system for managed investment trusts	'14. 7. 1	감면실적 없음
20	Philanthropy - Income tax exemption for certain non-charitable funds	'05. 7. 1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21	Pooled Development Funds	'92	관련 재정사업에 신청 마감으로 폐지
22	Establishment costs for carbon sink forests	'07. 7. 1	폐지
23	Research and development - immediate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core technology	'96	확인 불가
24	Small business and general business tax break	'08. 12. 13	폐지
25	Company loss carry-back	'12. 7. 1	관련 정부정책 중지
26	Crude Oil Excise - condensate	'77	기준조세 편입
27	PRRT - transfer of exploration expenditure between 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ojects	'90. 7. 1	감면실적 없음
28	CPM thresholds for obligations	'12. 7. 1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29	CPM uncovered sectors - legacy emissions from synthetic greenhouse gases	'12. 7. 1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30	Mature Age Worker Tax Offset	'04	폐지
31	National Guarantee Fund payment exemption	'11. 4. 27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32	Regional headquarters set-up cost deduction	'94	다른 법안에 의해 폐지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06-2016*

<부표 II -2> 최근 10년간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된 조세지출

번호	제목	일몰 설정연도	일몰기한
1	Business Assistance Fund for disasters	'06(신설)	'07
2	Cyclone Larry - fuel excise relief	'06(신설)	'07
3	Higher rate of excise levied on high sulphur diesel	'05	'06. 1. 1
4	Concessional tax treatment for foreign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03	'06
5	Capital gains tax roll-overs for superannuation entities	'04(신설)	'06(merging fund)
6	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 Scheme	'05(신설)	'07. 6. 30
7	Forestry managed investments - Prepayment rule	'07	'08.6.30
8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11(신설)	'12. 6. 30
9	Conservation tillage refundable tax offset	'12 (신설, 1년 단축)	'14. 6. 30
10	25 per cent entrepreneurs' tax offset	'11	'12. 6. 30
11	Capital protected borrowings	'09('10년도에 1개월 연장)	'13. 6. 30
12	Tax incentives for film investment	'09	'10. 7. 1
13	Research and development - exemption of refund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offset payments (former scheme)	'09	'11. 6. 30
14	Research and development - Premium tax concession for additional expenditure	'09 (10년 일몰, 1년 연장)	'11. 6. 30
15	Research and development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oncession	'09 (10년 일몰, 1년 연장)	'11. 6. 30
16	Exemption of tax offsets paid under the National Urban Water and Desalination Plan	'09(신설)	'14. 6. 30
17	Capital gains tax roll-overs to facilitate the consolidation of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s	'10 ('11년 일몰, 1년 연장)	'12(CSC)

번호	제목	일몰 설정연도	일몰기한
18	Rebate for broadcasting licence fees	'10 ('11년 일몰, 1년 연장)	'12. 6. 30
19	MRRT - denial of refund of tax credits for losses at project end	'13	'14. 6. 30
20	MRRT - exemption for smaller miners	'13	'14. 6. 30
21	MRRT - loss uplift rates exceeding the 10 year bond rate	'13	'14. 6. 30
22	MRRT - royalty allowance uplift	'13	'14. 6. 30
23	MRRT - starting base and uplift rate for capital assets	'13	'14. 6. 30
24	PRRT - increased deduction for petroleum exploration expenditure in designated offshore frontier areas	'06 ('08년 일몰, 1년 연장)	'09
25	GST - Clean Energy Future	'13	('14. 6. 30)
26	CPM uncovered sectors - deforestation	'13	'14. 6. 30
27	CPM uncovered sectors - legacy landfill emissions	'13	'14. 6. 30
28	Synthetic greenhouse gases - exemptions for certain products	'13	'14. 6. 30
29	CPM uncovered sectors - agriculture	'13	'14. 6. 30
30	CPM uncovered sectors - decommissioned mines	'13	'14. 6. 30
31	CPM - exclusion of the Joint Petroleum Development Area and Greater Sunrise Unit Area	'13	'14. 6. 30
32	Exemption for Defence Abuse Reparation Payment Scheme	'13(신설)	'15. 7. 1
33	Exemption of Government contributions to First Home Saver Accounts	'14	'15. 6. 30
34	Tax treatment of First Home Saver Accounts earnings	'14	'15. 6. 30
35	Incentives for licensees to facilitate new arrangements in the 400 MHz band	'11(신설)	'15. 12. 31

자료: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06-2016*

<부록 III> 프랑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자료

<부표 III-1> 2015~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일몰에 변화가 생긴 항목들의 특징

항목명	수혜내용	재정지출 프로그램	세부	지원방식	도입 연도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특정 1.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부터 일몰이 기입된 항목											
허유권자가 부담하는 상속 및 증여받은 건물의 주요 수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5,000유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초과하는 비용은 다음 10년간 동일 한 연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영토와 주거의 평등/도시 계획, 영토 및 주택 개선(P135)	소득세	소득공제	2008	일몰없음	2008	일몰없음	2016	일몰없음	2016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세액공제	□ 해당 파세연도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38%의 세액공제를 적용	영토와 주거의 평등/주거에 대한 지원(P109)	소득세	세액공제	2005	일몰없음	2009	일몰없음	2016	일몰없음	2016
송로버섯 재배를 시작한 이후 15년간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송로버섯 재배를 시작한 이후 15년간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농업 및 영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P154)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06	일몰없음	2006	일몰없음	2015	일몰없음	2015
기업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예외적 감가상각 적용	□ 소프트웨어 취득일로부터 11개월 연속으로 감가상각 적용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및 법인세	감가상각 공제	1984	일몰없음	2003	일몰없음	2016	일몰없음	2016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2004	일몰없음	2008	일몰없음	2016	일몰없음	2016
주류업의 전입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면제	□ 주류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 유형 및 무형의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면제	건강/예방, 위생에 대한 관리(P204)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1955	일몰없음	1993	일몰없음	2015	일몰없음	2015

항목명	수해내용	제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신박에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에 대하여 저울과세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신박에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에 대하여 저울과세 ○ 실험적 제도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법에 명시된 경유 적용 조항을 적용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농업 및 영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P154)	에너지 내국소 비세	에너지 소비세 자율과세	2006	일몰없음	2013	일몰없음	2013	2015
은실가스 배출을 승인 받은 에너지 집약 기업이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을 승인받은 에너지 집약 기업이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에너지 내국소 비세	에너지 소비세 면제	2011	일몰없음	2011	일몰없음	2015	2015
기차, 지하철, 트램, 트롤리버스가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 기차, 지하철, 트램, 트롤리버스가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생태, 지속 가능한 개발/교통의 인프라 및 서비스(P203)	에너지 내국소 비세	에너지 소비세 면제	2011	일몰없음	2011	일몰없음	2015	2015

특정 2.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부터 일몰이 기입된 항목

기업의 인턴에게 2015년 9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기업의 인턴에게 2015년 9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학교 교육/중고등 공립학교 교육(P141)	소득세	소득세 면제	1958	일몰없음	2015	일몰없음	2015	2015
과거의 MALRAUX 제도	□ 문화유산 보호지역의 부동산 복구 작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만 적용	문화/유산(P175)	소득세	소득공제	1977	일몰없음	2015	일몰없음	2015	2017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프랑스령에서 취득한 투자 수익에 대하여 세액공제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프랑스령에서 취득한 투자 수익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외/해외 생활의 상황 및 환경(P123)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2013	일몰없음	2013	일몰없음	2015	2020
인도주적 공익단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판매한 예술품 및 공예품에 대하여 등록인 지체의 1.2%에 관해 면제	□ 인도주적 공익단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판매한 예술품 및 공예품에 대하여 등록인 지체의 1.2%에 관해 면제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농업 및 영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P154)	인지세	인지세 면제	1963	일몰없음	2014	일몰없음	-	-

항목명	수혜내용	재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특징 3. 입몰기한이 있다 가 2017년도 예산서에서부터 입몰이 삭제된 항목들										
중소기업의 초기자본에 대한 현금 투자 또는 자본확장을 위한 현금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투자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범위는 연간 50,000유로 이내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간 100,000유로 이내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세액공제	1994	2013	2016	2015	2016	일몰없음
FTP(특정 지역 중소기업 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FTP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18% 세액공제를 적용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1인당 최대 2,160유로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세액공제	2003	2013	2016	2013	2016	일몰없음
코르시카 회사에 투자한 FTP(특정 지역 중소기업 투자 펀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FTP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38%의 세액공제를 적용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세액공제	2006	2013	2016	2013	2016	일몰없음
해의 영토 거주민이 FTPOM(해의 영토의 특정 지역 중소기업 투자 펀드)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투자 금액의 42%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의/해의 생활의 상황 및 환경(P123)	소득세	세액공제	2011	2013	2016	2013	2016	일몰없음
특징 4. 입몰기한이 있다 가 2016년도 예산서에서부터 입몰이 삭제된 항목들										
법정 의무를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한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집단적축제도에 법정 의무를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한 투자 금액의 50%에 대하여 비과세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및 법인세	비과세	1986	2013	2014	2013	2015	일몰없음
특징 5. 2015년도 말 또는 2016년도에 입몰이 연장된 항목들										
인대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의 가구 구성원 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주택 구입가격에 리모텔링 등 추가 작업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2012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1%의 세액공제를 적용	영토 및 주거의 평등/도시 계획, 영토 및 주택 개선(P135)	소득세	세액공제	2008	2012	2016	2012	2016	2017

항목명	수해내용	재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도입 연도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임대주택 중간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8%의 세액공제를 적용 ○ 2009-10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 건물대임비용에 전환차임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 약정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임대 약정기간 설정 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 ○ 9년 임대 약정기간 설정 시 18%의 세액공제를 적용 		소득세	세액공제	2012	2012	2016	2016	2016	2016	2017
공공 주택 건설 및 관리 임체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주택 건설 및 관리 임체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03	2003	2015	2015	2015	2015	2018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토지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공공기관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06	2006	2015	2015	2015	2015	2018
공예품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품 제조에 든 비용의 10%에 대하여 세액공제 	문화/장작(P131)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2005	2005	2016	2016	2016	2016	2019
창년 혁신 기업 및 대학 내 창업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년 혁신 기업 및 대학 내 창업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면세 	연구 및 고등교육/경제 및 산업 분야 연구 및 고등교육(P192)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2003	2003	2016	2016	2016	2016	2019
반위 산업 체배치 구역에 설립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위 산업 체배치 구역에 설립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국방/국방 정책 지원(P212)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2008	2008	2016	2016	2016	2016	2019

항목명	수해내용	재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해외 프랑스령 지방자치 단체의 실 체 단체인 실현된 수 익형 투자 및 이러한 투자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의 주식 인수에 대한 소득공제	□ 해외 프랑스령 지방자치 단체의 실 현된 수익형 투자 및 이러한 투자 를 수행하는 기업의 주식 인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외/해외 생활의 상황 및 환경(P123)	법인세	소득공제	1985	2013	2013	2017	2015	2025
2020년 12월 31일 이 전에 해외 프랑스령 내 공공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프 랑스령 내 공공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외/해외 생활의 상황 및 환경(P123)	법인세	세액공제	2013	2013	2015	2017	2015	2021

특정 6. 2014년도 말 또는 2015년도에 입몰이 연장된 항목들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 이에 3세대 도시 무역 자유구역에서 활동하 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면세	□ 3세대 도시 무역자유구역에서 활 동하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면세	영토 정책/도시 정책(P147)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2006	2011	2014	2020	2014	2020
레스토랑 경영자에 대 한 세액공제	□ 레스토랑 운영 비용의 50%에 대하 여 세액공제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2006	2013	2014	2017	2015	2017
미디어 기업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 언론사가 정보 수집 및 배포 활동 을 위해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소 득공제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인론 (P180)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공제	1959	2013	2014	2017	2014	2017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 활성화 지원 구 역에 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촌 활성화 및 도시 재생 구역에 설립된 신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면세	□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 활성화 지원 구역에 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촌 활성화 및 도시 재생 구역에 설립된 신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면세	영토 정책/토지 계획 정책의 조정(P112)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1988	2013	2014	2020	2014	2020

항목명	수해내용	제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입몰연도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고용을 창출 지원 지역에서의 이익에 대한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고용을 창출 지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면세 	영토 정책/토지 계획 정책의 조정(P112)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2006	2014	2014	2017	2014	2017
어려움에 처한 회사 또는 산업 시설을 인 수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회사가 이후 24 개월 동안 이익에 대하여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처한 회사 또는 산업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회사가 이후 24 개월 동안 이익에 대하여 면세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법인세	법인세 면제	1998	2014	2014	2020	2014	2020
오디오 녹음물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디오 녹음물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도서와 문화산업(P334)	법인세	세액공제	2006	2015	2014	2018	2014	2018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자가 3년 이내 해당 건물용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저율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자가 3년 이내에 해당 건물용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저율과세 	경제/관광업 및 기업 발전(P134)	법인세	저율과세	2011	2013	2014	2017	2014	2017
특장 7. 2015년도 초와 2015년도 말에 두 차례 연속하여 일몰이 연장된 항목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농촌 활성화 구역에 설립되거나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농촌 활성화 구역에 설립되거나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면세 	영토 정책/토지 계획 정책의 조정(P112)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2011	2013	2015	2015	2015	2020

항목명	수해내용	재정지출 프로그램	세목	지원방식	도입 연도	2015년도 예산서		2016년도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개정 연도	행정상 일몰연도
특정 8. 원래 일몰이 없었다가 2014년도 말 일시적으로 일몰이 부여되었던 다음연도에 관하여 다시 일몰이 삭제되어 현재 일몰 없음으로 분류된 항목		공공재정 및 인사관리/수정부 및 지방정부 부문의 세금 및 재정관리(P156)	소득세	세액공제	1982	2001	2014	2015	2015	2015	일몰없음

주: 1) 허유권은 제한물권이 붙어 있어 소유권자가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함.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은 있으나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은 타인이 가진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허유권이 됨.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부표 Ⅲ-2〉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영토와 주거의 평등'과 연계된 조세지출 항목

순서	일몰이 없는 항목					일몰이 있는 항목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1	주택 수당 및 주택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주택과 관련된 정책 수혜자 지원	소득세	5,219,000 가구	1971	60	허유권자가 부담하는 상속 및 증여 받은 건물의 주요 수 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개선과 부동산 소득의 공정한 평가 지향	소득세	18,298 가구	2008	20
2	보조 및 보험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해당자에게 보조금 및 보험 혜택 제공	소득세	알 수 없음	1939	nc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 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	소득세	37,675 가구	2005	5
3	2011년부터 지급되는 은퇴연금 원금에 대하여 7.5%의 세율 적용. 2011년 이전의 집단은 은퇴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과세	주택을 취득하려는 은퇴자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06	90	노인 및 장애인의 주거용 필수 시설물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소득세	41,960 가구	2004	41
4	수리 및 개선에 대한 비용 공제	장애인 거주용 이점 확보	소득세	1,700,000 가구	1989	1,560	임대용 호텔식 주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용 호텔식 주택 부문 지원	소득세	120 가구	2006	ε
5	오래된 주택에 한하여 경비의 공제 이외에 임대료의 26%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57,500 가구	1998	42	주로 주거할 주택 건설 또는 인수로 인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환급 가능 세액공제	주택 취득 지원	소득세	1,099,047 가구	2007	763
6	협약에 따라 임대한 주택의 수입에 대한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44,500 가구	2006	44	임대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의 가구 구비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51,853 가구	2008	164
7	임대주택 소유권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용역권을 갖게 된 허유권자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1,350 가구	2008	3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알 수 없음	2008	788
8	프랑스 이외 국가의 국민이 프랑스 내 거주용 첫 주택의 매매로부터 얻은 수익액에 대하여 150,000 유로 한도로 소득세 면제	주택 구입 장려	소득세	알 수 없음	2003	10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임대료 상한액이 보다 낮은-의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알 수 없음	2008	394

순서	일몰이 없는 항목					일몰이 있는 항목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9	양도인이 주택의 취득 또는 건설에 대한 판매 가격의 일 부분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 자신의 주거지를 최초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산 소득 면세	주택의 개축 및 공공 확대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11	35	임대주택 중간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25,307 가구	2012	77
10	자신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자에게 소득세 면제	주택의 일부 임대 장려	소득세	알 수 없음	1952	nc	주요 주거지로 임대되는 신규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73,000 가구	1996	45
11	연소득 23,000유로를 초과하는 임대업자가 부당하게 된 손실에 대하여 공제	부동산임 분야 지원	소득세	4,400 기업	1981	14	주요 주거지로 임대된 주택에 대하여 2003년 4월 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에 행한 보수공사 비용의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230,000 가구	2003	260
12	특정 건설사의 대금 손실에 대하여 소득공제	주거지 건설 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알 수 없음	1953	nc	주요 주거지로 임대된 주택에 대하여 2003년 4월 3일까지 행한 보수공사 비용의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23,000 가구	1998	17
13	공공주택 관련 기관 및 공공주택 기획 및 건설 공공단체(OPAC)에 대하여 면세	공공주택 부문 지원	법인세	알 수 없음	2003	1,000	개발 지역에서 주요 주거지로 임대된 주택에 대하여 인게 된 임대소득의 소득공제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7,200 가구	2005	10
14	사회 경제 노동조합에 대하여 면세	노동조합 지원	법인세	알 수 없음	2005	ε	주요 주거지로 이용되는 새로운 주택을 통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임대주택 공금 확대	소득세	26,400 가구	2006	50
15	경제적 약자들을 위하여 적정선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공동 개발 구역 내에서 개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및 주 식회사에 대하여 면세	공공주택 분야 지원	법인세	알 수 없음	1985	nc	공공 주택 건설 및 관리 업체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공공주택 부문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03	10
16	공공주택 관련 회사 및 조합에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인지지 면제	공공주택 분야 지원	인지세	알 수 없음	1963	ε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공공 부동산 분야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06	ε

순서	일몰이 없는 항목						일몰이 있는 항목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17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준국영회사(만관 반민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지역개발 계획 지원	인지세	알 수 없음	1982	1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개축을 위해 파괴한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분의 25% 또는 30% 만큼 공제	주택의 개축 및 공공 확대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12	10
18	공공주택 건설 및 운영을 하는 준국영회사 주식 양도에 대하여 3%의 고정세를 적용	공공주택 부문 지원	인지세	알 수 없음	1948	4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실현된 택지 양도의 부동산 수익에 대하여 30% 만큼 공제	주택의 개축 및 공공 확대 지원	소득세	0	2014	-
19	공동 소유권 분할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공동소유의 개편 장려	인지세	알 수 없음	1996	ε	개인이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주택 매매 시 해당 이권을 포함함으로써 취득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 면제	주택의 개축 및 공공 확대 지원	소득세	알 수 없음	2011	nc
20	회사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주택건설법상 민간주택조합에 해당하는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정액의 인지세 적용	부동산 분야 지원	인지세	알 수 없음	1963	ε	이자가 없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해당 대출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제공	주택 구입 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알 수 없음	2004	1,065
21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구입한 택지에 대하여 5.5%의 부가세를 적용	공공주택 분야 지원	부가세	알 수 없음	1991	195	에코 PTZ(오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받은 무이자 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주거 에너지 효율 증대	소득세 및 법인세	31,200 가구	2008	110
22	주택 관련 특정 활동에 대하여 부가세 저율과세	공공주택 부문 지원	부가세	알 수 없음	1998	1,800	증축 가능한 건물 양도 차익에 대한 면제	주택 공공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알 수 없음	2011	nc
23	건축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주택에 대한 보수 작업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적용	주택 보수 작업 지원	부가세	310,000 기업	1999	3,410	1993년 6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또는 199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특정 건물 및 신축 건물, 1995년 8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오래된 건물의 인지세 면제 내에서의 인지세 면제	부동산 분야 지원	인지세	알 수 없음	1993	nc

순서	일몰이 없는 항목					일몰이 있는 항목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항목 내용	정책목적	세목	수혜자 수	도입 연도	조세지출 규모 (백만유로)
24	새로운 준임대주택 제공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적용	준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가세	알 수 없음	2013	45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생산 증여에 서명한 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인지세 면제	건축 가능한 부동산 규제 해소	인지세	알 수 없음	2014	30
25	완공 후 2년이 지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 작업에 대하여 5.5%의 부가세를 적용	주거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감	부가세	310,000 기업	2013	1,080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축 주거용 부동산 생산 증여에 서명한 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인지세 면제	주택 건설 제개	인지세	알 수 없음	2014	1

주: 1) 허유권자는 소유주이기는 하나 해당 재산의 수익원은 갖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함

1. 수혜자 수 및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도 실적치 기준

2. ϵ = 추정되는 금액이 50만 유로 미만, nc = 정량화할 수 없음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부표 III-3>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항목들의 일몰 적용기한

(단위: 회)

항목명	도입 연도	최초 적용 기한	총 적용 기한	일몰 연장 횟수
해외 영토의 공영주택 지역에 행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만유로 이상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우선 승인)	2009	9년	17년	2
특정 지역의 자연유산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지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2009	5년	5년	1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해외 영토-의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9	5년	5년	1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해외 영토 중에서도 임대료 상한액이 보다 낮은-의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9	9년	5년	1
해외 영토 거주민이 FIPOM(해외 영토의 특정 지역 중소기업 투자 펀드)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2011	4년	-	2
임대주택 중간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2	5년	6년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림 경영 및 관련 작업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2013	5년	5년	0
언론사 자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2015	4년	4년	0
해외 근로자의 임시 추가 소득에 대한 면세	2009	3년	4년	1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실현된 택지 양도의 부동산 수익에 대하여 30% 만큼 공제	2014	4년	4년	0
개인이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주택 매매 시 해당 이권을 포함함으로써 취득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 면제	2011	4년	7년	1
중소기업 투자 저축 계좌를 통해 증권을 양도할 시 선택적 과세이연	2015	3년	3년	0
중소기업이 인수한 로봇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2013	3년	4년	1
3D 프린터에 대하여 24개월 가속 감가상각	2015	3년	3년	0
축산 폐수의 저장을 위한 축사 건물 및 장비,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 감가상각 적용	2015	3년	3년	0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5톤 이상의 천연가스 및 바이오메탄 차량 구매 시 40% 특별공제	2015	3년	3년	0

항목명	도입 연도	최초 적용 기한	총 적용 기한	일몰 연장 횟수
해외 프랑스로 세운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공제	2009	9년	9년	0
증축 가능한 건물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	2011	4년	7년	1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프랑스로에서 취한 투자 수익에 대하여 세액공제	2013	-	8년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농촌활성화 구역에 설립되거나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면제	2011	3년	10년	3
2015년 4월 15일에서 2016년 4월 14일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에 적용되는 특정장비의 40% 초과 감가상각	2015	2년	2년	0
국제 스포츠 대회 및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과 관련이 있는 프랑스 내 기관이 프랑스에서 실현한 이익에 대하여 면세	2014	4년	4년	0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 프랑스로 내 공공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2013	5년	9년	1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자가 3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저율과세	2011	4년	7년	2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조직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면세	2014	4년	4년	0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생전 증여에 서명한 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인지세 면제	2014	2년	2년	0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 주거용 부동산 생전 증여에 서명한 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인지세 면제	2014	3년	3년	0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관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후 이루어질 무상 양도 시 부동산 가치의 30%를 한도로 인지세 면제	2014	4년	4년	0
온실가스 배출을 승인받은 에너지 집약 기업이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2011	-	1년	0
기차, 지하철, 트램, 트롤리버스가 소비하는 최종 전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세 면제	2011	-	1년	0

자료: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4)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6: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République Française, 2016)

<부록 IV> 캐나다 조세지출제도 관련 보충자료

<부표 IV-1> 캐나다 조세지출 신규도입/폐지 항목(1991~2016)

연도	도입/폐지	조세지출 항목	세목
1991	Began	Tax treatment of farm savings accounts(AgriInvest and Agri-Québec)	CIT
		Deductibility of expenses by employed artists	PIT
	Ceased	Federal Sales Tax Credit	PIT
1992	Began	Small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CIT
		Interest o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s	CIT
		Reclassification of expenses under flow-through shares	CIT/PIT
	Ceased	Exploration Tax Credit	CIT
		Deductibility of carrying charges on land	CIT
		Small Business Transitional Credit	GST
1993	Ceased	Cape Breton Investment Tax Credit	CIT
1994	Began	Surtax on the profits of tobacco manufacturers	CIT
		Deductibility of contributions to a 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	CIT/PIT
	Ceased	Small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CIT
1995	Began	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	CIT
	Ceased	Interest o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s	CIT
		Special Investment Tax Credit	CIT
		Non-taxation of employer-paid premiums for group term life insurance of up to \$25,000	PIT
1996	Began	Accelerated deductibility of Canadian Renewable and Conservation Expenses	CIT/PIT
		Rebate for book purchases made by certain organizations	GST
	Ceased	Special credit for certified institutions	GST
		Flow-through of capital cost allowance on Canadian films	PIT
1997	Began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on donations of publicly listed securities	CIT/PIT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CIT
		Refunds for Aboriginal self-governments	GST
		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PIT
		Deduction for tuition assistance for adult basic education	PIT

연도	도입/폐지	조세지출 항목	세목
1998	Began	Deductibility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when paid	CIT/PIT
		Deductibility of earthquake reserves	CIT
		Rebate for specially equipped motor vehicles	GST
		Supplementary Low-Income Credit	PIT
		Caregiver Credit	PIT
		Student Loan Interest Credit	PIT
2000	Began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on donations of ecologically sensitive land	CIT/PIT
		Rebate for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GST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for flow-through share investors	PIT
		Rollovers of investments in small businesses	PIT
		Supplementary Low-Income Credit	PIT
2001	Began	Low tax rate on general income of small businesses between \$200,000 and \$300,000	CIT
		Tax rate on resource income	CIT
2002	Began	Apprentice vehicle mechanics' tools deduction	PIT
2003	Began	Corporate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ax Credit	CIT
2004	Began	Non-taxation of income earned by military and police deployed to international high- and moderate-risk operational missions	PIT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llowance	CIT
		Non-resident-owned investment corporation refund	CIT
2005	Began	Adoption Expense Tax Credit	PIT
	Ceased	Low tax rate on general income of small businesses between \$200,000 and \$300,000	CIT
2006	Began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CIT
		Patronage dividends paid as shares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CIT/PIT
		Public Transit Tax Credit	PIT
		Textbook Tax Credit	PIT
		Canada Employment Credit	PIT
		Deduction for tradespeople's tool expenses	PIT
2007	Began	Additional deduction for gifts of medicine	CIT
		Investment Tax Credit for Child Care Spaces	CIT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manufacturing or processing machinery and equipment	CIT/PIT
		Foreign Convention and Tour Incentive Program	
		Child Tax Credit	PIT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PIT
		Pension income splitting	P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PIT	
	Ceased	Tax rate on resource income	CIT
		Deductibility of royalties paid to Indian bands	CIT

연도	도입/폐지	조세지출 항목	세목
2008	Began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 Rebate for foreign visitors	PIT GST
2009	Began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computer equipment Home Renovation Tax Credit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Tax-Free Savings Account	CIT/PIT PIT PIT PIT
2010	Began	Rebate for poppies and wreaths Inclusion of 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in the income of an eligible dependant	GST PIT
	Ceased	Home Renovation Tax Credit	PIT
2011	Began	Children's Arts Tax Credit 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PIT PIT
2012	Began	Family Caregiver Tax Credit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PIT PIT
	Ceased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computer equipment	CIT/PIT
2013	Began	Exemption for hospital parking First-Time Donor's Super Credit	GST PIT
	Ceased	Non-taxation of income from the 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 of Canada	PIT
2014	Began	Family Tax Cut Search and Rescue Volunteers Tax Credit	PIT PIT
	Ceased	Expensing of purchases of capital equipment used for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Exemption from tax for international banking centres	CIT/PIT CIT
2015	Began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for liquefied natural gas facilities Zero-rating of feminine hygiene products	CIT/PIT GST
	Ceased	Child Tax Credit	PIT
2016	Began	Teacher and Early Childhood Educator School Supply Tax Credit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PIT PIT
	Ceased	Corporate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ax Credit Family Tax Cut 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	CIT PIT PIT

주: 1. PIT(Personal Income Tax)는 개인소득세, CIT(Corporation Income Tax)는 법인세,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함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7)

<부록 V> 2016 하반기 임의심층평가상의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결과

<부표 V-1>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결과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분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년	N	N	N	관리 대상 에서 제외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	51의3	N	N	N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	59의4①;(구)소득52①	N	N	N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구)소득51①4·5; (구)소득51의2	N	Y/N	N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1	N	Y/N	N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	51①2	N	Y/N	N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N	Y/N	N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	51①6	N	Y/N	N	
항공기, 반도체제조·수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89①	Y	N	N	잠재적 관리 대상
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42	Y	N	N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	24	Y	N	N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④;(구)소득52⑥	Y	N	N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②;(구)소득52②	N	Y	N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구)소득52③	N	Y	N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구)소득51의3①2	Y	Y/N	N	
전담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_2가	Y	Y	Y	적극적 관리 대상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개소	1③;19의2_3	Y	Y	Y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3	Y	Y	N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8①12	Y	Y	Y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2_1·2	Y	Y	Y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0①4	Y	Y	Y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관세	91_4·5	Y	Y	N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	95①1·2	Y	Y	Y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Y	Y	Y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분류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6①10	Y	Y	Y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부가	27_3	Y	Y	Y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	46	Y	Y	Y	
가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Y	Y	Y	
영농상속공제	상증	18②2	Y	Y	Y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23의2	Y	Y	Y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52의2	Y	Y	Y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소득	12_2다·라	Y	Y	Y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소득	12_3자	Y	Y	Y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12_3거	Y	Y	Y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소득	12_3더	Y	Y	Y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16①9(소득(령)25①)	Y	Y	Y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1의4	Y	Y	Y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	52④·⑤	Y	Y	Y	
기장세액공제	소득	56의2	Y	Y	Y	

자료: 김학수(2017), <표 III-7>

<부표 V-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양도차익 이월과세)	33	Y	N	Y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4	Y	N	Y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37	Y	N	N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8	Y	N	N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9	Y	N	Y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0	Y	N	Y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Y	N	Y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6	Y	N	Y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52	Y	N	Y
기부장려금	75	Y	N	N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76	Y	N	N

조세지출 내역	조특별 조문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08	Y	N	N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10	Y	N	N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111의4	Y	N	N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3	Y	N	Y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4	Y	N	Y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121의25①	Y	N	Y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121의25⑦· ⑧	Y	N	Y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6	Y	N	Y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7	Y	N	Y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21의28	Y	N	Y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9	Y	N	Y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30	Y	N	Y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31	Y	N	Y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31;32	Y	N	N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의2	Y	N	Y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의3	Y	N	Y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의7	Y	N	Y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47의4	Y	N	Y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100의2~10	Y	Y	N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 지급	100의27~31	Y	Y	N

자료: 김학수(2017), <표 III-8>

<부표 V-3>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내역	조특별 조문	일몰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5	2018	Y	Y	Y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2018	Y	Y	Y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	2017	Y	Y	Y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2018	Y	Y	Y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	2018	Y	Y	Y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3	2017	Y	Y	Y
창업자 등예외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	2017	Y	Y	Y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6	2017	Y	Y	Y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18	2018	Y	Y	Y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0	없음	Y	Y	N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	없음	Y	Y	N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4	2017	Y	Y	Y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2017	Y	Y	Y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6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입몰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0	2018	Y	Y	Y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	2017	Y	Y	Y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	2017	Y	Y	Y
공공기관 이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2	2018	Y	Y	Y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	2017	Y	Y	Y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	2018	Y	Y	Y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66	2018	Y	Y	Y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67	2018	Y	Y	Y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8	2018	Y	Y	Y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	2018	Y	Y	Y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0	없음	Y	Y	N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71	2017	Y	Y	Y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	2017	Y	Y	Y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7	2018	Y	Y	Y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2018	Y	Y	Y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	2016	Y	Y	Y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01	2017	Y	Y	Y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2	2018	Y	Y	Y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114	없음	Y	Y	Y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115	없음	Y	Y	Y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40	2016	Y	Y	Y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지급	100의2~10	없음	Y	Y	N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 자녀장려금지급	100의27~31	없음	Y	Y	N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①1·2·3	2018	Y	Y	Y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104의11	2018	Y	Y	Y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12	2018	Y	Y	Y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4	2018	Y	Y	Y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04의16	없음	Y	Y	Y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8	2016	Y	Y	Y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19	없음	Y	Y	Y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4의21	없음	Y	Y	Y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2	없음	Y	Y	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	2018	Y	Y	Y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25	2016	Y	Y	Y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04의26	2017	Y	Y	Y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7	2017	Y	Y	Y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8	2018	Y	Y	Y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8	없음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입몰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1	없음	Y	Y	Y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3	2018	Y	Y	Y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4	없음	Y	Y	N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5①5·6	2017	Y	Y	Y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105의2	없음	Y	Y	Y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①1; 111①2	2018	Y	Y	Y
회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0	없음	Y	Y	Y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1	2017	Y	Y	Y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12	2017	Y	Y	Y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2	2018	Y	Y	Y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3	2018	Y	Y	Y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	없음	Y	Y	Y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2 ·4의3	2017	Y	Y	Y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4	없음	Y	Y	Y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4의5	2018	Y	Y	Y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5	2017	Y	Y	Y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	2018	Y	Y	Y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의2	2017	Y	Y	Y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①9의3	2017	Y	Y	Y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106②16; 116①26; 118①17	2016	Y	Y	Y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106②19; 116①28; 118①19	2018	Y	Y	Y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6②9	2017	Y	Y	Y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의2①1	2018	Y	Y	Y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6의2①2	2018	Y	Y	Y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6의7	2018	Y	Y	Y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107의3	2017	Y	Y	Y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①	2018	Y	Y	Y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④	2017	Y	Y	Y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의2	2018	Y	Y	Y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11의2	2016	Y	Y	Y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111의3	2018	Y	Y	Y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16①	없음	Y	Y	Y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16①19	2018	Y	Y	Y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117①	없음	Y	Y	Y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17①1·2· 2의3·2의4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입몰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18①3	2017	Y	Y	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118의2	2018	Y	Y	Y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21의10	2018	Y	Y	Y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21의11	2018	Y	Y	Y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21의13	없음	Y	Y	Y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121의14 (삭제) 부칙제 62조	2017	Y	Y	Y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17	2018	Y	Y	Y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 121의4	없음	Y	Y	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0	2018	Y	Y	Y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21의21	2018	Y	Y	Y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2	2016	Y	Y	Y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121의3	없음	Y	Y	Y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8	2018	Y	Y	Y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9	2018	Y	Y	Y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22의3	2018	Y	Y	Y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2의4	2016(금) /2018 (스크랩)	Y	Y	Y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6의2	2016	Y	Y	Y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3	없음	Y	Y	Y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6의6	없음	Y	Y	Y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7	2017	Y	Y	Y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의2	2018	Y	Y	Y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의3; 12의4	2018	Y	Y	Y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136③	2017	Y	Y	Y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41의2	없음	Y	Y	Y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16의2; 16의3	2018	Y	Y	Y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의2	2016	Y	Y	Y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2	2016	Y	Y	Y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3	2016	Y	Y	Y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4	2016	Y	Y	Y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2	2017	Y	Y	Y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3	2017	Y	Y	Y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의4	2017	Y	Y	Y
청년고용증대세제	29의5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입몰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29의6	신설	Y	Y	Y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의2	2016	Y	Y	Y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의3	2018	Y	Y	Y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의4	2018	Y	Y	Y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의5	없음	Y	Y	N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의6	없음	Y	Y	N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환사업 소득법인세)	33의2	2018	Y	Y	Y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46의8	2018	Y	Y	Y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의2⑤	2018	Y	Y	Y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세 등 감면	63의2	2017	Y	Y	Y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의2	2017	Y	Y	Y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70의2	없음	Y	Y	N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 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74①	2016	Y	Y	Y
지방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 금의 손금산입특례	74④	2016	Y	Y	Y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7의2	2018	Y	Y	Y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77의3	2017	Y	Y	Y
상생결제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신설	Y	Y	Y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5의10	2017	Y	Y	Y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5의6①· ②	2016	Y	Y	Y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7	2018	Y	Y	Y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의8	2017	Y	Y	Y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 세특례	85의9	2018	Y	Y	Y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의3	없음	Y	Y	Y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87②	없음	Y	Y	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87의2	2017	Y	Y	Y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7의6	2016	Y	Y	Y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8의2	2019	Y	Y	Y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8의4	없음	Y	Y	N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 율과세 등	88의5; 89의3	2018	Y	Y	Y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8의3	2016	Y	Y	Y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91의15	2016	Y	Y	Y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91의17	2017	Y	Y	Y

조세지출 내역	조특법 조문	입법 연도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91의18	2018	Y	Y	Y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1의6	2016	Y	Y	Y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95의2	없음	Y	Y	Y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의3	없음	Y	Y	Y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의4	없음	Y	Y	Y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97의5	2017	Y	Y	Y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7의6	2017	Y	Y	Y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97의7	신설	Y	Y	Y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의4	2017	Y	Y	Y

자료: 김학수(2017), <부표 1>

